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9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A Model of regulation and governance on Internet contents)

2010. 8. 31.

연구기관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9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A Model of regulation and governance on Internet contents)

2010. 8. 31.

연구기관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총괄책임자 : 유정석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8.31.

연구기관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총괄책임자 : 유정석((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참여연구원 : 김용국((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고아라((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요 약 문

1. 제목 :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에 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연구는 인터넷 주요 포털의 자율규제 담당자들과 포털 외부의 연구자들 그리고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연구회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에 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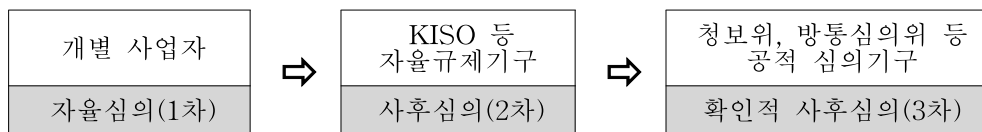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방법 등을, 제2장에서는 인터넷 콘텐츠에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공적규제가 조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3장에서는 세부 영역별 및 이슈별로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기본적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구성방안, 인터넷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모델, 인터넷콘텐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방식이나 규제방법, 인터넷콘텐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방식이나 규제방법의 실현가능성, 인터넷콘텐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방식이나 규제방법이 실현되기 위한 기본전제 및 조건, 이들 기본전제 및 조건을 법제도화 할 경우에 필요한 정책적·법제도적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인터넷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을 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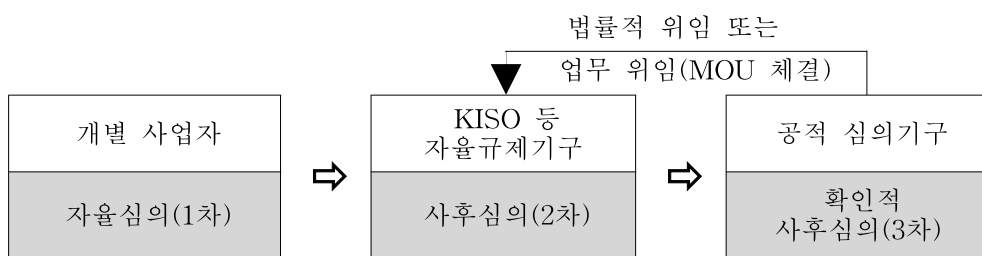
이슈별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한 뒤 협력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율규제 관련 법제정비, 공적규제기구와 자율규제기구 간의 업무 분담, 성실 사업자에 대한 면책 등이 협력모델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고안한 세부적인 협력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유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이 모델의 경우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확인적 사후심의를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수행된 사후심의를 적절성, 효율성 등을 최종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자율규제기구가 판단하기 어려운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 자율규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구조는 일종의 ‘전치주의’(前置主義)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개별 사업자나 자율규제기구 단계에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적 심의기관에 이관하는 프로세스를 상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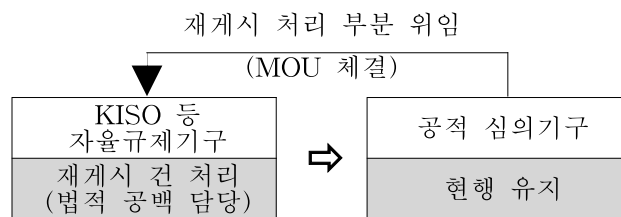
<불법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불법 정보의 경우에도 일종의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여기서 공적 심의기구는 자율규제 기구에 비교적 기준이 단일하여 심의하기에 용이한 대상(음란·사행행위·기타 불법정보 등)의 심의 업무를 MOU를 통해 위임한다. 또한 기타 불법 정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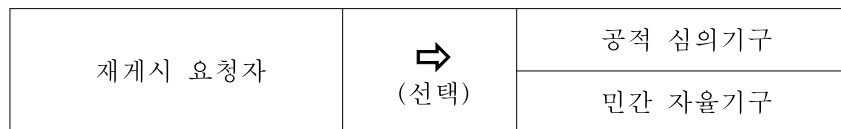
분도 일정부분 위임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협력모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만약 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권리침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 재게시 요청 관련>



임시조치제도에서의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협력모델은 주로 임시조치제도의 내용 중 법적 공백상태에 놓여 있는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중심으로 형성될 여지가 있다.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간인 30일 이내에 심의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자율규제의 가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임시조치된 당해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율규제기구가 그 심의를 일정 부분 담당함으로써, 재게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포털에 대해서 해 주는 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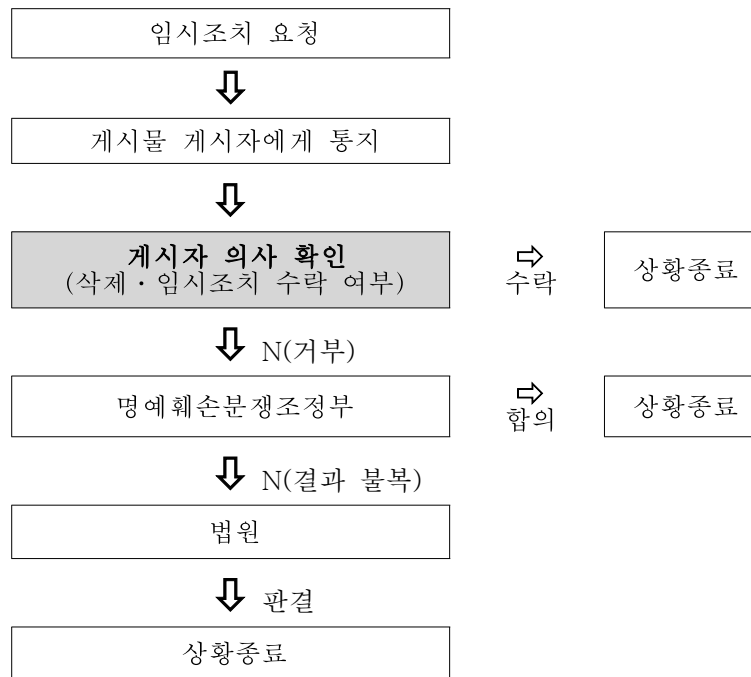
<권리침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 재게시 요청 접수 주체>



게시자가 재게시 요청시 심의를 공적심의기구 또는 민간자율기구(KISO)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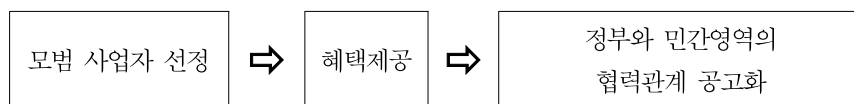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의 대상을 분산시키면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자율기구인 KISO를 선택하는 경우 회원사인 대형 포털 사업자들만이라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권리침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 임시조치 보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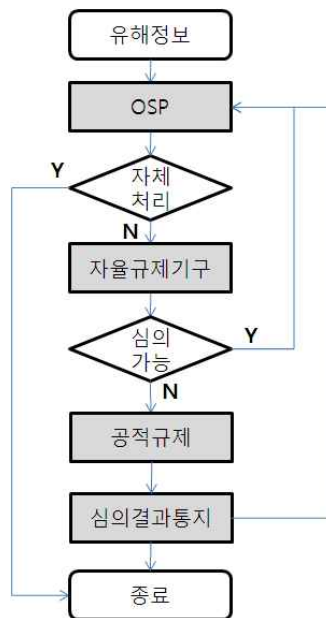
위 모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프로세스를 온라인 게시글에 적용한 모델로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 통지 및 게시자의 의견 확인 절차를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에 대하여 실체적·내용적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자의 게시물 판단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범 사업자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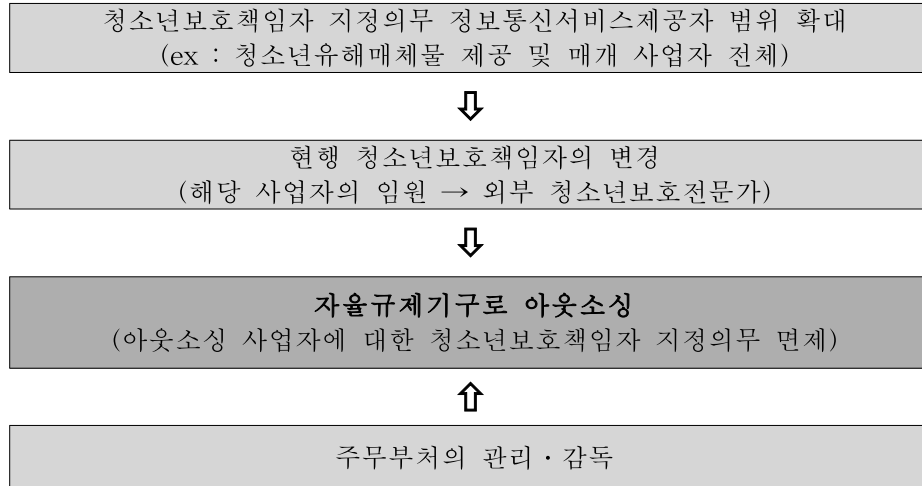
모범 사업자 지원 방안의 경우 비심의 영역에서 정부와 시장의 사업자의 협력관계 구축 및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다.

<카페/블로그 유해정보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협력모델>



앞서 설명한 청소년유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을 카페/블로그에서의 청유물 자율규제에 적용하면 위와 같은 모델을 그려볼 수 있다. 기존의 공적규제기관 심의청-유물 결정-관보게시 등의 절차를 따르는 경우 고시 및 결정취소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점과 인터넷 게시물의 이동, 삭제, 변경, 재생산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OSP-자율규제기구-공적규제기구 협력을 통한 신속한 조치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OSP에서 자체처리하기 힘든 정보에 대해서는 OSP에서 자율규제기구로 심의를 요청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OSP에서는 2차 자율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자율규제기구를 통해서도 판단하기 힘든 정보에 대해서는 3차로 공적규제기구로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공적규제기구에서는 심의결과를 자율규제기구 및 OSP로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서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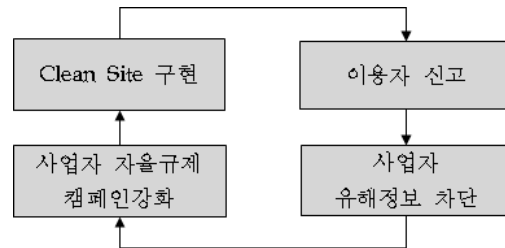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경우 독일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은 시장의 특성상 대규모 사업자 영역보다는 중소기업사업자 영역에서 그 유인이 크므로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전문가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기구로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승인된 자율규제기구에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자율규제기구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 평가지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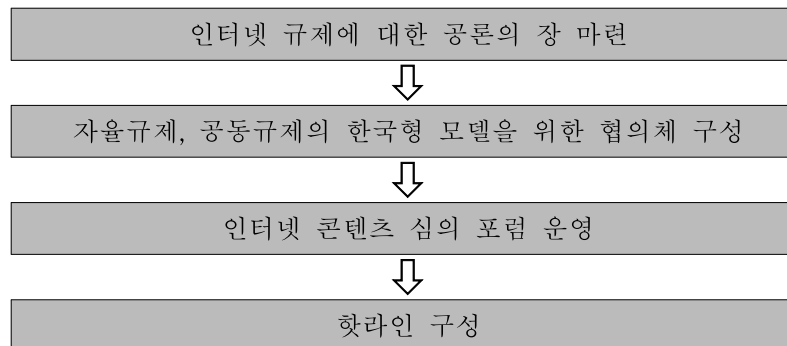
평가항목	인프라	이용자 보호	콘텐츠 관리
주요 내용	자율규제 조직/기술 등	신고센터 운영 등 책임성 있는 대응	유해정보 차단정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긍정적인 자율규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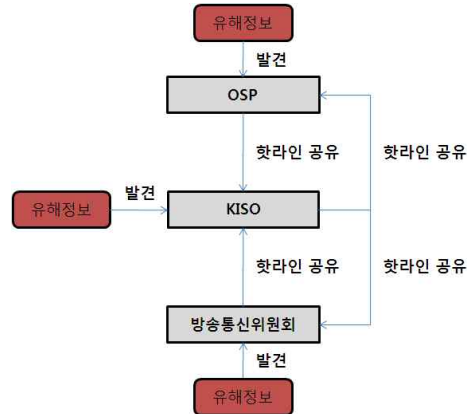
자율규제 평가지수 개발의 경우 모범 사업자 지원 방안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평가 주체의 다양화·합리화, 평가지표의 타당성 확보 등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와 정부 등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운영을 통해 자율규제 활동의 홍보, 장려 및 소규모 영세 기업의 참여 독려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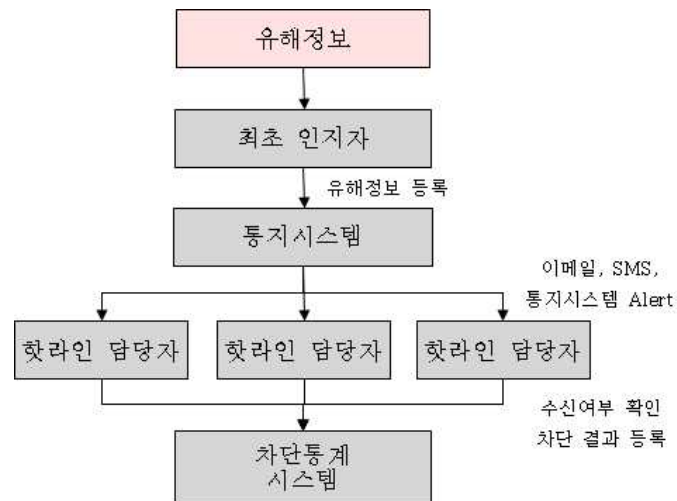
인터넷 공동규제 활성화 포럼은 비심의 영역에서의 공동규제 아이디어 차원의 모델이다. 공동규제 포럼은 공동규제를 논의하고, 만들어 가고,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므로써 인터넷 규제에 관한 사회적 이슈 생산 및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 정부와 민간 영역의 상호 이해, 공동 협력관계 유지 등 소통의 채널로 작용할 것이다. 포럼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공통의 심의기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핫라인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김선일 동영상과 같은 반인륜 잔혹 정보, 개인정보를 동반한 심각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전파에 있어서는 빠른 정보 공유를 통해서 공동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핫라인 운영 모델>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핫라인 운영 모델은 한편으로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자율규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핫라인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경우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방지에 가장 크게 기여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본 모델은 현재 정부기관과 포털사이트들이 개별적으로 MOU 등을 통해 구축된 핫라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핫라인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모델>



또한 주요 포털 이외에도 재정적 이유 등으로 자율규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

려운 중소 규모의 영세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게임사업자 등 유해정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들도 핫라인 구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구축된 핫라인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성실히 협조하는 OSP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혜택과 지원, 법적인 면책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모색하여 핫라인 체계에 동참하는 업체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자발적 인터넷 자율규제 문화의 확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핫라인 시스템은 자살 예방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최초 자살정보 인지자가 핫라인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 등 자살 규제 관련기관에 자살 관련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다른 불법·유해정보와 달리 자살암시 정보의 경우 심의결과 등 어떠한 절차에 의한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미 암시자가 자살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정책적 활용내용

본 연구는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정부영역이 민간영역과 협력적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공동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현실적인 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협력모델, 현행 임시조치의 법률적 공백을 자율규제로 보완하는 방안, 핫라인통합운영시스템 등은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유해정보 규제의 효율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및 세부적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 및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 정부영역에서는 시장영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영역이 공적 규제의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있다.

-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및 세부적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 및 입법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 단순히 추상적으로만 논의하는 차원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차원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 정책방안 및 입법방안이 구체화되는 경우 공적 규제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적 규제의 ‘합리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 시장영역에서는 자신의 기업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영역이 추구하는 공익, 인터넷이 보다 안전한 인터넷이 되기 위해 인터넷콘텐츠 규제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동의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천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영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원래부터 각 개별 사업자나 시장영역에서 수행해 왔던 자율규제를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SUMMARY

1. Title

「A Model of regulation and governance on Internet content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regulate internet contents in the context of Korean internet culture. This study has two important meaning One is that all the researchers are specialist in internet regulation. and the other is that this study suggests basic and general models to regulate internet. (The research group is consist of a manager of KISO of which major task is to make internet self-regulation policy resolutions in Korea, a professor whose major field of study is internet regulations and three field managers in charge of internet regulation from NHNcorp, Daum Communication, SK communication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paper is made up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the objectiv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part browses the reason why self regulation is needed. The third part suggests solutions that are best fit for Korean internet culture. Scope of this study is from the basic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to specific models how to regulate issue area.

4.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models that are specifically suitable to each issue. And this study found out three important meaning. Firstly, the law that regulates internet area(Act on promo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artly needed to be amended including the related laws. Secondly, KOCSC and KISO are needed to cooperate and compete. And, thirdly, legal exemptions for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needed when they sincerely obey the law. If there are a lot of duties without rights, OSPs' goodwill to form better internet environment shall not grow up.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suggests very detailed models that are suitable to be a policy. When government build up a new co-regulation system, this report will be a good example to understand reality. And models in this study are highly practical when applying them to Korean internet culture.

6. Expectations

For the part of government, the state can show its will to cooperate with the market area to set up an internet regulation system. As a result, it will lessen authoritative government image. For the market area, firms can give an impression to the public with good image, contrary to the general notion that company only pursue economic profits. Consequently, the public will take OSPs as reliable firms which do not igno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목 차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독창성	25
제2절 연구의 범위	27
제3절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인터넷콘텐츠 자율규제의 필요성	30
제1절 의의 및 필요성	30
1. ‘한국적’ 인터넷 자율규제의 출발점은?	30
2. 민주주의에의 기여	33
3. 인터넷 자율규제란?	35
제2절 자율규제의 한계	40
제3절 자율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42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한 자율규제의 현황	42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한 자율규제의 문제점 및 한계	60
제4절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의 필요성	62
1.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조화의 필요성	62
2. 자율규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67
 제3장 인터넷콘텐츠의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방안	70
제1절 인터넷콘텐츠 심의에서의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조화방안	70
1. 인터넷콘텐츠 심의에서의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	70
가. 기본적 전제조건	70
나.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74
다.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76
라. 임시조치 등 권리침해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80

마.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의 마련	85
바.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관계	86
2.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구체적 협력모델	87
(1) 청소년유해정보영역에서의 협력모델	87
(2) 불법정보에서의 협력모델	91
(3)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서의 협력모델	96
제2절 인터넷 콘텐츠 관련 이슈별 협력모델	102
1. 심의분야	102
가. 임시조치 제도	102
나. 자살 예방	123
다. 카페/블로그의 자율규제 방안	135
라. SNS와 자율규제	148
2. 비심의분야	155
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155
나. 자율 규제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163
다. 자율규제 평가지수 개발	170
라. 공동규제 활성화 포럼	177
마. OSP-KISO-방통위 핫라인 운영	180
제4장 결론	198
참고문헌	209
[부록]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사례	212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25
1. Purpose and originality of study	25
2. Scope of study	27
3. Method of study	29
 Chapter 2. Necessity	 30
1. Meaning and necessity	30
1) Starting point of the korean self regulation model on internet contents ..	30
2) Contribution to democracy	33
3) What is the self regulation on Internet contents?	35
2. Limitation of self regulation	40
3.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 of self regulation	42
1)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	42
2) Limitation and problem of what KISO did and does	60
4. Harmony between self reg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62
1) Necessity of harmony	62
2) Role of the government	67
 Chapter 3. Solutions	 70
1. Deliberation part	70
1) Institutional solution to self regulation	70
(1) Premise	70
(2) Harmful information to juvenile	74
(3) Unlawful Information	76

(4) Violates other person's right	80
(5) self regulation on the basis of legal grounds	85
(6)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KISO and KOCSC	86
2) Governance models between KISO and KOCSC	87
(1) Harmful information to juvenile	87
(2) Unlawful Information	91
(3) Violates other person's right	96
2. Issue specific parts	102
1) Deliberation part	102
(1) Temporary measure	102
(2) Prevention of suicide	123
(3) self regulation in the area of internet cafe and blog	135
(4) self regulation in the area of SNS	148
2) Non-Deliberation part	155
(1) Commissioner system for juvenile protection	155
(2) Governmental support for OSPs	163
(3) self regulation Assessment Index	170
(4) Internet Governance Forum	177
(5) Hotline System	180
Chapter 4. Conclusion	198
Reference	209
[Appendix]	
□ KISO Resolution	212

표 목 차

<표2-1> 설립목적	43
<표2-2> 신고 대상 및 처리방법	47
<표3-1> 청소년유해정보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75
<표3-2>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건 처리절차	83
<표3-3> 청소년유해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협력모델	89
<표3-4> 불법정보 종류별 법적 성격 비교	91
<표3-5> 불법정보 위임 대상 및 위임 수행의 장·단점 비교표	94
<표3-6> 재게시 절차에서 심의기관의 장단점 비교	100
<표3-7> 언론중재법 제15조	113
<표3-8> 자살유해사이트 신고 건수	124
<표3-9> 자살 관련 지식(Q&A) 유형별 구분	125
<표3-10>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유물 심의·결정 및 통보	140
<표3-11>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주요 OSP 약관	141
<표3-1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143
<표3-13> 카페/블로그 청유물 지정 시 주요 포털 처리 방침('09년 4월)	144
<표3-14> 국내 주요 포털사 2009년 매출	164
<표3-15> 국내 주요 포털사 모니터링 인력 현황 및 추정 비용	165
<표3-16> 사이버윤리지수 평균지수 및 참가기업 수	175
<표3-17> 자율규제 평가지수 지표	176
<표3-18> 자율규제 평가지수 평가 주체	176
<표3-19>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179
<표3-20>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186
<표3-21> OSP의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유통 금지 약관 사례	187
<표3-22> 주요 OSP와 공공기관의 핫라인 운영 사례	188
<표4-1> 청소년유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198
<표4-2> 불법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199

<표4-3> 권리침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 재계시 요청 관련	200
<표4-4> 권리침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 재계시 요청 접수 주체	201
<표4-5> 권리침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 임시조치 보완방안	201
<표4-6>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서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 ...	203
<표4-7> 모범 사업자 지원 방안	204
<표4-8> 자율규제 평가지수 지표	204
<표4-9>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205

그 립 목 차

<그림2-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	44
<그림2-2>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 조직도	45
<그림2-3> 이용자 신고 화면	47
<그림3-1> 최oo 목사 관련 기사	103
<그림3-2>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관련기사(임시조치)	105
<그림3-3>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피해구제 절차	111
<그림3-4> 주요포털의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처리 절차-1	115
<그림3-5> 주요포털의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처리 절차-2	117
<그림3-6> 주요포털의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처리 절차-3	119
<그림3-7> 주요포털의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처리 절차-4	121
<그림3-8> 자살 암시 사례	123
<그림3-9> 자살률 및 자살 사망자수	123
<그림3-10> 자살 관련 지식(Q&A) 사례	126
<그림3-11> Naver의 자살 검색시 화면	126
<그림3-12> Nate의 자살 검색시 화면	127
<그림3-13> Daum의 자살 검색시 화면	127
<그림3-14> Naver에서 자살 카페 개설시 화면	128
<그림3-15> Nate에서 자살 클럽 개설시 화면	128
<그림3-16> Daum에서 자살 클럽 개설시 화면	129
<그림3-17>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통보·고시·결정취소 절차	136
<그림3-18> 카페 및 블로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시행일 통보	137
<그림3-19>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카페/블로그 사례	138
<그림3-20> 카페/블로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절차	139
<그림3-21> 카페/블로그 유해정보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협력모델	147
<그림3-22> 한국인 SNS 이용형태 조사 ‘SNS 접속률’	149

<그림3-23> ‘블로그·SNS의 경제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149
<그림3-24>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실태조사’	150
<그림3-25> 한국인 SNS 이용형태 조사 ‘SNS 향후 전망’	154
<그림3-26> eTrsut(우수전자거래사업자인증) 마크	166
<그림3-27>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	166
<그림3-28>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마크	167
<그림3-29> 자율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긍정 Cycle	171
<그림3-30>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긍정적인 자율규제 모델	173
<그림3-31> 사이버윤리지수 평가사업 소개(여성가족부)	174
<그림3-32> 불법저작물 자동 필터링 시스템 사례	181
<그림3-33> 성인인증 페이지 적용 사례	183
<그림3-34> 음란동영상 노출 사례	185
<그림3-35> 경찰청-OSP 핫라인 사례	189
<그림3-36> 식약청-OSP 핫라인 사례	190
<그림3-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OSP간 핫라인 사례	192
<그림3-38>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핫라인 체계 구축	196
<그림3-39> 통합 핫라인 운영 시스템 구축	197
<그림4-1> 카페/블로그 유해정보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협력모델	202
<그림4-2>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긍정적인 자율규제 모델	205
<그림4-3>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핫라인 운영 모델	206
<그림4-4> 핫라인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모델	20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독창성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영국, EU 등 선진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호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서구의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망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물론 실천적인 측면에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구에서 개발된 자율규제시스템 혹은 적어도 한국적 자율규제시스템을 한국 사회에 착근시키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는 ‘한국적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실천적·제도적 측면에서 발전이 더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실천적·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들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인터넷에서 주로 문제되는 정보유형의 차이,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의 차이, 인터넷의 이념 및 본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행태 및 패턴의 차이 등을 들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몰이해, 정부영역의 역할에 대한 오해 등을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매체보다 자율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혀 있고, 더 나아가서 공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규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매체에서보다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규제방식, 즉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동규제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실천적·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지 못

하고, 나아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이 개발되지 못한 관계로, 인터넷 콘텐츠에서의 규제의 효율성과 규제의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한국적 자율규제시스템을 ‘실천적·제도적 측면’에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국적 자율규제시스템을 실천적·제도적 측면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는,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방안인 공동규제시스템을 정책적 차원에서나 법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시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방안인 공동규제시스템을 정책적 차원에서나 법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에 자율규제나 공동규제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국적 상황이나 맥락에서 유의미하고도 구체적인 자율규제 내지 공동규제시스템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하기 위해, ① 정부영역과 민간영역간의 기본적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구성, ② 인터넷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모델, ③ 인터넷콘텐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방식이나 규제방법, ④ 인터넷콘텐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방식이나 규제방법의 실현가능성이나 기본전제 및 조건, ⑤ 이들 기본전제 및 조건을 법제도화 하는 경우의 필요한 정책적·법제도적 수단 등을 고려하여, 개별 영역에서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결합모델 내지 협력모델을 본 보고서의 내용으로 담고자 하였다.

한편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본 보고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단편적이고 일부 세부적인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에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협력모델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의 개발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009년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목표로 국내의 6개 포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출범시켰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와 악성 댓글 등 위법·유해성 게시물에 대한 공동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포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자율규제기구이다. 개별 사업영역이나 시장영역에서 자율규제를 위한 기구나 단체가 많겠지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콘텐츠와 관련하여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협력모델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의 개발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독창성과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보고서는 인터넷 콘텐츠 영역에서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결합모델 내지 협력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정부영역과 민간영역간의 기본적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구성에 대한 고려이다. 공동규제시스템 내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영역과 민간영역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고려이다. 현재의 한국적 상황과 제도적 조건 하에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는 것은 협력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인터넷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모델은 예컨대 자발적 공동규제모델, 혼합형 공동규제모델, 최종 위임형

공동규제모델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콘텐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방식이나 규제방법에 대한 고려이다.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모델의 도출을 위해서는 인터넷 콘텐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방식이나 규제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인터넷 콘텐츠 심의와 관련된 공동규제방식이나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고, 심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인터넷 콘텐츠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반 정책적 수단이나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규제를 가미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터넷 콘텐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방식이나 규제방법의 실현가능성이나 기본전제 및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 콘텐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방식이나 규제방법이 개발한 뒤에는, 그 실현가능성이나 기본전제 및 조건들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론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관점에서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실현가능성이나 기본전제 및 조건들의 검토는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인터넷콘텐츠 규제를 위한 공익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현가능성이나 기본전제 및 조건들에 대한 검토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인터넷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포털의 정보매개방식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인터넷콘텐츠규제의 필요성, 인터넷콘텐츠의 유형,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실현가능성이나 기본전제 및 조건을 법제도화 하는 경우의 필요한 정책적·법제도적 수단에 대한 고려이다. 위와 같이 다양한 협력모델과 구체적인 방법이 도출되는 경우, 이러한 기본전제 및 조건들을 법제도화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책적·법제도적 수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와 관련한 것으로는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의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도출하는 세부적인 협력모델 및 방법이 도출되는 경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보고서는 세부적인 협력모델 및 방법이 도출되는 경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위한 입법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2장 제3절에서는 자율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영역에서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조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제1절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심의에 있어서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구체적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심의 이외에 인터넷 콘텐츠 관련 주요 이슈별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임시조치제도, 자율규제사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공동규제 활성화 포럼, 자살예방, 카페/블로그의 자율규제, 포털사업자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방송통신위원회 핫라인, 자율규제 평가지수 개발, SNS와 자율규제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내지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와의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고서에 비해서 실무(field)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내지 자율규제 및 공적 규제와의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동안의 선행연구 및 선행보고서가 주로 해외의 자율규제의 이론 및 사례의 소개, 이론적인 접근방법에 그쳤다고 한다면, 본 보고서는 ‘한국적 자율규제시스템의 개발’ 내지 한국적 맥락에서의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와의 협력모델’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자율규제모델 내지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와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인터넷 콘텐츠 실무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많은 고려를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 구성에 있어서도 학계전문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회원사의 실무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학계와 산업 간의 상호이해와 공동연구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 및 정기적인 연구회의를 통하여 보다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자율규제모델 내지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와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의 주요 사례 및 선행 문헌연구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행하였다.

제2장 인터넷콘텐츠 자율규제의 필요성

제1절 의의와 필요성

1. ‘한국적’ 인터넷 자율규제의 출발점은?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영국, EU 등 선진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호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서구의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망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존재하였다. 물론 실천적인 측면에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구에서 개발된 자율규제시스템 혹은 적어도 한국적 자율규제시스템을 한국 사회에 착근시키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는 ‘한국적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실천적·제도적 측면에서 발전이 더딘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실천적·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들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인터넷에서 주로 문제되는 정보유형의 차이,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의 차이, 인터넷의 이념 및 본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행태 및 패턴의 차이 등을 들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물이해, 정부영역의 역할에 대한 오해 등을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실천적·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서구에서 논의된 자율규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발로가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라는 맥락에서 주로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 등 성(性)관련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효율적 통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 출발은 이와 유사하였지만 현재의 상황은 명예훼손정보나 개인정보침해정보 등의 통제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¹⁾ 따라서 자율규제시스템을 개발했던 서구의 입장

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해하기 힘든 인터넷 환경이 아닐 수 없고, 서구에서 개발된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이 적용되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이나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배경에 있어서도, 특히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에서의 법적 책임 논의의 기저에는 자율규제론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법적 책임 논의의 기저에는 사회적 책임론이 존재한다.²⁾ 즉 미국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이념으로 전제하면서,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포털이나 ISP에 의한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설정하고,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내지 조건의 형성’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보다는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그 이념으로 전제하면서, 이러한 이념을 구체화하는 담론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

1)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선구적인 이론적 연구들 중 하나로 황승흠·황성기·김지연·최승훈,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이하 황승흠 외 3인(2004))를 들 수 있는데, 이 책은 주로 유럽에서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인터넷 자율규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 자율규제모델이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유럽에서 제시되었던 인터넷 자율규제 장치들 중 일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패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로 대표되는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훌륭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혹은 너무 이상적인 모델인 나머지 착근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을 제도화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나,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정부 주도의 제도화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무산된 적이 있다. 그 이후로는 최소한 한국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 차원에서나 실천적 차원에서나 무의미해졌다.

둘째,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정보 유형의 차이로 인하여, 유럽에서 제시된 인터넷 자율규제모델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제시된 인터넷 자율규제모델 중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이나 인터넷하라인은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성적인 관련 불법정보(예컨대 child pornography)와 청소년유해정보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대상정보의 범위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정보나 개인정보침해정보 등의 통제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는 관계로 이러한 장치들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문제의식이나 자율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적 상황에서도 유효할 수 있다.

2)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우지숙,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편집권 행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7. 9, 54-77면.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제도화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을 기저로 하는 정부규제의 효율성 제고와 포털의 법적 책임의 강화라는 환경 하에서는 포털에 의한 자율규제의 유인(incentive)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정부규제에 대한 순응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고, 결국 시장영역에는 오로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무임 승차자들(free rider)의 상호 눈치 보기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셋째, 인터넷의 이념 및 본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한국적 특수상황이 존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폐쇄적인 기존 미디어를 '보완'하는 하나의 '공론장(public forum)'으로 기능하는 대안매체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참여, 개방 그리고 공유'의 정신은 웹 2.0이나 UCC 등의 출현으로 인하여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서구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규제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거나 담론을 주도하는 주체들은 인터넷을 이러한 대안매체로서 보기 보다는 또 하나의 '영향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무절제한 참여, 폐쇄적이고도 상호불관용의 담론형성, 사익을 위한 공유'로 점철되어 있는 '안전하지 못한(unsafe)' 공간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강화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인터넷이용자나 포털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넷째, 정치적 문화 성숙도의 차이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맞물려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는 후진성 그 자체이다. 표현의 자유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한국의 정치 분야일 것이다. 정치적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아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재갈을 물리려고 인터넷 규제시스템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항상 '인터넷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통제는 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터넷을 항상 정파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려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의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노력도 항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정치적 문화의 후진성이나 표현의 자유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물이해로 인하여,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이나 회의가 팽배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자율규제가 도입되고 착근하는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정부영역과 시장 영역의 적절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도 지적할 수 있겠다. ‘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기준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즉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규제의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것이 곧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영역과 시장영역은 합리적·과학적 분석과 근거에 기반하여 각각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는 시장영역에 맡겨야 할 부분까지 정부영역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영역이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민주주의에의 기여

인터넷 자율규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 가버넌스(governance)³⁾의 효율성 향상 차원과 민주주의의 비용절감 차원이다. 첫째, 가버넌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웹 2.0의 쌍방향 소통과 전방위 확산 기능은 의견의 다양성 보장을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집단지성을 통한 해법 모색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회적 현안 대응의 효율성 향상은 다시 정부 영역에 대한 신뢰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웹 2.0의 기능은 웹 1.0과 달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져 사회적 이슈나 특정 사안에 대한 집단 지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주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인터넷은 국가와 정치 영역은 홍보비용 절감 및 정보제공 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청와대와 정부, 정당과 국회의원 등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선거

3) 현대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는 기존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상명 하달식 통치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협력 관계에서의 국가 운영 즉,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 및 사회 구성세력과의 권력 배분, 공동의 노력을 통한 사회적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가버넌스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운동, 정당 정책의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며, 이용자들은 관련 정보를 인터넷 공간에서 쉽고 빠르게 제공받고 있다. 기존의 정치와 국가 영역에서의 홍보 방식이 언론사를 매개한 간접적 홍보 방식이었다면 웹 2.0은 직접적 홍보를 가능케 하였으며, 이용자들 역시 정보 습득 방법이나 비용이 현격히 단축, 감소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긍정적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문자, 이미지, 동영상, 부호, 청각 정보 등 시청각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 전파되며 정보의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의 정보유통은 시청각 정보의 생성, 공개(전달 및 게시), 회신 및 댓글 등의 피드백, 반복 피드백 등의 프로세스를 가지며,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중에, 혹은 반복적 과정 속에서 정보의 확산이 이루어진다. 정보유통 프로세스 단계는, 최초 정보 생산자가 시각적,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구현하는 게시(upload)행위를 하게 되고, 게시된 시청각 정보(콘텐츠, contents)는 특정인, 소수,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transfer)이 되어 공개(open)가 되고 이에 대해 인지자(이용자)의 반응(response)이 회신, 댓글 등의 피드백으로 이어진다. 생산된 정보에 대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은 양질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 되기도 하고, 무의미한 악성, 저질정보의 꾸러미가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가버넌스 차원에서 이러한 악성정보, 예컨대 불법·음란정보의 게시 및 아웃 링크 등의 행위, 이유 없는 모욕, 명예훼손, 비방 등에 대한 자율규제는 필수적이다. 인터넷 상의 악성, 저질정보는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그리고 이외의 악성 정보 등 정보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다시 게시 유형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인지, 개인 블로그인지, 댓글 등의 피드백 유형 정보인지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화된 규제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최근까지의 사회적 논쟁처럼 정부나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정부기관에 의한 콘텐츠 규제는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약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규제가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은 명백한 불법정보나 국가 안보와 현저히 관련된 사항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정보 생산자와 유통경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

업자에게 규제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형성의 방향성이나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협의 등 정부는 사업자와의 상호 협조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은 공론장으로 역할하며 의견의 다양성이 구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국가와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며 국가와 시장의 가버넌스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 시민 육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대국민 정보제공 부분에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정보제공체계를 구현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범람하는 불법·유해정보는 이러한 민주적 가치의 학습 효과⁴⁾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에 대한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에 의한 타율적 강제가 아닌 사업자와 이용자 등 시장과 민간 영역이 국가와 소통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인터넷이 가진 민주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3. 인터넷 자율규제란?

가. 자율규제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⁵⁾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에서 부딪히는 최초의 문제는 그 개념 정의에 있다. 자율규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본질이 변해감에 따라 진화할 뿐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의 여러 측면들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들이 생성된다. 또한 그것이 수행되는 국가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문제에 접근하기에 앞서 이 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개념 정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란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4) 웹 2.0의 기본정신인 ‘참여, 개방, 공유’의 정신은 민주주의 진화적 개념이다. 사회 구성원의 의견의 다양성이 포털 사이트 등 웹페이지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쌍방향 소통, 전방위 확산을 통해 이용자들은 의견의 비교, 경쟁, 교정 등의 심의과정을 학습하게 되고, 다른 의견(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참여와 협력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5) 자세한 것은 황승흠 외 3인(2004), 4-6면 참조.

를 지칭하여 사용된다.⁶⁾ 다른 한편, 어떤 이유에서이건 간에 민간영역이 규제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스스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자율규제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적’ 자율규제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의 자율규제는 행위자들 각각의 특수한 동기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도 밖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율규제의 개념은 무규제(un-regulation) 혹은 탈규제(de-regulation)와도 다르다. 탈규제는 과도하거나 혹은 시장요인을 악화시키는 공적 규제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어떠한 규제의 틀을 해체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행위자를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⁷⁾ 또한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의 전적인 배제 내지 정부규제의 비적용을 의미하는 무규제와도 다르다. 오히려 자율규제의 구현장치들은 정부규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며, 이러한 경향은 규제대상이 표현물의 통제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⁸⁾ 따라서 자율규제의 정부적 성격(governmental nature of self-regulation)은 위임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즉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 간의 차이는 자율규제의 구현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

6)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소년보호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라고 할 것이다.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은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 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하고 있다.

7) Ukrow, J., *Self-Regulation in the Media and European Community Law*, Saarbrücken, 1999, 15면.

8) Price, Monroe E. & Steffan G. Verhulst,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137면.

우 중요하다.⁹⁾ 먼저 위임적 자율규제(mandated self-regulation)의 경우, 민간영역이 정부가 정의하는 틀 안에서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도록 분명하게 요구 받는다. 이는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의 자율규제로 미국의 V-Chip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¹⁰⁾ 승인적 자율규제(sanctioned self-regulation)는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규제하되,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강제적 자율규제(enforced self-regulation)는 민간영역이 스스로 규제를 형성하고 부과하지만, 그리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하는 규제를 강제한다. 이러한 유형의 예로, 영국의 간행물불만처리위원회(the Press Complaints Commission)와 이전의 호주 방송청(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ABA)¹¹⁾에 의한 콘텐츠규제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자율규제(voluntary self-regulation)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고, 서로 다른 규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자와 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경험들도 각기 다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여러 유형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9) Price & Verhulst, 위의 논문, 171-172면.

10) 1996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의 제5장에 해당하는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에 V-chip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이 들어 있다.

11) 호주의 경우에는, 기존의 호주방송청(the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과 호주커뮤니케이션청(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을 통합한 호주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이 2005. 7. 1부터 출범하였다. 호주 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은 방송(broadcasting), 라디오커뮤니케이션(radio communications), 통신(telecommunications) 및 온라인 콘텐츠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호주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의 업무는 다음 네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통신산업분야에서 소비자 및 기타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자율규제와 경쟁을 촉진하는 업무, 둘째, 전자매체(electronic media)가 지역공동체의 기준(community standards)을 존중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 셋째, 방송서비스대역(broadcasting services bands)을 포함한 라디오파주(radiofrequency spectrum)를 관리하는 업무, 넷째, 국제적으로 호주의 커뮤니케이션 및 방송이익을 대표하는 업무. 한편 호주에는 방송산업, 인터넷, 통신산업, 라디오커뮤니케이션산업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관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율규제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율규제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영역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¹²⁾부터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¹³⁾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이나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율규제 개념 및 방식이 동시에 적용하거나 혹은 혼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표준(prototype)으로서의 자율규제의 개념이나 모델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설명한 자율규제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를 ‘자유방임’이 아닌,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12) 이 경우도 개별 사업자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협회 등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13) 국가가 만든 국가 주도의 콘텐츠 심의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율심의시스템을 접목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소년보호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라고 할 것이다.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은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 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심의·등급분류권한을 갖고 있는 각주의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은 주간협정(Staatsvertrag)에 의해 이 업무를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승인한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즉 외형은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 심의업무의 수행은 영화 산업계에 의해 설립된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985년 주들은 「영화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정(Vereinbarung über die Freigabe und Kennzeichnung von Filmen, Videokassetten und vergleichbaren Bildträgern)」을 체결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심의 및 등급분류에 있어서 전문적인 관정기관으로서의 ‘영화산업 및 청소년심사기관의 자율규제위원회(die Ausschüsse der Freiwilligen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Jugendprüfstelle: FSK/J)’의 심의를 원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동 협정 제1조). 즉 개별 주의 청소년관청은 위 자율규제기구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자신의 결정으로 공고하는 것이다. 물론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심의라 할지라도 외형은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심의신청을 기각하거나 불리한 등급을 부여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허용된다.

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¹⁴⁾으로 개념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자율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과 사실상 동의어로 이해될 수 있다.¹⁵⁾

자율규제의 개념을 위와 같이 이해할 때, 이러한 자율규제의 개념은 무규제(non-regulation) 혹은 비규제(un-regulation)와 다르고, 또한 탈규제(de-regulation)와도 차별성을 띠게 된다. 무규제 혹은 비규제가 국가로부터의 회피, 국가와의 대결, 국가 개입의 반대를 의미하거나, 탈규제가 과도하거나 혹은 시장을 약화시키는 공적 규제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보고서에서 원용하고 있는 자율규제는 국가와의 대결을 지향하여나 국가 개입의 철저한 반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공적 규제시스템을 거의 해체의 수준까지 완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¹⁶⁾ 오히려 이 보고서가 원용하고 있는 자율규제는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행위자를 바꾸거나 최소한 민간영역이 정부영역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규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율규제의 개념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자율규제의 정부적 성격(governmental nature of self-regulation)이 자율규제의 핵심적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¹⁷⁾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같은 자율규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율규제의 개념은 여전히 정부영역의 후견주의적 간섭의 전통이 강하고 ‘자유와 책임의 조화’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그리고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지배적인 한국적 환경에서는 일종의 표준으로서 혹은

14) 황승흠 외 3인(2004), 7-8면.

15) 황승흠,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11, 265면.

16) 물론 기존의 공적 규제시스템이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것도 자율규제모델이 추구하는 지향점 중의 하나 혹은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토대마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17) 황승흠 외 3인(2004), 7-8면.

과도기적 실험으로서 적절할 수 있다고 본다.

제2절 자율규제의 한계¹⁸⁾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자율규제가 정부규제를 통해 획득될 수 없는 수많은 이익들을 제공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율규제시스템이 전통적인 규제시스템의 관료주의적이고 법·제도적인 규제절차를 대신하여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과연 그러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자율규제의 한계와 관련하여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는 규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자발적’ 성격 때문에, 명령 및 통제적 유형의 규제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그 자체로 비용 대 이익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 오히려 대개의 경우, 자율규제의 이행과 수용 역시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며, 그러한 비용이 자율규제가 없는 경우 정부가 직접 떠맡아야 할 비용보다 항상 낮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율규제를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비용은 커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또한 자율규제는 그 입안, 실행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외부적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자율규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는 반면 다른 사업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소위 ‘무임승차(free rider)’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매체에 대한 자율규제는 의견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인 검열보다 더 강제적이고 포괄적인 민간검열(혹은 사적 검열)을 결과할 수 있다.¹⁹⁾ 또한 자율규제 주체가 정부와 결탁하거나 반대로 정부의 개입

18) 자세한 것은 황승훈 외 3인(2004), 13-15면.

19) 예를 들어, 사업자단체의 규약이나 행동강령이 지시하는 엄밀한 규제절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압력을 느낀 나머지 사회사의 회선을 이용하거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콘텐츠들을 과잉 차단(혹은 삭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의 매체와는 달리, 출판인으로서의 양식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비전문가적인 콘텐츠 제작자에 의해 ‘출판’이 이루어지는

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경우, 자율규제절차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활동과 비교해 볼 때, 자율규제는 ‘민주주의의 결여’ 혹은 ‘조합주의적 성격’을 띠게 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정례화 되고 합법적인 경로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집단에 대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권한의 오용을 결과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규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 융통성의 증진, 규제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표현 영역에 있어서 정부 간섭의 최소화 등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콘텐츠 규제 목표의 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수많은 위험과 한계들이 노정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과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는 자율규제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법·제도적 규제와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²⁰⁾

따라서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적절한 책임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규제 혹은 공동규제 시스템(co-regulation system)이 자율규제의 효율적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관련 매체에서 이러한 과잉의 자율규제가 광범위한 민간 검열로 이어지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20) Sieber, Ulrich, “Legal Regulation, Law Enforcement and Self-Regulation : A New Alliance for Preventing Illegal Content on the Internet”,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324-325면.

제3절 자율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한국에서 인터넷콘텐츠 영역에서의 자율규제기구로 활동 중인 기구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존재한다. 먼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09. 3. 3. 설립된 기구로서, 민원 또는 회원사, 타기관 이첩을 통해 접수된 불법·불건전 인터넷 게시물의 처리에 대한 정책결정 및 자율조치를 주된 직무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KIADO)를 들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2007. 1. 설립된 기구로서, 인터넷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및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인터넷광고의 자율적 사전 및 사후심의(사후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의), 불법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인터넷광고로 인한 분쟁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조정 등 업무 등을 주된 직무로 하고 있다. 끝으로, 무선 인터넷 분야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있다. 연합회는 2009. 9. 무선 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사)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를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로 재창립한 기구로서, 망개방 및 이동통신3사 내부 포털(NATE, SHOW, OZ-Lite) 서비스의 콘텐츠 유해성, 부당 마케팅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사전심의) 및 사후조치 등을 주된 직무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한 자율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한 자율규제의 현황

가. 개요

1) 배경

미국, 유럽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보호(아동포르노 유통 금지) 및 인종차별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는 1997년 e-commerce 협회 및 온라인 사업자 중심으로 설립된 기구로 인터넷 공동규제(co-regulation)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영국의 경우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1996년 10월 인터넷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이 비영리민간기구로 출범하여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 폭력성 성인포르노, 인종차별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가 1999년 11월 유럽과 미국의 8개 핫라인의 참여로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31개국 35개 회원기관 참여한 국제적인 핫라인 기관으로서 정부와 민간 부분의 인터넷 공동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FSM, IWF, INHOPE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인터넷상의 자율규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결음마 단계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정부규제는 효율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규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공감하고 보다 신뢰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자, 이용자 등의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율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의 시발점이자 초석으로서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출범한 것이다.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의의와 조직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7개 포털사가 발기인이 되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가 출범하였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를 실현하고 동시에 인터넷 사업자 공동의 사회적 책무 및 공공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표2-1> 설립목적

-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공공선 구현
-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인터넷 공간의 질서와 합의 도출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6개 인터넷 사업자를 회원사²¹⁾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회원사 게시물 정보의 건전한 유통 및 불건전 정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물론 개별 포털사마다 자체적인 모니터링 팀을 가동하여 개별 사업자 단위의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시장영역에서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사업자들의 ‘공동’의 자율규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자 단위의 자율규제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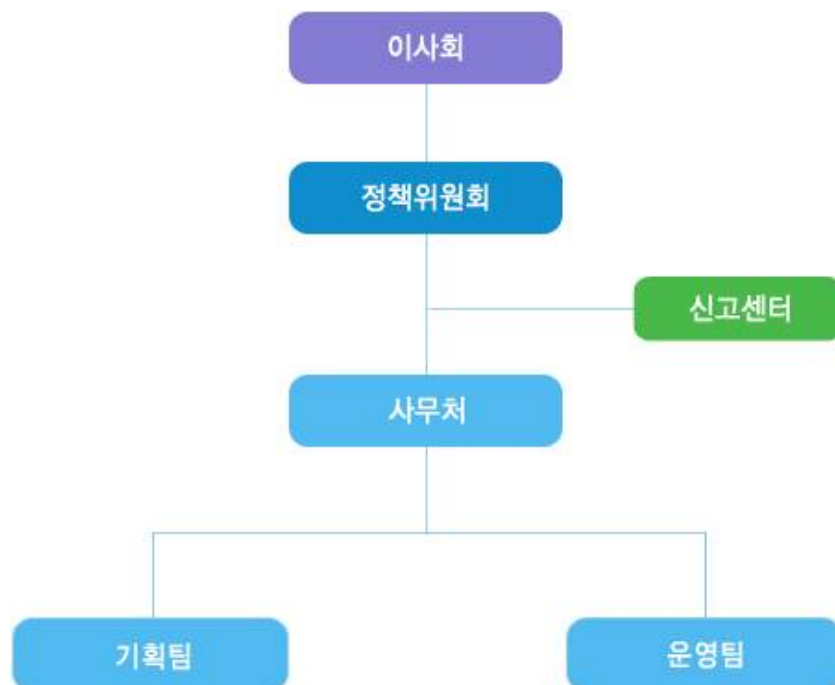
<그림2-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이사회, 정책위원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 21) 출범당시 7개 회원사 중 프리챌의 탈퇴로 현재 6개사이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회원사 소속이 아닌 인터넷 자율규제 전문가 5인과 회원사의 게시물 관리·운영 부서의 책임자급 6인 등 총 11인이 활동하고 있다. 게시물과 관련된 정책결정 및 심의결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정책위원회에 있다. 사무처는 신고센터 운영, 이사회 및 정책위원회 운영 등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와 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그림2-2>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 조직도



3) 정책위원회 기능과 업무

정책위원회는 상근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인, 회원사 등 각계 인터넷 자율규제 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회원사 게시물 중 불건전한 정보에 대하여 공동의 대응과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주

로 회원사의 신고 게시물, 이용자 신고 게시물, 사회적 현안 게시물 등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제시와 개별 게시물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다. 회의는 신속한 결정 및 처리를 위하여 온라인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온라인 회의 시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별도 사안에 대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여기서 게시물이란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관찰대상은 회원사의 게시물에만 국한되어 있고, 비회원사 게시물은 관찰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정책위원회의 결정은 정책결정과 심의결정 등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정책결정은 정책위원회가 게시물의 취급에 관한 일반 기준을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심의결정은 정책위원회가 개별 게시물에 대한 불법 및 청소년유해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3호 및 제4호). 정책결정의 경우에는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5항), 심의결정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제2호). 정책결정의 경우에 전원합의를 요건으로 한 것은, 소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합의에 도출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다차원적인 논의구조 속에서 숙의적(熟議的) 합의 구조에서 해결책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개별 게시물에 대한 결정의 경우에 전원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는 신속성을 그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각사의 게시물 정책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의사결정은 외부의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이다.

4)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인터넷진흥원)는 회원사 게시물 중 불법, 불건전 게시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안내를 수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KISO 홈페이지의 신고센터(www.kiso.or.kr)를 통해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신고

대상은 불법정보, 음란정보, 청소년유해정보, 명예훼손을 비롯한 권리침해 신고 등이다. 신고는 홈페이지의 안내를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 신고주소, 신고제목,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는 회원사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신고 정보 중 사회적 현안 등 정책결정 사안이 필요할 경우 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며, 불법정보 중 별도의 처리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안내한다.

<표2-2> 신고 대상 및 처리방법

○ 불법정보
※ 단, 선거법 등 명백하게 처리할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안내
○ 음란정보
○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이용자에게 각사로 신고하도록 안내)
※ 정책위원이 사안에 따라 안건상정 가능
○ 청소년유해정보 : 각사 처리 안내
※ 신고 접수 후 각사이첩 및 처리결과 이용자 통보

<그림2-3> 이용자 신고 화면

신고하기 Applications

신고도움말
처리결과
신고하기

HOME > 신고하기 > 불법·권리 침해 신고하기

▶ 게시물을 신고는 게시물 주소(URL)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제목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 게시물 주소(상세URL) 등의 증거자료 미비 시, 접수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기타 권리침해 관련 신고는 **「권리침해신고」**를 이용하여 주시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 이름

● 이메일 @ 선택하세요.

● 연락처

● 답변 SMS알림 ☒ SMS답변 알림 동의 010 -

● 제목

● 게시물 주소(URL) ※ 신고하는 모든 게시물에 정확한 위치(URL)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비스 명 / 주소(URL) / 게시물 제목

● 내용

● 첨부파일

● 정책결정 공개 ☐ 신고해 주신 내용이 정책위원회에 정책결정 안으로 상정될 경우 정책 결정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정책결정 내용은 [알림마당 > 정책결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현황

설명하였듯이 정책결정은 정책위원회가 게시물의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심의결정은 정책위원회가 개별 게시물에 대한 불법 및 청소년유해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2009년 3월부터 2010년 7월 현재까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의 결정은 총 25건이다. 이 중에서 공개 정책결정은 7건이고, 비공개 정책결정은 3건이다. 그리고 개별 게시물의 심의결정이 15건이다. 특히 정책결정은 게시물의 취급 및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회원사 단계에서의 자율규제에 있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게시물 처리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작동한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개 정책결정 7건의 내용과 그 의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1)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2009. 4. 21.)

가) 내용

1.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제기(신고번호 KI090406160001)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1) 일반원칙

-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거나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이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다.

(3)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

- 정보통신망법상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은 그 적용 요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위에 언급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당초 상정된 정책안의 대상이었던 이종걸 의원 발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사가 자체정책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명백한 불법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이번 정책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의의

2009년 4월 21일 이루어진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결정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가 최초로 내린 정책결정으로 그 내용은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가 규

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적용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가 피해 주장자, 게시물 게시자, 당해 게시물을 매개하는 포털사업자 모두에게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관계로, 그러한 법적 공백을 메울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2009. 6. 29.)

가) 내용

KISO는 2009년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에 따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한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정책에 따른 처리의 대상은 각 회원사의 게시물로 제한한다.

1.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

(1) 일반원칙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고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각 회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처리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위의 절차를

따른다.

-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3.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한 검색 제한’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

나) 의의

2009년 6월 29일 이루어진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결정’은 제1호 정책결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한 정책결정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가 그동안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소지자가 아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일정 정도 임시조치 적용의 요건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도 하고 있다. 또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한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로 볼 수 있다.

3) 제2호 정책의 ‘처리제한’ 중 공인의 임시조치 요청과 관련한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자료의 범위(2009. 9. 3.)

가) 내용

제2호 정책결정의 ‘처리제한’ 중 공인의 임시조치 요청과 관련하여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자료의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허위 사실 입증자료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이 축적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KISO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하였다.

1. A의원의 대리투표 동영상 사례

: 국회 사무처 투표 로그기록과 관련 동영상

2. B의원의 전직 대통령 추모기간 중 외유관련 사례

: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기록

나) 의의

2009년 9월 3일 이루어진 제2호 정책의 ‘처리제한’ 중 공인의 임시조치 요청과 관련한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자료의 범위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책결정 제2호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와 관련된 일반원칙’에서 ‘처리의 제한’ 중 공인의 임시조치 요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책결정 제2호는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시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2가지 정도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허위사실 입증자료의 범위의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허위사실 입증자료의 범위는 처음부터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적인 차원에서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에 당시 문제가 되었던 2가지 사례의 경우, 즉 A의원의 대리투표 동영상 사례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 투표 로그기록과 관련 동영상’을, B의원의 전직 대통령 추모기간 중 외유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기록’을 허위사실 입증자료로 인정하였다.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의 건(2009. 10. 21.)

가)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언급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을 의미한다.
2.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범위는 해당부서의 직제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 기초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함), 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면, 동, 리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 교육감,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기관 범위는 추후 결정한다.

나) 의의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에 관한 인격권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²²⁾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책결정 제2호에서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결정 제2호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2009. 10. 21. 이루어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의 건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책결정 제2호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와 관련된 일관된 원칙’에서 ‘처리의 제한’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

2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근거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그 소지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헌마120;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5. 9. 28. 92헌마23등(병합); 헌재 1997. 12. 24. 96헌마365 등).

둘째,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는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장치이므로,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 주장자는 인격권이라는 권리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개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인격권이라는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즉 국가기관은 인격권의 주체라고 할 수도 없고, ‘개인적’ 명예를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60-62면 참조.

셋째, 국가기관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개별 국가기관의 임시조치를 허용할 경우 정보게시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통한 최종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더라도, 임시조치를 요구한 개별 국가기관에게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거나 국가기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중법’)은 제14조 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반론보도청구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음. 언중법 제16조 제3항)을 두어 국가기관 등에게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당사자능력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특별규정과 동일한 내용인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을 도입한 취지에 일반적 인격권 보장의 요청 외에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의 목적도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허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 특별규정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즉, 국가기관에게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권한을 ‘특별히’ 인정한 취지는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는, 언중법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를 근거로 한 임시조치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에서 등장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 정책결정 제2호의 ‘공적업무’에 대한 추가결정의 건(2010. 5. 18.)

가)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6.29)에서 언급된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결정한다.

1. 공인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 중 공적 업무에 포함된다.

나) 의의

2010년 5월 18일 이루어진 정책결정 제2호의 ‘공적업무’에 대한 추가결정의 건은 정책결정 제2호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요건 중 ‘공적 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정책결정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선출직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출마한 경우, 선출직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직에 재직하고 있던 당시의 업무에 관한 게시글들이 다수 유통되면서, 이러한 게시글들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2010. 5. 18. 이루어진 정책결정은 공인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 중 공적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게시물들이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허위사실 관련 게시물 처리절차에 관한 정책결정의 건(2010. 6. 22.)

가)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허위사실 관련 게시물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게시물의 삭제요청은 ‘공문’에 의하여야 한다.

(2) 게시물의 URL이 특정되어야 한다.

(3)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4)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게시하였음이 소명되어야 한다.

나) 의의

2010년 6월 22일 이루어진 허위사실 관련 게시물 처리절차에 관한 정책결정의 건은 국가기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불법정보 삭제요청을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터넷콘텐츠는 불법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기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불법정보임을 이유로 당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과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자율규제기구와 국가기관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있다.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2010. 6. 28)

가)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게시물에 대해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이 KISO의 심의는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정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이 정책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최종판결 선고 시까지로 그 효력을 한정한다.

[결정배경]

회원사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원칙적으로 따르며, 법적 근거가 분명한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른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정보 이외에 유해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 사회적 유해성 정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불법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가 아닌 사회적 유해성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등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강제성이 있는 행정처분이라면 회원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KISO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자신의 시정요구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하는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이 관련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 시까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사가 심의위원회의 ‘사회적 유해성’ 판단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정보 게시자는 그에 대한 불복수단 등 자신의 권리 제한을 시정할 방법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ISO는 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이외의 사유로 시정요구를 해온 게시물에 대해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이 분명해질 때까지(즉, 위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선고될 때까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해성’ 문제는 범세계적으로 정부규제나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나) 의의

2010년 6월 28일 이루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은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이외의 기타 사회적 유해성을 이유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공적 심의기관이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 당해 게시물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법적 성격의 규명이 법원에 의해서 명확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이외의 기타 사회적 유해성 정보의 경우에는 자율규제의 영역임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협력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권한 및 기능의 적정하고도 명확한 배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한 자율규제의 문제점 및 한계

2009년 3월부터 2010년 7월 현재까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자유와 책임의 조화’라는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포털이 매개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의 제시 및 개별 게시물의 불법 여부 등에 대한 심의·판단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그 경험과 역사가 일천했던 자율규제를 시도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운영현황, 배경, 조건 등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한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회원사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회원사는 주요 포털 6개사에 불과하다. 물론 이들 주요 포털 6개사가 매개하는 콘텐츠나 게시물들이 국내 인터넷 콘텐츠 유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율규제의 ‘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한 자율규제의 한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회원사의 외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동강령의 부재로 인하여 회원사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가 결정하는 정책이나 게시물에 대한 심의는 원칙적으로 회원사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및 심의결정에 대해서 회원사들이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권이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및 심의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전혀 없다. 비록 국가의 제정법(hard law)이 갖는 구속력은 갖지 못하겠지만, 자율규제의 규범적 기반인 자율규범(soft law)으로서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정을 통해서 자율규제의 구속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회원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현재 정책위원회는 상근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인, 회원사 등 각계 인터넷 자율규제 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외부 전문가 5인, 회원사 대표 6인), 회원사 대표가 외부전문가보다 많은 6인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시장영역에서의 자율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자율규제기구가 사업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게시물 처리에 관한 일반기준인 정책결정과 특정 게시물의 불법, 청소년유해 여부 등을 심의·판단하는 심의결정을 내리는 기구인 정책위원회에 사업자대표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KISO의 독립성 확보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위원회의 구성

에 있어서 회원사 대표와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을 통해, 정책위원회가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자율규제기구의 핵심기구가 될 필요가 있다.

넷째, 회원사의 펀딩만으로 운영되는 것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위원회의 회원사로부터의 독립성문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재원조성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운영경비는 전적으로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되고 있다. 자율규제기구는 국가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원사의 펀딩만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재원조성방식은 예컨대 정부와 회원사의 펀딩을 50 : 50으로 한다든지 등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적 심의기관 등 정부영역과의 공식적인 협력네트워크 또는 협력모델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자율규제가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규제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적 심의기관 등 정부영역과의 공식적인 협력네트워크 또는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공식적인 협력네트워크 또는 협력모델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규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적 심의기관 등 정부영역과의 공식적인 협력네트워크 또는 협력모델이 보다 구체적으로 디자인되고 더 나아가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제4절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조화의 필요성

1.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조화의 필요성

가. 인터넷사업자의 종류와 법적 책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문제되는 당해 정보를 매개한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문제이다. 대표적인 예가 명예훼손의 경우이다. 예컨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가 A社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라 왔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당해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를 직접 제작 및 제공한 자는 당연히 당해 정

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단순히 정보유통을 매개만 한 사이트운영자 A社는 당해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명예훼손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라든지, 음란물의 유통행위와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정보매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유무는 당해 정보를 매개한 자에게 소위 ‘편집 자율성(editorial autonomy)’ 내지 ‘편집통제권(editorial control)’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²³⁾, 이러한 해결방식은 인터넷상에서도 여전히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내지 주체는 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정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다.²⁴⁾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 : 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 : 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PC통신이라든지 또는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Internet carriage service)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메가패스, 하나포스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23) 이와 관련된 자세한 것은 Lance Rose, *NetLaw: Your Rights in the Online World*, Osborne McGraw-Hill, 1995, 8-26면 참조.

24)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210-211면 참조.

위와 같은 구분은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SP와 OSP, 포털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포털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 : ICH)에 해당되고, 따라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정보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포털의 주된 서비스는 소위 ‘public forum’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게시판서비스나 블로그나 카페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검색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검색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 대한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포털은 기본적으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적용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하며, ‘정보제공자’를 전제로 하여 규제를 적용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반하게 된다.

포털에 대해서 제3자가 유통시킨 정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정부의 강제적 규제’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포털에게 부과하게 되면, 포털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사적 검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차단하거나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위축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위축효과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해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수많은 게시물들을 일일이 포털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잠재적인 법적 책임 발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포털은 유통되는 정보의 수와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상, 이러한 위축효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이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문제는 인터넷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인터넷사업자는 가능한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

체적으로 정보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보다는 사업자협회나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표준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법적 책임의 예측가능성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 국가규제의 한계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에 의한 통제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용이성, 다양성, 익명성, 복제용이성, 국제성, 초공간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인터넷의 속성에 따라 쉽게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규제의 수단이 기술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새로운 인터넷의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오·남용되는 정보의 유통 자체를 통제하기 보다는 정보이용자인 사용자의 불편을 강화하거나, 정보서비스제공자나 데이터 호스트 등의 활동에 규제 장치를 늘림으로써 정보이용시스템의 비효율만을 증대시키는 반면 오남용의 폐해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는데 실패하였다.

다.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상호관련성

인터넷 자율규제의 문제, 특히 이 보고서가 기반하고 있는 공동규제시스템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인터넷규제를 위한 방법과 관련한 법적 규제(혹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상호관련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²⁵⁾

먼저 자율규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율규제는 당면한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의해 실행된다.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 특히 인터넷산업의 구성원인 인터넷사업자들은 당면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는데 필요한 수단들, 예컨대 불법 및 유해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법집행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

25) 자세한 내용은 Ulrich Sieber, “Legal Regulation, Law Enforcement and Self-regulation: A New Alliance for Preventing Illegal Content on the Internet”,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324-325면 참조.

제도화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보다는 ‘유연한’ 방식이며, 또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관행이나 경영방식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으며, 항상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법적 규제는 관련 입법들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법개정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보다는 ‘국제적인’ 방식이라는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은 국제적인 차원의 협조가 보다 쉬운 반면에, 법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가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며, 국가 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법적 규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규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자율규제는 자율규범 및 이의 자발적 준수를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둘째, 법적 규제는 본질적으로 입법에 의해 제도화되고, 국가의 ‘강제력’을 담보로 집행되지만, 자율규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자율규제가 강제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율규제의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법적 규제는 ‘민주적인’ 의회의 결정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에 자율규제는 종종 여타의 관련 당사자들 예컨대 부모 등의 참여 없이 인터넷산업부문의 특수한 이해집단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를 지니게 된다.

결국 인터넷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이 인터넷의 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만으로는, 제재 등의 강제조치가 없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규제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지닐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도 힘들 것이다. 그리고 법적 규제시스템만으로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터넷의 특성 즉 기술적 특성, 급변성, 국제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자율규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²⁶⁾

지금까지 공동규제시스템으로서의 공적 규제(혹은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공적 규제(혹은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즉 자율규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의 내용과 기능을 결정하거나 자율규제시스템의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 문제를 다루기 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간의 관계문제다. 분명한 것은 자율규제가 정부규제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더라도, 인터넷에 대한 법적·공적 규제시스템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안전, 공동체 구성원의 권익 보호,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가치의 존중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공의 안녕과 사회적 안전이 염려되는 경우, 정부는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정부의 고유한 역할을 자율규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의 완벽한 대체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인터넷의 불법·유해콘텐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 규제환경에서, 콘텐츠 규제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자율규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인터넷 자율규제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대신 자율규제의 토대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가. 조정과 지원

26) 자세한 것은 황승흠 외 3인(2004), 194-196면 참조.

자율규제(공동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정부의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시민사회의 자율규제 역량의 강화 및 자율규제 기반의 조성²⁷⁾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의 조정자로 역할, 둘째,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설계자로 역할, 셋째, 당해 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지원 및 감독을 수행하여 지원자 내지 감독자로서의 역할 등이다.²⁷⁾

나. 규제기관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보장

자율규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²⁸⁾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규제권한의 융통성 있고 신중한 행사가 필요하다.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권한의 발동이 융통성 있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운영의 경직성이 인터넷사업자에게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율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의 경직성이 인터넷 정보 유통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예가, 2005년 상반기,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 야후(yahoo)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18세 관람가의 성인용 VOD(Video on Demand)의 음란성과 관련하여, 검찰이 VOD를 제작한 자와 그리고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VOD를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서비스한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실무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이용 음란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례이다. 2005년도에 검찰이 포털사이트의 성인용 VOD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정보유통죄를 적용하여 수사 및 기소한 이후,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성인용 VOD 서비스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켜 버렸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성인용 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27) 정책집행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서, 흔히 예산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 특히 포털시장에 있어서 사업자들 간의 시장점유율의 불균형, 인터넷사업자들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면 물론 국가에 의한 예산지원이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지원을 이유로 자율규제기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율규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에 의한 예산지원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28) 여기서 규제기관이란 검찰 등의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법집행기관 및 정책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각종 심의기관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는 기회 자체가 완전히 봉쇄된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인용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기반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다.

다. 자율규제의 법적 보장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나 자율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집행의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곧바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점은 바로 자율규제의 한계로서도 작용한다. 결국 자율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자율규제나 콘텐츠에 대한 자율심의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자율규제나 자율심의를 대한 면책조항을 입법화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인터넷콘텐츠의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방안

제1절 인터넷콘텐츠 심의에서의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방안

1. 인터넷콘텐츠 심의에서의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가. 기본적 전제조건

1) 면책조항의 입법화

현재 인터넷 자율규제를 시도하기 위해 7개 포털사가 주체가 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가 설립되어 있다. 2009년 3월에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를 실현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공공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그 설립목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선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인터넷 공간의 질서와 합의 도출’을 제시하고 있다.²⁹⁾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주된 임무는 포털이 매개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관한 정책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포털 매개 게시물의 처리와 관련한 정책기준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유해정보이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시스템은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제도이다. 둘째, 음란정보 등의 불법정보이다. 불법정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시스템이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이다. 셋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권리침해정보이다.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시스템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2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KISO저널』 제1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09. 10. 30, 6-7면.

임시조치제도이다. 넷째, 저작권침해정보이다. 저작권침해정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시스템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Notice & Take Down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유형의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적·공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법제도의 정립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자율규제조치를 하면 법적 책임이 면책된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자율규제에 대한 면책조항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책조항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콘텐츠의 ‘유통’에서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통제’에서 비롯되는 법적 부담(legal risk)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업자도 자율규제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면책조항은 자율규제에 있어서 하나의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강화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

우선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2조의 자율규제조항의 경우, 인터넷사업자가 일정한 콘텐츠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판단하면,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는 어떤 법적 면책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차피 사후심의를 통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자는 스스로 심의해야 할 어떠한 동기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사업자의 판단에 대해서도 법적 효과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만 이 조항이 자율규제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³⁰⁾

불법정보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내지 자율심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면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표현의

30) 황승흠(2008), 284면.

자유를 보호하기 위축효과를 막기 위하여,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에 ‘쌍방향컴퓨터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의 제공자는 다른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출판인 혹은 발화자(publisher or speaker)’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는 것과 쌍방향컴퓨터서비스 제공자가 선의의 자발적 조치로 음란정보 등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 자발적 차단조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착한 사마리안 조항’³¹⁾을 둔 것은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임시조치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면책조항이 없으면 포털의 경우에는 그 매개적 기능으로 인하여 정보게시자든 피해주장자든 어느 쪽으로부터도 법적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6항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만 ‘임의적 책임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임의의 임시조치제도의 경우에는 임의적 책임감면조항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보다 ‘일반적인 필요적 책임면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2)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의 경계의 명확화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적·공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는 두 번째 전제조건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자

31) 47 U.S.C. §230(c). 구체적인 원문은 다음과 같다. (c) Protection for "Good Samaritan"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1) Treatment of publisher or speaker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2) Civil liability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held liable on account of -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the provider or user considers to be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whether or not such material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le to information content providers or others the technical mea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described in paragraph (1).

율규제가 실시되는 경우에 기존의 정부규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이중적 또는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사업자는 이전보다 오히려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²⁾ 특히 각 매체별로 별도의 규제기관 내지 심의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주도의 심의 및 등급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계의 명확한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의 명확한 설정은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던 규제기관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의 경계의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영역의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콘텐츠 심의기능의 범위나 역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현재의 한국적 상황상 법개정을 통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심의기구 간의 MOU체결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다.

3) 자율규제의 절차와 방법의 구체적인 제시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방법과 절차, 실행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율규제의 방법과 절차, 실행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떠한 수준에서 그리고 어떠한 수단을 매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개별 콘텐츠별로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규제의 방법, 절차, 실행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명예훼손정보의 경우 자율규제가 가미된 임시조치제도라든지, 저작권침해정보의 경우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Notice & Take Down제도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에 사업자의 자율규범으로서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을 통한 자율규제의 효율성 담보를 위해서, 행동강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법적 차원

32) 황승흠(2008), 281면.

에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행동강령의 근거와 기준을 국가법이 제시하고,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자들이 정하여 이를 준수하며, 국가법에서 자율규제 준수에 따른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모델이 가능한 것이다.³³⁾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4가 ‘자율규제’라는 제명 하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막연할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을 통한 자율규제에 대한 보완적 장치들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그 자체로 실효성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시스템은 전적으로 공적 규제시스템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이다. 일정한 인터넷 콘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결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청소년에 대한 유통금지, 포장의무, 연령확인 의무, 구분 및 격리 의무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2조가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라는 제명 하에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청소년유해성 여부 판단에 대한 면책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는 어떤 법적 면책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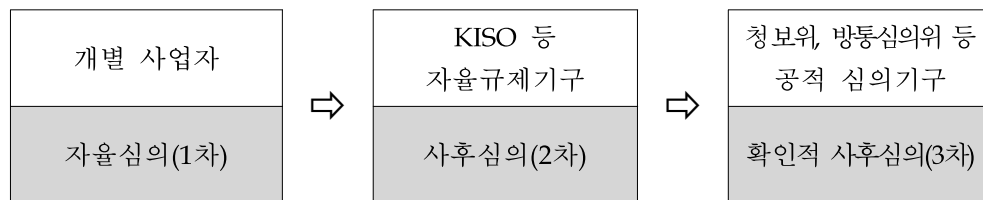
33) 황승흠(2008), 281면. 대표적으로 호주의 인터넷 규제시스템이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공적 심의기관 주도의 심의보다는 포털 사업자 또는 한국인터넷자
율정책기구 등 자율규제기구 주도의 심의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 권한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다만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는 ‘적극적 심의’에서
‘사후 확인적·소극적 심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를 기본 축으로 하면서, 한국인터넷자율정
책기구 등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등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확인적 사후심의’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방식을 더게 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유
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표3-1> 청소년유해정보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는 이미 청소년보호법 제12조에 의해 입법화되어 있
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적극적 심의를 소극적·확인적 사후 심의로 전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국인
터넷자율정책기구 등 자율규제기구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와 같은 자율규제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
의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를 대해서 면책
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책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
심의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를 의해서 청
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된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되지 않은 경
우까지 포함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자에 의한 이의제

기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확인적 사후심의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되었을 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매개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상의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한다.

다.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인터넷 자율규제, 특히 정보매개자인 포털을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의 또 다른 예로서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는 전형적으로 사법기관에 의한 규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중국적인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으므로,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이 당해 불법정보를 매개한 포털에 대한 규제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시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이용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포털 규제와 관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은 2002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³⁴⁾을 받았던 불온통신제도가 그 범위를 불법정보로 설정한 상태로 존치한 것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불온통신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이용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그러한 정보를 매개한 포털에 대한 규제시스템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이 법원에 의한 규제시스템 이외에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시스템을 주된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³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명령권제도

34) 현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35)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³⁶⁾, 동법시행령 제8조³⁷⁾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제도이다. 사법부에 의한 종국적인 불법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정보유통의 차단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하고 타당하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적 규제시스템의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서 자율규제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행정적 규제시스템도 결국 그 적용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를 전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에 자율규제를 가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자율규제 내지 자율심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건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36)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37)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첫째, 자율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정부규제의 경계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정부규제의 경계선의 설정 이전에 그 대상범위의 ‘외연’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범위는 너무 넓다. 불법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부규제든 자율규제든 혹은 공동규제이든 ‘규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의 정당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따라서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불법정보의 범위는 2002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것으로서 국가나 정부에 의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정보의 범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나 정부에 의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정보의 범위를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국한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생각건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예컨대 명예훼손 관련 정보, 혹은 사적 주체간의 분쟁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보다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등 절차적 분쟁해결프로세스에서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좁히더라도,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제44조의 7 제1항 제8호)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또한 제44조의 7 제1항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도 해석을 통해서 불법정보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범위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좁힐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공적 심의기관이 모두 담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

적 심의기관의 권한 일부를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 정보 중 음란정보와 같은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는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고, 공적 심의기관은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정보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정보만을 심의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임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율규제기구의 판단을 공적 심의기관의 결정으로 간주하는 법규정을 둬으로써, 이러한 위임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임의의 임시조치의 대상을 불법정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임의의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등 절차적 분쟁해결프로세스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임의의 임시조치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불법정보 중에서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정보는 판단의 어려움이나 민감성 등의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공적 규제시스템의 영역에 남기고, 음란정보에 대해서만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음란정보에 대한 심의를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는 것과 맞물려서, 음란정보에 대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면책조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임의의 임시조치의 대상을 음란정보에 국한시키고, 또한 음란정보 등 일정한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자율규제기구가 담당하는 경우, 불법정보에 있어서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적 전제조건으로서 자율규제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의 임의의 임시조치 내지 자율규제,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심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 면책조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임시조치 등 권리침해정보 규제시스템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1)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

현재 개별 포털사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본래취지와는 달리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시조치제도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면 포털은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30일 이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제도는 2000년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되어 있던 ‘피해자의 삭제·반박문 게재요청제도’에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소위 ‘사이버가처분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수용함과 동시에 가미한 것이다.

임시조치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자 권리의 신속한 구제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도모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정보 규제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조치제도야말로 포털 규제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슈이다. 왜냐하면 ‘피해자 - 포털 - 가해자(정보 게시자)’라고 하는 ‘삼각구도’ 하에서, 포털이 문제되는 정보 유통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임시조치제도를 통한 포털 규제는 이러한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 유통이 통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시조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임시조치제도가 ‘피해자에 의한 남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

생활 v.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물각된 채,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나 정부권력, 사회적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 내지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간부의 사진과 관련된 사례³⁸⁾,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의 발언사례³⁹⁾,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물과 관련된 사례⁴⁰⁾, 2008년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동생과 관련된 기사 및 동영상과 관련된 사례⁴¹⁾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명예훼손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다만 피해자의 권리의 신속한 구제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임시조치제도는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요청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다. 포털들이 내부적으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요청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의 내부정책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는 임시조치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부담을 개별 포털사업자가 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선책으로 임시조치제도의 남용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단순한 주장만 있다고 해서 임시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국한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

38) 2009년 5월 1일 노동절 시위 현장에서 지하철 입구를 막고 시민들에게 장봉을 휘두르는 경찰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었는데, 당사자인 서울경찰 모 간부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여 해당 사진을 담은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39) 2009년 4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모 유력일간지에 의한 임시조치요청으로 인해 포털에서 초기 대량으로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40) 2008년 12월 최병성 목사(‘생명과 평화’블로거 운영자)가 포털에 게재한 ‘1000마리 철새 폐죽음 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등 게시물 17개가 양회협회의 ‘명예훼손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41) 2008년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동생이 부산에서 성매매와 상관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와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경찰청의 요청으로 초기 대량으로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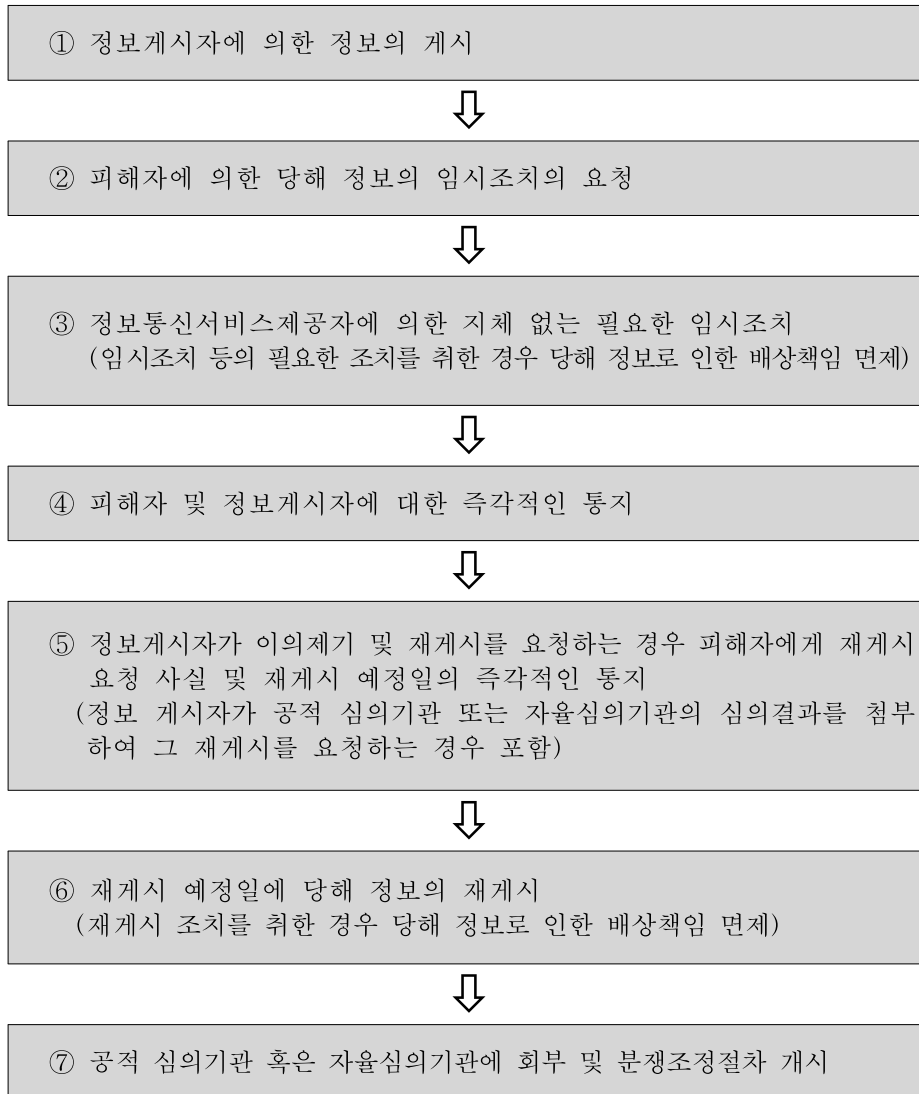
를 해주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털사업자가 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게 되고, 실제로 명예훼손의 특성상 그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결국 포털사업자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와 같이 임시조치를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개선방안

첫째,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절차 및 재게시 요청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나 재게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원래의 정보를 재게시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공적 심의기관으로 회부시키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임시조치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부담을 개별 포털사업자가 안게 되는 문제점도 동시에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해자의 임시조치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와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게시 과정에 있어서 매개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독립적인 공적 심의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능을 수행할 공적 심의기관은 그 설치나 구성, 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3의 공적 심의기관 이외에 제3의 자율 심의기관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예컨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민간영역에서의 자율심의기관이 당장 제3의 공적 심의기관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공적 심의기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3의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결과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유인해 낼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심의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심의업무의 과중을 덜어주는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표3-2>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건 처리절차



위와 같은 프로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만 충실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에 대한 개별 사업자의 실체적 판단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 요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임시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공적 심의시스템과 사업자단체

에 의한 자율심의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자율규제역량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임시조치제도 개선안은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안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802396)(이하 ‘정부안’이라 함)과 나경원 의원 등이 2008. 11. 3.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801683)(이하 ‘나경원의원안’이라 함)에서도 유사하게 도입되어 있다. 우선 임시조치제도에 대한 정부안의 개정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기존의 임시조치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한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의 삭제, 임시조치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12조 제4항). 기존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기까지만 하였지만, 정부안은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정보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중국적인 판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맡기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의 중국적인 삭제 및 임시조치 해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당해 정보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판단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둘째, 기존의 임시조치제도에 관한 규정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의 삭제 등의 요청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게재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것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12조 제5항). 결국 임시조치제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피해자에 의하여 남용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게시물이 삭제되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권익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절차라는 관점에서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의 해당정보 삭제 등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38조 제1항 제21호). 이것은 결국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해당정보 삭제 등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조치를 담보로 하는 ‘임시조치 등의 의무화’를 시도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임시조치제도에 대한 나경원의원안의 개정내용은 ADR제도를 임시조치제도에 가미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게재자에게 임시조치 기간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안과 동일하다. 다만 차이점은 정부안의 경우에는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나경원의원안은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안 제44조의 2 제4항). 둘째, 당해 정보로 인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정보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공적 심의기관이 판단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정부안은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나경원의원안은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심의절차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마.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의 마련

지금까지 권리침해정보 규제시스템, 불법정보 규제시스템,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심의를 공적 규제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물론 개별적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 정보의 청소년유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업자가 할 수 있으나, 심의의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율규제기구가 그 판단을 대행할 수 있고 대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공적 심의기관과의 합의나 MOU체결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자율규제 및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기구의 권한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에 있어서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 및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에서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관계 - 경쟁적·보완적 관계

자율규제기구는 공적 심의기관과의 관계에서 경쟁적·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적·보완적 관계가 과연 국가 주도의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경쟁적·보완적 관계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국가 주도의 규제시스템이 국가에 의한 억압적·행정 편의적 규제시스템이라는 비판, 혹은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어느 정도 희석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자율규제가 정부규제의 보완책으로 개발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정부규제가 규제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정당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둘째, 공적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기구와의 경쟁적·보완적 관계가 필요하다. 공적 규제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은 자신의 권한행사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 간의 갈등이 매우 첨예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영역에서 공적 심의기관은 그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정부영역으로부터의 압

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자율규제기구가 개별 사업자들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 심의기관이나 자율규제기구가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콘텐츠 규제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가 상호 경쟁적·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서로가 자신이 운영하는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구체적 협력모델

위에서는 인터넷콘텐츠 심의에서의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콘텐츠 심의에서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구체적 협력모델을 청소년유해정보, 불법정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 등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청소년유해정보영역에서의 협력모델

1) 개요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규제되고 있다. 첫째, 포털 등의 약관 및 포털 등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적으로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장치들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식은 전적으로 법적 규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는 상호간의 체계적인 연관성이나 연계성 없이 각각의 원리와 논리대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의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상호간의 연계성 및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2) 문제점 및 고려사항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청소년유해정보영역에서는 이미 자율규제가 법제도화되어 있다. 즉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2조가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라는 제명 하에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 및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이 조항은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청소년유해성 여부 판단에 대한 면책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는 어떤 법적 면책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이 조항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항인데, 주로 오프라인에서의 매체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었다. 문면 상으로는 여전히 온라인매체인 인터넷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이 조항이 인터넷콘텐츠 영역에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결국 청소년유해정보에서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협력모델은 이미 법제도화된 청소년보호법 제12조의 틀 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12조의 틀 내에서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협력모델을 모색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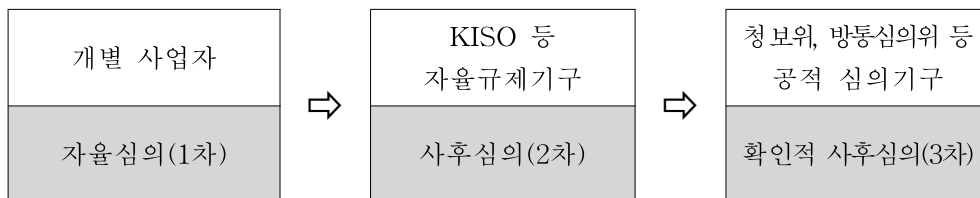
첫째, 공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권한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예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인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공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

물 심의·결정기능을 종전의 적극적 심의에서 소극적·확인적 심의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 둘째, 자율규제기구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율규제는 시장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개별 사업자 단계에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개별 사업자 단계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별 사업자별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청소년유해정보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또한 청소년유해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정보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가 공적 심의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권위있는 판단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 사업자 단계에서의 자율규제와 아울러 시장영역을 아우르는 자율규제기구 차원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상과 같은 협력모델은 기존의 법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유해정보에서의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협력모델
위에서도 제시하였다시피, 청소년보호법 제12조의 틀 내에서 모색할 수 있는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협력모델은 바로 아래와 같다.

<표3-3> 청소년유해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협력모델



위와 같은 협력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가)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개별 사업자 단계에서의 자체 약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심의는 계속 유지된다. 개별 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혹은 safer Internet을 추구하는 개별 사업자들의 영업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자체모니터링을 통한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는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자율규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개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에 대한 사후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개별 사업자 단계에서의 자율심의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사후심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자율규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심을 진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 개별 사업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확인적 사후심의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확인적 사후심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수행된 사후심의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자율규제기구가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 자율규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라) 전치주의(前置主義)

위와 같은 구조는 일종의 ‘전치주의’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공적 심의기관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및 결정을 하기 이전에, 개별 사업자나 자율규제기구 단계에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

해매체물로 결정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적 심의기관에 이관하는 프로세스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공적 심의기관은 확인적 사후심의만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권한을 공적 심의기관이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및 결정은 개별 사업자나 자율규제기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나. 불법정보에서의 협력모델

1) 개요

이 보고서에서 ‘불법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를 말한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정보로 구체적으로 나열된 정보는 음란정보, 명예훼손정보, 스토킹정보,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범죄정보, 청소년보호법위반정보, 사행행위정보, 국가기밀누설정보, 국가보안법위반정보, 기타 범죄정보 등을 들 수 있다.

<표3-4> 불법정보 종류별 법적 성격 비교

구분	불법정보의 종류	보호 법익
1호	음란정보	사회적 법익
2호	명예훼손정보	개인적 법익
3호	스토킹정보	개인적 법익
4호	정보시스템에 대한 범죄정보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익
5호	청소년보호법위반정보	사회적 법익
6호	사행행위정보	사회적 법익

7호	국가기밀누설정보	국가적 법익
8호	국가보안법위반정보	국가적 법익
9호	기타 범죄정보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익

현재의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이 당해 불법정보를 매개한 포털에 대한 규제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이 법원에 의한 규제시스템 이외에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시스템을 주된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의 틀 내에서도 자율규제의 가미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행정적 규제시스템의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서 자율규제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행정적 규제시스템도 결국 그 적용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를 전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에 자율규제를 가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2) 문제점 및 고려사항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이 예정하고 있는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의 적용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의 범위가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심의를 통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전제로 하므로 제3의 기관이 개입하여 정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예컨대 명예훼손 관련 정보, 혹은 사적 주체간의 분쟁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보다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등 절차적 분쟁해결프로세스에서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임시조치 등 절차적 분쟁해결프로세스가 정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또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불법정보 규제 문제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영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 규제시스템을 공적 심의기관이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규제의 효율성이라든지 규제의 정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적 심의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법적 규제시스템은 자율규제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불법정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권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비록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인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는 검열의 시비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규제의 효율성이라든지 규제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공적 심의기관이 모두 담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적 심의기관의 권한 일부를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유형 중에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자율규제기구가 일정 정도 그 심의를 담당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즉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정보는 공동체의 보편적인 기준 설정 차원에서 심의가 가능하며, 특히, 음란, 사행 등의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불법정보영역에서의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협력모델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제로 하면, 불법정보영역에서의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협력모델은 공적 심의기관이 갖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 일부를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모델은 그 대상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다.

첫째, 자율규제기구에 위임되는 심의대상정보의 유형은 음란정보, 사행행위정보, 기타 불법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음란정보와 사행행위정보는 다른 불법정보에 비해 비교적 기준이 단일하여 심의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정보들은 공동체의 보편적 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영역에서 이러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보

다는 민간영역에서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이러한 기준들을 설정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는 것이 사회발전과 사회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불법정보의 경우는 소관기관이 있는 경우(금융감독원 - 주가조작판매, 국세청 - 탈세 및 밀수, 관세청 - 짝퉁,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약품 및 마약 등)와 소관기관이 없는 경우(수사기관이 직접 담당,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정보, 신분증 위조, 성매매, 무기 판매 등)로 다시 세분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타 불법정보의 경우에는 심의기관에서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심의기관이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법부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타 불법정보를 심의한다면 공적 심의기관보다는 자율규제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3-5> 불법정보 위임 대상 및 위임 수행의 장·단점 비교표

구분	장점	단점	고려사항
음란	- 자율규제기구의 심의목적에 부합 - 자율규제기구 회원 사업자의 판단 및 합의가 쉬움 - 덜 민감하고 공동규제 현실화 가능성 높음 - 성과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	- 면책조항 없음 - 법원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사회통념상의 보편적 기준 설정에 관한 것이므로, 자율규제기구 내에 이에 대한 별도 심의분과 필요
사행	- 건수가 많지 않아 자율규제기구에서 감당하기에 충분함 - 자율규제기구 회원 사업자의 판단 및 합의가 쉬움 - 덜 민감하고 공동규제 현실화 가능성 높음 - 성과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	- 면책조항 없음 - 판단기준 애매모호한 경우 있음	별도 심의분과 필요

기타 불법	- 신속성, 효율성 측면에서 공적 심의기관보다 빠르게 유통 규제 가능	- 면책조항 없음 - 기타 불법정보의 범위 설정이 어려우며, 판단 자체가 애매모호함 - 오판시 리스크가 높음 - 기타 불법정보까지 자율 규제기구가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해외 담배 사이트: 국내법으로 처벌 불가
----------	--	---	---------------------------

둘째,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공적 심의기관이 갖고 있는 음란정보, 사행정보, 기타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 및 기능을 자율규제기구에 위임을 하고,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심의 및 판단을 공적 심의기관의 심의 및 판단으로 간주하는 프로세스를 상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보았던 청소년유해정보영역에서의 협력 모델을 일정 정도 원용할 수 있다. 즉 일종의 전치주의를 적용하여 1차적으로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 및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를 진행하고, 2차적으로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확인적 사후심의를 통해서 이러한 협력모델을 디자인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협력모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가 전통적으로 국가영역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공적 심의기관이 불법정보에 대한 자신의 심의 권한 일부를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임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율규제기구의 판단을 공적 심의기관의 결정으로 간주하는 법규정을 둬으로써, 이러한 위임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서의 협력모델

1) 개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피해자의 접근이라는 측면 즉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수단이 존재한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제도이다.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서, 주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관련 정보에 국한된다. 둘째, 분쟁조정신청제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0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설치하고 있고, 이러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의한 분쟁조정 대상범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국한시키고 있다. 셋째, 가해자 정보의 제공청구제도이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6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함)⁴²⁾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1항). 이 정보는 소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3항).

따라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정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구제수단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제도, 분쟁조정신청제도, 가해자 정보의 제공청구제도 3가지가 존재한다.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이외의 권리침해정보에 대해서는 해석이나 실

42)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운영상 임시조치제도, 분쟁조정신청제도, 가해자 정보의 제공청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넷째,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이외의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라는 제하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라.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마.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4가지 수단 중에서 임시조치제도를 중심으로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구체적 협력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문제점 및 고려사항

가) 임시조치의 문제점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에는 손쉽고 신속한 제도이지만 게시자의 주장 및 권리는 보장받기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게시물 게시자의 주장 및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게시물이 피해주장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주장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게시물 게시자의 주장 및 권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임시

조치되는 게시물의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각 개별 포털사는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해서 재게시 요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을 받는 자체가 포털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주장자와 게시물 게시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 중간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제도, 분쟁조정신청제도, 가해자 정보의 제공청구제도 등 3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들 3가지 제도간의 유기적·체계적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이나 가해자 정보의 제공청구를 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임시조치 이후에 분쟁조정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시조치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침해사실의 간단한 소명’으로 임시조치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반면에, 분쟁조정단계에 접어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이다.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시조치 처리의 문제점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게시물 게시자와 피해주장자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인데,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 피해주장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심의신청의 당사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포털이 게시하는 게시물이 실제로 피해주장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애매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포털의 입장에서는 피해주장자의 주장에 따라 당해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해야 할지, 아니면 게시자의 주장에 따라 당해 게시물을 그대로 존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해 게시물의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포털과 같은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를 심의신청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있다.

둘째, 위와 같은 심의신청의 주체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해 게시물의 사생활침해 혹은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절차 개시의 요건으로 피해주장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게시물 게시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당해 게시물의 사생활침해 혹은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주장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피해주장자의 입장에서는 문제되는 게시물이 이미 임시조치 되었기 때문에 심의절차개시에 대한 동의를 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피해주장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임시조치된 게시물은 그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임시조치 30일 이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게시물 게시자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임시조치제도가 보다 피해주장자와 게시물 게시자 각각의 주장과 권리를 균형있게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심의신청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항),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30일 이내에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통일되고, 고정된(예측된) 기간 내에 심의결과가 나와야지만, 피해주장자 - 포털 - 게시물 게시자 간의 분쟁이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임시조치제도에서의 협력모델

(1) 내용

임시조치제도에서의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협력모델은 주로 임시조치제도의 내용 중 법적 공백상태에 놓여 있는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절차를 중심으로 형성될 여지가 있다.

즉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어려움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는 점, 당해 게시물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진행 중인 피해주장자와 게시물 게시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중간자의 입장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시조치단계에서는 포털은 피해주장자의 침해 사실 소명만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임시조치요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포털은 임시조치요청에 대한 형식적 판단을 하되,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게 그 절차를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피해주장자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단계에서의 요건을 너무 강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게시물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내용적·실체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간인 30일 이내의 심의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자율규제의 가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임시조치된 당해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율규제기구가 그 심의를 일정 부분 담당함으로써, 재게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포털에 대해서 해 주는 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표3-6> 재게시 절차에서 심의기관의 장단점 비교

구분	자율규제기구	공적 심의기관
장점	- 절차 간소화 - 처리속도 빠름 - 외부적 영향 小	- 사회적 권위 高 - 사업자의 이해관계 低
단점	- 사회적 권위 低 - 사업자의 이해관계 高	- 절차 복잡 - 처리속도 느림 - 외부적 영향 多

(2)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재게시 심의를 위한 전제 및 개선사항

위와 같이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임시조치된 당해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율규제기구가 그 심의를 일정 부분 담당하는 협력모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포털과 자율규제기구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게시물의 내용적·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절차적 판단만 수행해야 한다. 둘째,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적 심의기관이나 자율규제기구에 반드시 당해 게시물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가. 공적 심의기관에 우선적으로 심의신청을 하고, 공적 심의기관이 거부한 경우 자율규제기구에 심의신청을 하는 방안, 나. 자율규제기구에 우선적으로 심의신청을 하고, 자율규제기구가 거부한 경우 공적 심의기관에 심의신청을 하는 방안, 다. 게시물 게시자 또는 포털이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중에서 당해 게시물을 심의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임시조치 관련 약관 내용의 통일적인 규율, 행동강령 등의 규약 등 자율규범을 통하여 자율규제기구의 규율을 받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간의 일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적 심의기관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 및 협정(MOU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력모델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등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 또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심의 및 자율규제기구의 심의결과에 따른 포털의 조치 등에 대한 면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면책조항 등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자율규제기구에서의 심의프로세스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신속성,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적인 조직, 구성, 지원조직, 절차 등이 필요하다.

제2절 인터넷 콘텐츠 관련 이슈별 협력모델

1. 심의 분야

가. 임시조치 제도

다음커뮤니케이션 박준석

1) 취지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는 오프라인과 달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항상 포함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와 게시물을 작성한 자,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삼자 관계가 형성된다. 명예훼손이라는 상당히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문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 및 조치의 역할을 맡는다. 사업자는 가능한 판단을 최소화하고 양측 당사자의 의견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양 측으로부터 불만을 듣거나 때로는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환경운동가 최○○ 목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임시조치에 손해배상 소송⁴³⁾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사망자 어머니가 미니홈피에 사건을 알리며 시작된 김○○ 사건의 경우에도 포털 사업자는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최○○ 목사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는 후 게시물을 재게시 하고자 하였으나 임시조치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된 상태라 재게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43) 블로그 '임시조치'에 손배소 (2009년 6월 12일)

URL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63>

블로그 '임시조치'에 손배소 증거합기

최병성 환경운동가, 방통심의위·다음커뮤니케이션 상대로

2009년 06월 12일 (금) 17:12:49

김종화 기자 (E sdpress@mediatoday.co.kr)

환경운동가 최병성(46) 목사가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http://blog.daum.net/cbs5012) 게시물 9건이 임시조치 또는 강제삭제 당한 데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25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 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9일 이와 같이 전하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요청을 이유로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조치한 데 이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in Space AD >>

이들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동안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게시물 중 20여 건을 임시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지난 4월 삭제했다. '쓰레기 시멘트' 등의 표현이 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최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산업폐기물](#)로 만드는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렸던 이로, 지난 2007년 다음블로거 기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03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청에 절차적 요건만 확인 후 처리함으로써 삭제율이 높아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게시자를 위한 복원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명예훼손이 아닌 게시물이 복원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노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양쪽에게서 뺄을 맞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많은 네티즌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임시조치 제도의 최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자율규제와 접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2) 현황 및 문제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 요청 등)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받은 자가 신고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명예훼손의 판단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것만으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피해 주장자의 요구대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임시조치가 취해지면 게시물 작성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누군가 고의로 특정 게시물에 대해 피해를 받았다 주장하며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게시자의 권리보장보다는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우선시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의 2항을 보면 제44조 2의 6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즉, ‘감경, 면책’ 조항은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임시조치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법 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서 임시조치의 오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3-2>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관련기사(임시조치)⁴⁴⁾



블로그 | 메일 | 공동체

로그인 |

다섯병 안의 들레콜

<http://blog.jinbo.net/antiropy>

표현의자유>>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2009년 05월 19일 02:16



지난 금요일(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 동영상) 인터넷 이슈에 대한 공청회였는데, 이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가하게 되며, 그동안 임시조치 등 현행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원본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시조치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가.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 사례

◦ 서울시에 대한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게시자는 다음(Daum)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Tistory)에 블로그를 갖고 있다. 2007년 11월 14일, 게시자가 쓴 '[대놓고비꼬기]세훈씨 서울시장님 OO씨 관박이네!'라는 글이 서울시의 요구로 임시조치되었다. 이 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글이다. 욕설도 없고 (글이 찾아 본다면, '순악질 세훈씨'라는 표현 정도?), 서울시장을 비꼬는 내용과 사진이 있을 뿐이다.

◦ 주성영 의원의 임시조치 요구

2008년 10월 20일, 게시자는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당했다. 신고자는 주성영 의원이었다. 게시글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단 세 줄이었다. 미니홈피 주소야 여차피 공개된 것이고, 더구나 주성영 의원은 명백히 공인이며, '만취한채 민폐끼치는'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이다.



◦ 경찰청의 삭제 요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2008년 5월과 7월, 포털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여청수 경찰청장의 동생과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동영상은 여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인 호텔에 불법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작 부산문화방송에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청은 2008년 5월27일 포털 14곳에 공문을 보내 '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으며, 7월 21일 다시 포털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6월 이후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적인 의혹 제기(더구나 원 제작자인 방송사에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근거로 무조건 삭제 요구를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삭제 요청을 경찰청장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경찰청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도 문제다.

44) 진보넷(<http://blog.jinbo.net/antiropy/?pid=408>)

◦ 용산참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2009년 4월 29일, 다음(Daum)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한 게시자의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 껌을 쓴 이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신고자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다. 게시물은 대부분 용산참사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한 것이며, 게시자는 다음과 같은 단 세 줄을 덧붙였을 뿐이다.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껌을 쓴 이들

'인두껌을 쓴 짐승'이라고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의 가족만을 썼을 뿐이다.
마마도 앞으로도 이런 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떤 종자로 규정해야 할까.

장유석·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한나라 입단속... "용산참사 관련 TV 토론 안 나가"

"고의방화" "도심테러"...유족 가슴에 '대못질' (한겨레, 미유주현 최해정 기자, 2009-01-22 오후 08:06:09)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등 책임전가 이어
공성전 최고위원도 강경진압 두둔 발언
당내서도 "공권력 집행과정이 문제" 비판

검석기 "결과적으로 유감"...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1-21 오후 5:57:08)
한나라 "철거민들, 지난 4월에 민노당 집단입당"

검석기 "불법폭력시위로 경찰이 희생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1-22 오후 6:12:14)
민주당 "사지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후안무치"

청와대, 검석기 내장 철회 안 한다 (한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 01월 22일 17시55분)
[살인진압] "국민 생명을 청장 자리값만도 못하게 생각"

"제2의 견여옥 지향? 1000만 안티 매기 중" (레디앙, 2009년 01월 21일 (수) 17:21:11 변경혜 기자)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 '과격시위 발언' 파장...정치권, 네티즌 비판 폭주

역자를 위해 살렸다면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한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 01월 21일 21시15분)
[기자회견] "억울한 죽음"을 없애겠다던 초심은 어디로

◦ 경찰 폭력을 비판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2009년 5월 1일 있었던 시위에서 시위대에 진압복을 휘두른 경찰에 대해 비판한 블로그 및 다음(Daum) 마고라 게시물의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되었다. 삭제를 요청한 사람은 당시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간부이다.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된 공무에 대한 비판 게시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진압봉 휘두른 302전경대장 조삼환 경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서는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30일 이후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임시조치 게시물이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 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마다 나름대로 해석을 달리하여 30일 이후의 정책을 운영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게 되자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주요 정책의 차이는 30일 이후에 삭제를 할 것인지 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게시자가 임시조치된 글을 복원 신청하는 경우 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과거 사업자들의 정책을 보면 임시조 치는 30일 동안 임시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30일 후에는 게시물을 복원하는 사업 자가 있었고, 또 다른 사업자는 임시조치 할 때에 절차적 판단만 하는 것과 같이 게시자가 복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명을 하면 즉시 복원해주는 정책을 가진 곳도 있었다.

하지만 2009년 대법원의 일명 ‘김명재 판결’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명백’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명예훼손이 명백함에도 다시 노출될 경우 그것은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법원과 같이 판단을 할 수 없는 법인격의 위치에서 법원의 능력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며, 대량 소송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임시조치 30일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정책을 선택했다. 임시조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 혹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고,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통일시킨 것이다. 그리고 게시자가 복원을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으로부터의 심의 결과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게시물 작성자의 복원 요청에 근거를 요구하여 소송의 위험부담을 감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게시자의 복원 요구보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구가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며, “명백함”에 대한 판단 없이 임시조치 후 삭제되는 게시물이 많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 결과를 받아 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게시물이 ‘해당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임시조치된 게시물이 복원되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 중에서 명백한 명예 훼손이 아닌 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시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문순 의원은 2010년 4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 주장자 중심의 임시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통해 36,209건 삭제, 포탈사업자, 임시조치 12만 건 달해 ”

1. 최문순 의원(민주당/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포탈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와 ‘방심위의 통신심의와 시정요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중략)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포탈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주요 사업자(네이버, 다음, 네이버, 싸이월드)의 임시조치 건수가 124,3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임시조치 현황 또한 통계건수로만 존재하지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요청자별 통계나, 주제별 통계 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인, 권력기관 등이 임시조치를 사회적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 등으로 남용하고 있는 현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 최근 2년간 포탈사업자별 임시조치 현황('08.1.1. ~ '09.12.31.)>

사업자명	네이버	다음	네이트	싸이월드	비고
조치건수	49,613건	72,406건	1,291건	1,009건	-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포탈 등)에 의해 삭제되거나 임시조치가 남발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엄격히 하고', '사업자에 의한 임의의 임시조치를 금지하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쌍방 간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문순 의원 대표 발의 2건)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임시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제도가 신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IT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이뉴스24'는 이미 1년 전인 2008년 다음과 같은 보도 기사⁴⁵⁾를 낸 바 있다.

다음이 올해 상반기에 받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50%, 초상권 훼손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건수는 71% 증가했다. 네이버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건수가 39%, 초상권 훼손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건수는 97% 늘어났다.

◇다음이 최근 1년간 임시조치 요청받은 건수(단위 : 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천344건	6천509건	50%
초상권	1천227건	2천98건	71%

◇네이버가 최근 1년간 임시조치 요청받은 건수(단위 : 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만5천529건	3만5천442건	39%
초상권	1천795건	3천539건	97%

특히 다음의 경우, 촛불정국의 정점이었던 올해 7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게시

45)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66375&g_menu=020300(네이버·다음 임시조치, 울들어 급증)

글 삭제 요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중략)

최문순 의원실은 "더구나 네이버는 임시조치를 요청받은 후 당사자로부터 30일 내에 재게시 요청이 없으면 자동 삭제 처리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의 삭제율이 95%에 달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음보다 오히려 네이버가 네티즌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음과 네이버가 올해 7월까지 임시조치 요청받은 건수(단위 : url건수)

구분	삭제요청 건수	삭제 건수	삭제율
다음	1만2천47건	5천256건	43.6%
네이버	4만5천412건	4만3천689건	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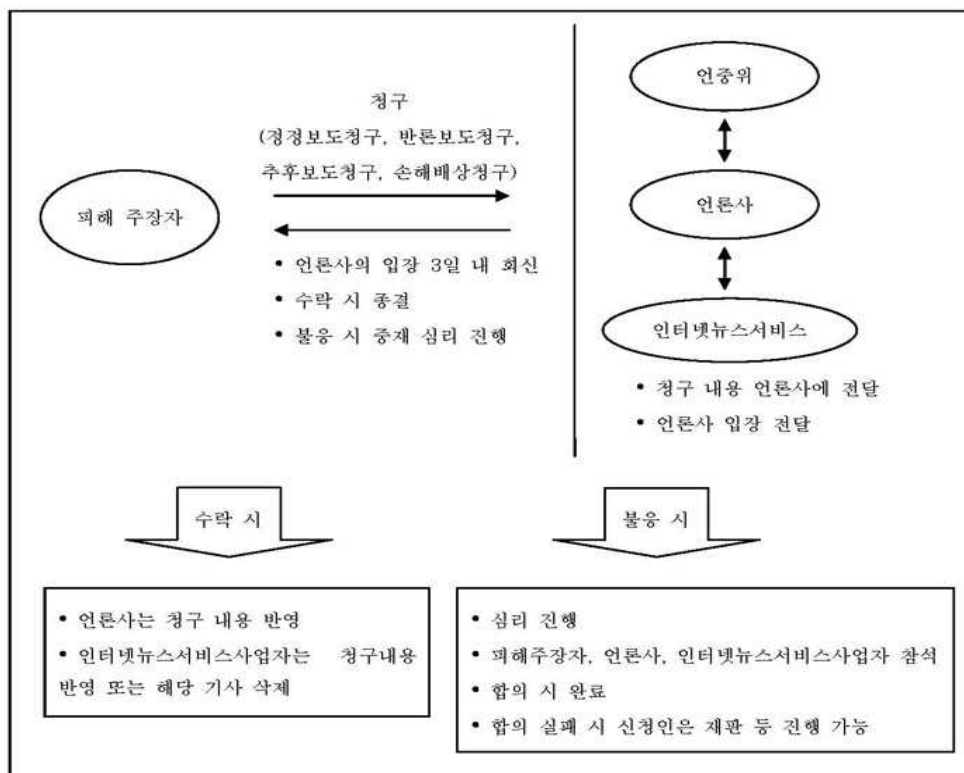
201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두 곳이 특별한 협의를 했다.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고, 심의 결과 '해당 없음'이 결정되는 것들을 사업자에게 일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협의의 배경은 이러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심의 요청만 접수 받고 있다.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 2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조항이므로 게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소명하고,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심의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해당 게시물을 임시조치 했고 30일 뒤 삭제를 하고, 그 사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결정되어 피해 주장자에게 통보가 되는 경우 게시물 작성자에게 정당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 회복의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는 현재 임시조치 제도의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한 두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는 또 다른 정책적 이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 개선방안(KISO 활용 자율형 임시조치 제도)

앞서 3장에서 설명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서의 협력모델”은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절차와 관련하여 자율규제 기구에 의한 재게시 심의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였으며 여기에서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운영상 보완 사항인 당사자 간 해결 모델과 KISO 활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2009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개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중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명예훼손 이슈가 발생시, 피해 주장자는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신고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또한 해당 언론사로 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언론사는 3일 이내에 기사의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의 요구 사항을 수긍하거나 혹은 반려했을 수 있다.

<그림3-3>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피해구제 절차



언론피해구제 절차에 따르면 피해 주장자의 요구를 수궁하면 상황이 종료되고, 반려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하여 합의점을 찾는다.

위의 언론중재 절차를 뉴스가 아닌 게시글에 적용한다면, 명예훼손 피해 주장자의 삭제 혹은 임시조치 요구를 게시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자 수궁시 상황은 종료되며, 불응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이용하여 양측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이 절차에 따르면 누구도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의 결정, 양측의 합의가 중요한 기능이 된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의 임시조치 제도에서도 법원 판결문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결론은 없는 것과 같은 실정이다. 사업자마다 다른 절차적인 문제, 판단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임시조치 제도에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자마다 달리 가져가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자율정책기구인 KISO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들에게 재게시 절차에 관한 정책의 일원화는 필요하고 관련 기관이 그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사업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와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한 데 모음으로써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 외에 복원(혹은 재게시) 요청, 침해 소명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30일 이후 조치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기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30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를 하기 때문에 복원도 불가능하다. 한 예로 최00 목사와 양회협회 간에 발생했던 시멘트 관련 게시물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임시조치하여 30일 후 삭제가 되었는데 추후 법원의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미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할 수는 없고 침해를 주장하

는 자가 임시조치를 요청한 후부터 해당 게시물은 가려졌다.

게시자의 입장에서선 가려진 기간이 곧 본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하에서는 최대한 빨리 심의를 함으로써 공정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법원의 판결을 30일 이내에 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 경우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심의를 공적심의기구 또는 민간자율기구(KISO)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의 대상을 분산시키면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자율기구인 KISO를 선택하는 경우 회원사인 대형 포털 사업자들만이라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임시조치 제도가 일방적으로 오·남용되거나 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법의 개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빈칸을 메워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쫓아가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율 규제와의 적절한 조화일 것이다.

위와 같이 임시조치 제도에 자율규제를 조화롭게 더함으로써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임시조치 기간 30일 이후의 처리절차가 법에 누락되어 현실적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임시조치 관련 법제 정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를 적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언론중재법 제15조를 보면 정정보도청구의 신청 절차, 수용 여부 통지, 정정보도 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해 두었다.

<표3-7>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5조(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 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해당 인

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시행일 2009.8.7]]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 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개정 2009.2.6][[시행일 200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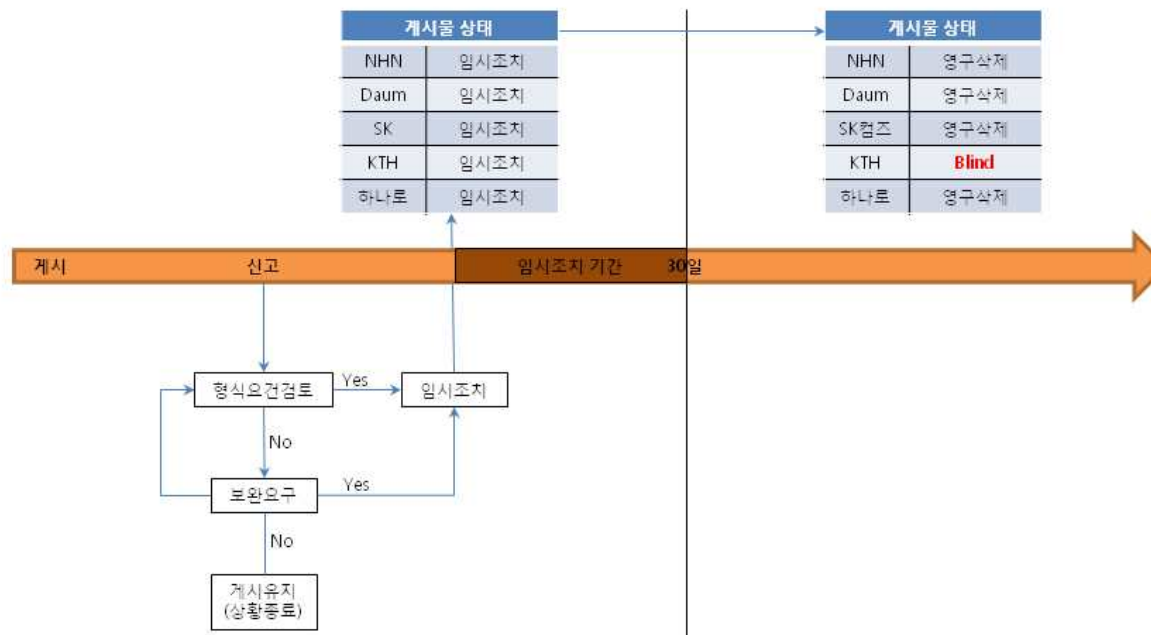
③언론사 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 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시행일 2009.8.7]]

언론중재법과 같이 절차를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도 좋지만 임시조치의 경우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와 유사하지만 더욱 명확하게, 예컨대 ‘임시조치와 관련한 여타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 개정을 통해 임시조치의 본래의 취지는 살리고 재게시 요청에 따른 게시물 복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구와 정보통신사업자들이 협력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운영하는 재게시 절차를 도식으로 설명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3-4> 주요포털의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처리 절차-1

30일 이내 재게시 요청 없는 경우



일명 ‘김명재 판결’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게시물의 명백한 명예훼손성을 판단하여 명예훼손인 경우 삭제해야 하며,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 게시를 유지해야 하지만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게시물 복원에 드는 위험부담이 게시물 삭제에 따른 위험부담보다 크기 때문이다. 앞 페이지 그림은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국내 주요 포털 5개사의 정책을 정리한 그림이다. 즉 게시자가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 게시물의 피해 주장자가 임시조치를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 원 게시자가 재게시를 요청하지 않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별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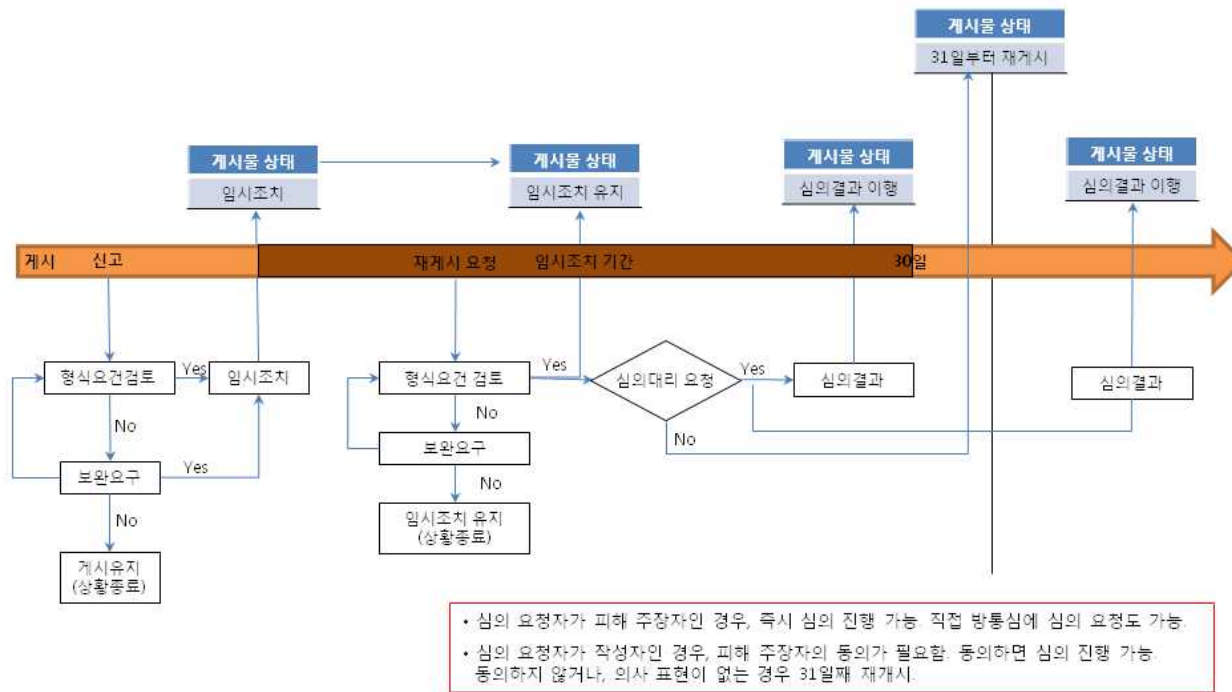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하나로통신 등의 포털 사업자들은 30일 동안 원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게시물을 영구삭제 처리한다. 다만 KTH의 경우 게시물이 이용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복원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블라인드(blind) 상태를 유지한다.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재게시가 가능한 게시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자구적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 재게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게시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미비로 인한 사업자의 정책 혼선이 제일 두드러진 부분이다. 임시조치는 법률적으로 30일 동안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KTH의 경우 30일 이상을 임시적으로 조치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자들의 경우 영구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해주지 못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사이에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그림3-5> 주요포털의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처리 절차-2

30일 이내 재게시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 D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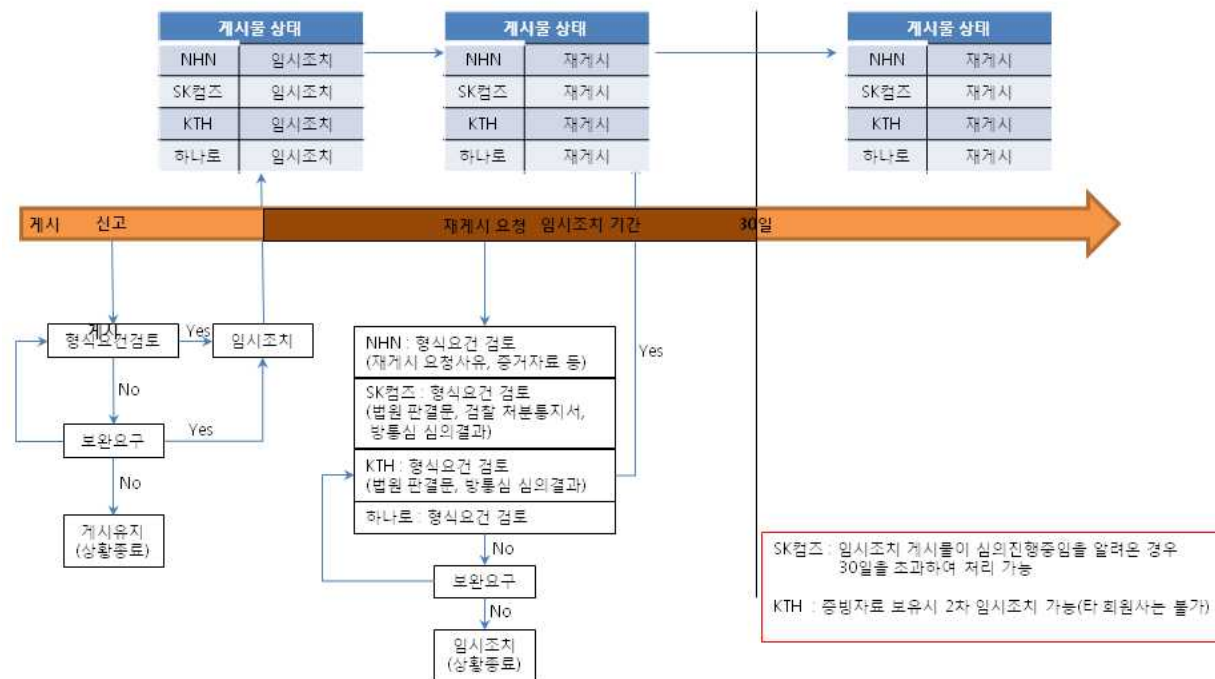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정책적 혼선이 심한 부분은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이 있는 경우이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임시 조치 게시물에 대해 재게시 요청이 접수되면 먼저 재게시 요청의 당사자 적격 및 재게시 요청 사유 등의 형식 요건 검토를 실시한다. 형식요건이 미비한 경우 형식 요건의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임시조치는 유지되며, 30일 지나면 삭제되는 경로로 진행된다. 보완요청이 성실히 이행되면, 게시물은 임시 조치를 유지한 상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대리로 진행하여 준다. 이 경우 심의 요청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인 경우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가 가능하다. 하지만 심의를 요청하는 자가 게시물 작성자인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한 피해 주장자의 동의가 있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시조치 제도의 명예훼손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인 원 게시물 게시자의 심의신청만으로는 심의를 개시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만 심의가 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게시 요청 후 원 게시자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심의 대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게시물은 30일 이후 게시물은 재게시 된다. 다만 이후에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결정, 법원 결정문 등으로 침해 입증되면 삭제 처리한다. 심의 결과가 30일 이내에 나오지 않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일단 게시물을 복원하고 심의 결과를 기다린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2009년 초반까지는 30일이 경과된 임시조치 게시물은 자동 복원하는 정책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정책을 변경하여 30일이 지난 게시물은 삭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게시물 복원을 실시할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서도 보여지듯이 사업자의 성실한 법률준수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이는 사업자의 불안감을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그림에서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외의 사업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3-6> 주요포털의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처리 절차-3

30일 이내 재게시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 NHN, SK컴즈, KTH,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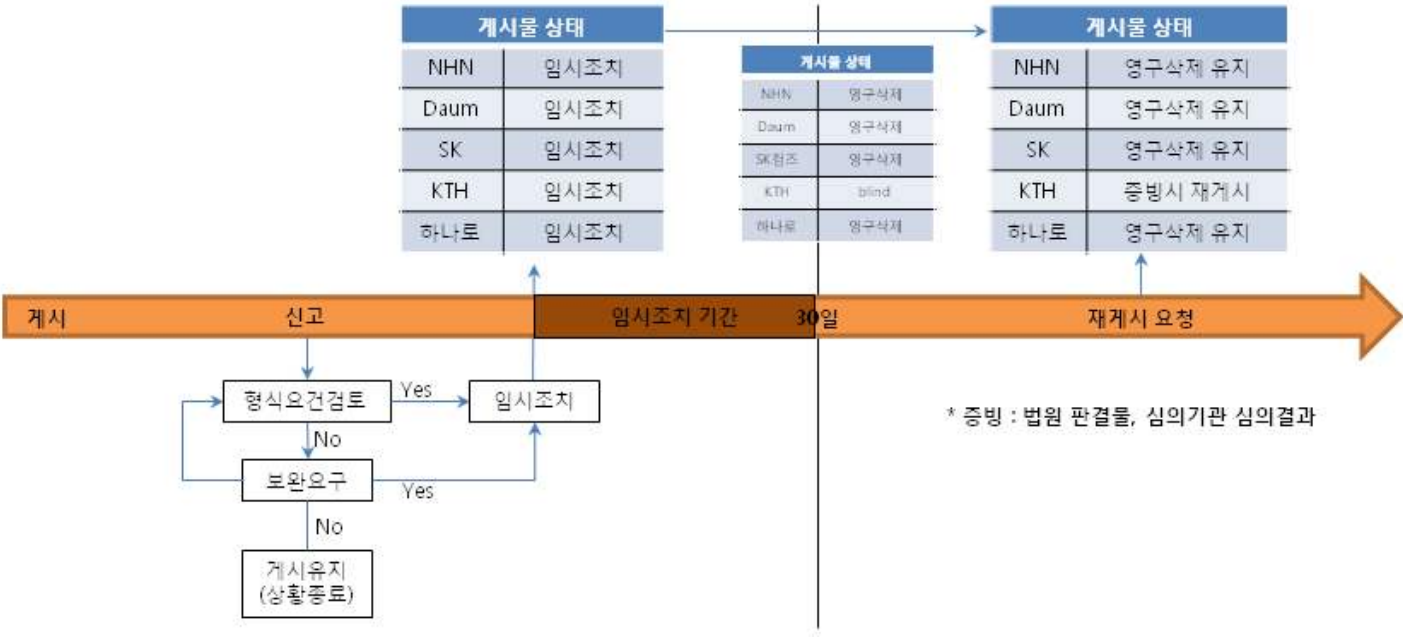


위 그림은 NHN, SK커뮤니케이션즈, KTH, 하나로드림 등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국내 주요 포털의 재게시 절차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게시 요청시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게시물이 보이도록 한다는 점이다. 개별 포털별로 살펴보면, NHN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재게시 요청의 사유, 증거자료 등의 형식요건이 갖추어지면 곧바로 임시조치를 해제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NHN보다 형식요건이 까다롭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나, 검찰의 처분통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의 형식요건을 충족시키면 게시물 임시조치를 해제한다. KTH의 경우 SK커뮤니케이션즈와 유사하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이 있는 경우 바로 임시조치를 해제한다. 하나로드림의 경우에도 형식요건을 충족시키면 바로 재게시에 들어간다. 특이한 사항은 KTH의 경우 게시물로 인한 피해주장자가 증빙자료 보유시 2차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조치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알려오는 경우 30일 지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나 KTH의 경우 임시조치 요청자와 재게시 요청자 사이의 권리 불균형이 발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임시조치 요청은 즉시 이루어지는 반면, 재게시 요청은 법원, 검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요청은 피해 주장자의 소명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반면, 재게시 요청자의 소명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법원이나 경찰의 경우 즉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등의 건에 대해 30일 안에 판결이나 처분통지서를 획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 요청자와 재게시 요청자 사이에 권리 불균형이 발생함을 인지함에도, 법률적 공백으로 인한 위험부담 감소를 위해 포털들은 ‘김명재 판결’ 이후 이러한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그림3-7> 주요포털의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처리 절차-4

30일 이후 재게시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게시물이 임시조치에 처해진 뒤, 30일 동안 재게시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주요 포털들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KTH의 경우에만 30일이 지났더라도 재게시 요건을 충족시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게시물을 복원해주고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KTH가 가장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시물 게시자의 입장에서 보면, KTH가 가장 이용자의 게시물과 같이 이미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취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30일 안에 임시조치 게시물을 처리하여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 취지에 꼭 부합하는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게시물 삭제가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이를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blind)처리를 하고, 서버에 보관하여, 후 발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 재게시를 해준다는 것은 회사의 리소스 투입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즉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시조치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임시조치 게시물이 1년에 수 만 건에 달함을 고려해 보면, 사업자들은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략히 임시조치 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요청시 주요 포털들의 처리절차에 관해 살펴보았다. 현행 임시조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임시조치 기간인 30일 이후에 처리 절차가 법률적으로 미비하여 30일 이후 혹은 재게시 절차에 대해 국내 주요 포털들이 서로 다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와 사업자들이 감수하게 된다. 셋째, 임시조치 요청자와 재게시 요청자 사이의 권리 불균형이 발생하여,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편의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게시물에 대해 무차별적 임시조치 요청이 가능하지만, 임시조치된 게시물을 재게시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률 개정을 통한 보완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지만, 법률 개정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기구와 자율규제기구, 그리고 포털사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적규제기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와 자율규제기구와 포털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상호협력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살예방 관련 협력모델⁴⁶⁾

SK 커뮤니케이션즈 김충희

1) 개요

<그림3-8> 자살 암시 사례



최근 한 유명 클럽의 20대 DJ가 트위터 (twitter)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글을 남겨놓고 이틀 만에 실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6,460명이었던 자살자는 2007년 들어 12,174명으로 늘었다. 1992년 사망원인 10위를 기록했던 자살은 2007년 들어 4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480건이던 자살 유해사이트 신고건수가 2008년에는 84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 현재 464건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9>자살률 및 자살 사망자수⁴⁷⁾



46) ‘자살’의 정의 :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며, 부모가 어린 자녀와 동반 자살한 경우 어린 자녀는 자살이 아닌 타살에 해당함(통계청)

47) http://www.suicideprevention.or.kr/public/public_05_view.htm?idx=30&article_num=26&page=1&keyfield=&keytext=&bbs_id=public_05&bbs_kind=notice

이처럼 우리사회에는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주변에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등 인터넷을 통한 자살 예고나 카페/클럽 등을 통한 동반 자살이라는 씁쓸한 유행이 번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유관 기관에서는 자살 및 자살동조(교사)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처리 혹은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 조취를 요구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처리 등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 이상의 게시물 삭제(블라인드)나, 개인정보 제공이 인터넷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게시물 검열이라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자살 예방이라는 최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접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자살관련 사이트·게시물 현황

<표3-8> 자살유해사이트 신고 건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6월23일)
지식검색	200건	557건	306건
게시물	87건	127건	76건
카페	39건	56건	21건
블로그	122건	109건	56건
자살사이트	2건	-	1건
이메일/ID	30건	-	4건
계(건)	480건	849건	464건

※출처: 한국자살예방협회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480건이던 자살 유해사이트 신고건수가 2008년에는 84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 현재 464

건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로 지식검색을 이용(66%)하여 자살관련과 관련한 유해 정보가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검색만을 통해서도 자살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는 5대 인터넷 포털사를 대상으로 자살정보 등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사이버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금년 한 달(10.6.28~7.30)간 인터넷사이트상에서의 자살정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자살정보 169여건의 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요청, 삭제 및 정보접근차단(블라인드)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독극물인 청산가리의 구입문의 등의 정보도 28건이나 발견해 포털사이트에 정보차단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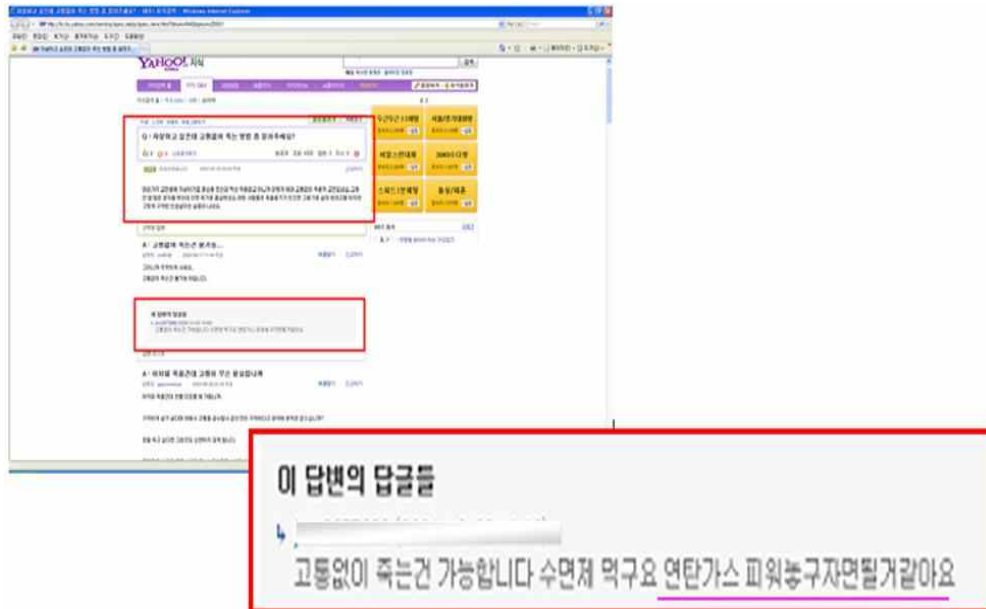
<표3-9> 자살 관련 지식(Q&A) 유형별 구분

구분	내용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합계	비율(%)
자살방법 제공	투신·목매기·손목긋기·수면제·독극물·총기 등 사용조장	53	8	13	12	86	50
동반자살	쪽지·연락처·메일주소 게시 등 만남요청	10	6	1	-	17	9.9
자살동조	자살에 긍정적 의견 게시 및 본인자살희망	22	10	13	-	45	26.2
자살도움	자살도움·안락사·독극물 판매 등	-	1	-	2	3	1.7
기타	가출, 유해약물, 성관계, 상대 비방글 등	8	10	3	-	21	12.2
총 계		93	35	30	14	172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0.8.9.)

자살정보의 경우 자살관련 댓글만 24만 건에 달하며, 전체 172건의 자살 정보 게시물 중 자살방법을 제공하는 정보가 86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에 대한 긍정적 의견 등 자살동조행위가 45건(26%), 동반자살 요청이 17건(10%) 순이었다. 이는 주로 인터넷 검색(지식/Q&A 등)을 통해 자살 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3-10> 자살 관련 지식(Q&A) 사례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0.8.9.)

나) 자살 예방과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활동

자살 예방과 관련해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살예방 차원에서 ‘자살’, ‘죽는 방법’ 등으로 검색 시 자살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3-11> Naver의 자살 검색시 화면



<그림3-12> Nate의 자살 검색시 화면

생명은 소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희망을 클릭하세요!

나의 이야기
저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웃들의 희망 이야기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영상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제공 : 한국자살예방협회

전화상담

자살예방핫라인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희망의 전화	129
한국청소년상담원	1388
청소년자살예방상담	1599-3079

사이버상담

- 한국자살예방협회
- 생명의 전화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대면상담

- 서울지역
- 대전지역
- 대구지역
- 광주지역
- 부산지역

<그림3-13> Daum의 자살 검색시 화면

생명은 소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희망**을 클릭하세요!

[홈페이지바로가기](#)

"내이야기 들어볼래요"
이웃들의 희망극복이야기

"우리가 있어요"
상담기관안내

"우리함께 희망을 나눠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제공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카페(클럽)개설 시에도 동일하게 ‘자살’, ‘죽는 방법’ 등과 같은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블로그나 카페(클럽)의 개설을 제한하는 등 자살과 관련한 정보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3-14> Naver에서 자살 카페 개설시 화면



<그림3-15> Nate에서 자살 클럽 개설시 화면



<그림3-16> Daum에서 자살 클럽 개설시 화면

카페 만들기

· 카페이름

자살

4 / 60 bytes

⚠

카페 이름에 금칙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카페 이름입니다.

· 주소

http://cafe.daum.net/

0 / 20 bytes

대소문자를 구분, 특수문자 하이픈(-), 마침표(.)를 사용하세요.

· 공개여부 ?

☒ 공개
☐ 비공개

· 카테고리

선택하세요

소분류

(6개월에 1회 변경 가능)

· 카페 검색어 ?

0 / 20 bytes

다) 현재 계류 중인 자살과 관련한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08년 9월 30일 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제17조(자살유해매체 차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임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 특별법안은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범부처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시책들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17조 (자살유해매체 차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보면, 자살유해매체가 어떤 매체인지와 기준 등이 없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필수 조항을 두고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은 전형적인 공적 규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정권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성이나 유해성이 있어야 하나 모호하게 ‘필요한 경우’라 정의하고 있다.

[자살예방법안] 2009년 3월 25일 강창일의원이 대표 발의

제19조(불법정보의 차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정요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그 밖에 불법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요청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그 시정요구를 요청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법안 자살예방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나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 해지와 같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하는 불법정보’의 경우 단순히 “죽고 싶다” 혹은 “죽을 계획이다” 등의 내용이나, 시적인 표현 등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도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할 수 있는 등 명백한 불법게시물이 아닌 경우에도 ‘삭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라) 해외 현황

일본은 인터넷 상의 자살과 관련해 2008년 4월 황화수소에 의한 연쇄 자살이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으며, 일본의 자살과 같은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재)인터넷협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2006년 6월부터 인터넷 핫라인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핫라인센터는 인터넷상의 위법정보, 유해정보의 통보를 수리, 위법·유해정보에 대해 프로바이더나 게시판 관리자 등에 삭제를 의뢰, 위법 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에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09년 상반기 핫라인센터는 65건의 타인을 자살에 유인·권고하는 정보를 처리하였고, 명확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 의혹이 상당한 정도 있는 96건의 정보에 대해서도 처리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일본의 인터넷사업자(DeNA, 인터넷스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락쿠텐)는 공동성명을 통해 유해정보의 정의는 본래 국민 각자의 가치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국가가 정하고 더욱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의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감시재단 IWF(Internet Watching Foundation)이 1996년 불법적인 콘텐츠에 제제를 가하는 핫라인 운영에서부터 출발했다. IWF가 출발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인터넷 자유방임 기조의 역기능으로 아동 포르노가 급속히 확산하면서다. IWF의 성과로 아동 포르노에 대한 영국의 자율규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으나, 아동포르노를 제외한 자살 사이트, 기타 범죄 사이트 등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3) 자살 관련 게시물 처리의 문제점

이처럼 사회적으로 자살 예방 등의 목적으로 게시물 차단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처리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 그 밖에 해당하는 사항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살정보’가 해당이 되는지, 혹은 ‘자살 동조’ 게시물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유해정보만을 규정하고 있어 ‘자살정보’와 같은 다른 유해정보에 대한 내용도 없다. 이처럼 ‘자살정보’의 불법성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며 이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 자살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게시물 차단 기준의 판단기준의 문제

단순히 “죽고 싶다” 혹은 “죽을 계획이다” 등과 같은 ‘자살 실행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자살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내용’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시적인 표현 등 모호한 표현에 대한 내용도 게시물 차단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률상의 판단기준이란 일부 소수의 특정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이 명확한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라 한다. 하지만, 자살의 방조 및 교사 정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 개선방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예방 법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주로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공적 규제 법안들이다. 하지만 공적규제의 경우, 심의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살 예고자가 이미 자살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으며, 공공기관의 모니터링에 의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사업자나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모니터링과 즉시조치가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자살 정보’의 규정과 해당 게시물 처리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자살 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자살 예방의 취지는 살리고 게시물 처리 등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구 및 사업자들이 협력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가) 자살 정보의 처리 기준 마련

‘자살 정보’ 게시물은 사회적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게시물 처리 기준을 공적 기관과 인터넷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며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기관은 게시물 처리를 요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에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나) 자율규제

자살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의무조항을 두기 보다는 수사기관 등 자살 구제 기관과의 핫라인, 제한적 업무위탁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게시물 처리 및 자살 예방활동을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판단이 어려운, 모호한 내용 등의 자살 정보 게시물인 경우 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게시물 심의를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자살예방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자율규제를 통해서 자살 시도자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카페/블로그의 자율규제 방안

KTH 김대기

1) 취지

09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카페/블로그 메뉴 단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하 청유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유해정보 규제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성인의 불 권리 침해를 방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 게시물 또는 메뉴를 청유물로 지정하여, 카페/블로그를 통해 유통되는 불건전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목적과 함께 성인에 대해서는 불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카페/블로그 메뉴단위의 청유물 결정은 기존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정보를 규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ive Contents, 이하 UCC)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UCC에 적용함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함께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자율규제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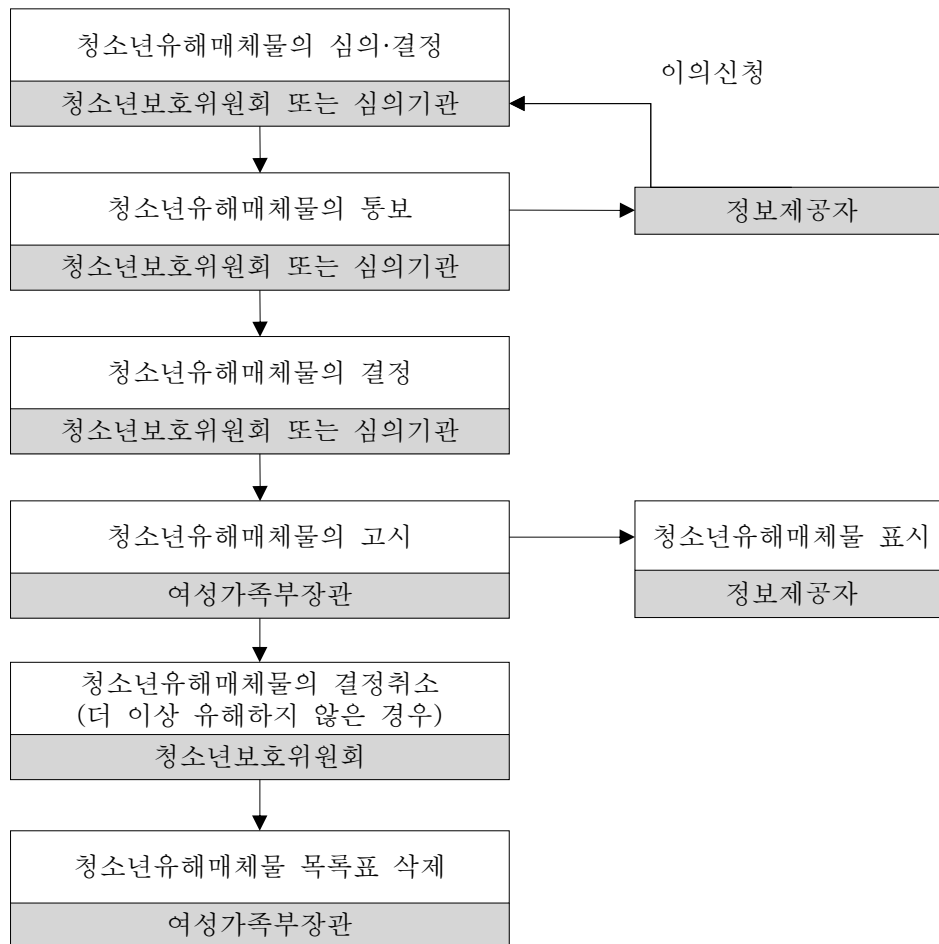
2) 현황 및 문제점

가) 기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현황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오프라인 영역에 해당하는 매체가 있는가 하면,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및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정보와 같은 온

라인 매체도 존재한다. 이러한 매체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림3-17>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통보·고시되고 있다.

<그림3-17>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통보·고시·결정취소 절차



즉,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심의기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결정 후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제공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관보에 고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

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이후 만일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나) 카페/블로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그림3-18>과 같이 “카페 및 블로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시행”을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결정하여, 각 주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에게 통보한 바 있다.

<그림3-18> 카페 및 블로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시행일 통보

□ 문서번호 : 유해정보심의팀-171

□ 시행일 : 2009. 03. 09

제목 카페 및 블로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시행일 통보

1. 귀사 및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털사업자 협력회의('09.2.24.)를 통해 고지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유해 카페 및 블로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3. 다만,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09년 5월 1일(금)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성인 인증장치 마련 등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는 청소년유해 카페 및 블로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오니,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위 결정에 따라 주요 OSP에게 <그림3-19>와 같은 카페/블로그/클럽 등의 일부 메뉴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할 것을 통보하고 실제 정보제공자인 블로그/카페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인의 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카페/블로그 메뉴 단위에 성인인증 표시 기능을 구현하여 제공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요 OSP에서는 카페/블로그 메뉴 단위에 성인인증을 표시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사실에 대한 통보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실제 정보제공자인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3-19>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카페/블로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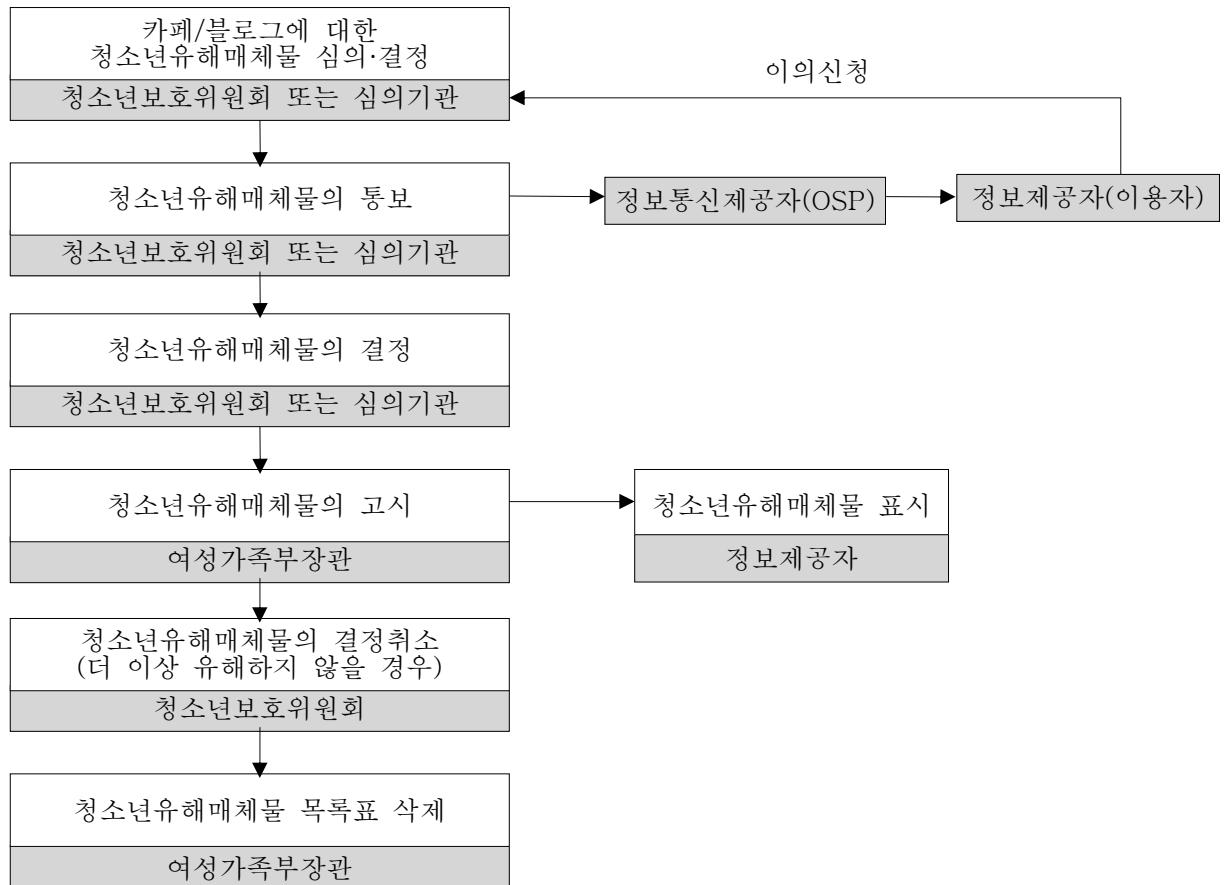
다) 카페/블로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문제점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

현재 카페/블로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절차는 <그림3-20>과 같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심의기관에서 카페/블로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후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를 다시 정보제공자인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보받은 정보제공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보호 위원회 또는 심의기관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절차는 기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절차와 동일하다.

<그림3-20> 카페/블로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절차



그러나, 절차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로, 통보절차의 문제점이다. <표3-10>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카페/블로그 게시물이 청유물로 결정될 경우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인 카페/블로그 운영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보호 위원회 및 심의기관에서 카페/블로그 운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할 방법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표3-10>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유물 심의·결정 및 통보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통보) ①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우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 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심의기관에서 카페/블로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 후, 정보제공자인 카페/블로그 이용자에게 직접 결정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인 이용자와 직접 연락을 취할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카페/블로그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이를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제공자는 정보제공자인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전달하고자 하여도 대부분 회원 가입시 이용자의 연락처, 주소 등이 필수 수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로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통보할 방법이 이메일 외에는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만일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OSP의 경우에는 통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는 통보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인데, 만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사실을 정보제공자인 이용자가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로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이의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만일 이용자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청소년유해매

체물로 결정되었을 경우, 이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더라도 이용자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실효성의 문제점

그 동안의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정보와 같은 온라인 매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카페/블로그의 일부 메뉴 단위 게시물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 각 OSP의 약관 및 서비스정책과의 배치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OSP는 공개된 영역에 청소년유해정보를 게시할 경우 <표3-11>과 같이 자체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유사 행위가 지속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고, 이용정지와 같은 추가적인 자율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이와 별도로 성인의 불 권리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성인들만이 볼 수 있는 별도 블로그/카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규제는 공개된 카페/블로그 등에 청소년유해정보를 게시했을 때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공개된 카페/블로그의 일부 메뉴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경우 각 사 약관에 따라 대부분 삭제 또는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각 OSP의 서비스정책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3-11>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주요 OSP 약관

구분	약관 내용
A사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B사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저장 공간에 음란물을 게재하

	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C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D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E사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둘째, 카페/블로그가 성인물의 온상이 될 위험성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OSP에서는 가급적 성인 카페/블로그를 권장하여 확대시키기 보다는 모두에게 공개된 Clean Site 운영을 목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특정 카페/블로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될 경우 카페/블로그 운영자는 카페/블로그에 보다 많은 회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청소년유해정보를 더욱 많이 유통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각 OSP의 운영취지와 반대로 카페/블로그가 성인물의 온상이 될 위험성을 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정보의 편집, 이동, 삭제가 용이한 UCC 특성으로 청유물 결정시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다. 카페/블로그가 청유물로 지정될 경우, <표3-12>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제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청유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해야 의무가 있는데, 카페/블로그 메뉴/게시물의 경우 청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OSP가 아니라 이용자이므로,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이용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플랫폼 제공자인 OSP에서 전자적 표시를 위한 ‘성인인증 시스템’ 기능을 제공해 주지 않고서는 이용자는 스스로 전자적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표3-1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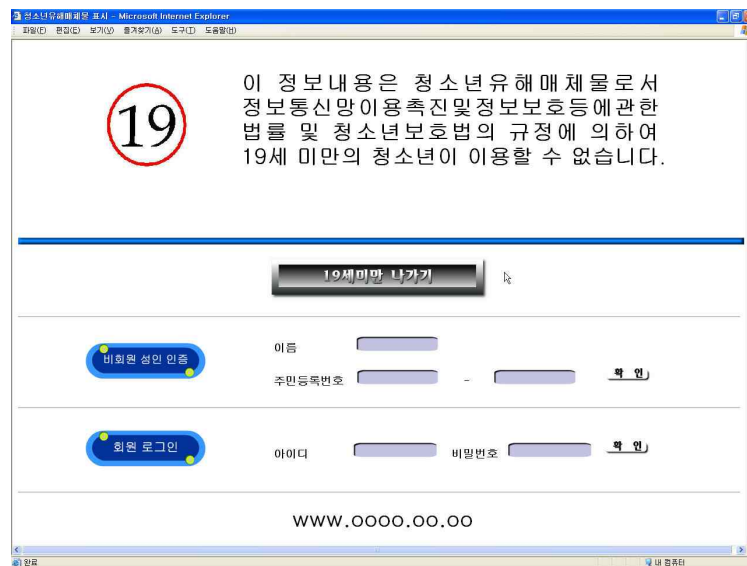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중략 -

[별표]



1.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
2.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
3.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해로고

와 유해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가.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

나.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

다. 약관에 의한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절차 기능

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

특히, <표3-13>과 같이 최근 카페/블로그가 청유물로 지정될 경우 주요 포털의 처리 정책을 보더라도, 60%의 포털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경우 자사 약관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겠다는 결정하고 있어 처리 정책에 일관성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3-13> 카페/블로그 청유물 지정 시 주요 포털 처리 방침('09년 4월)

A사	B사	C사	D사	E사
삭제	삭제	삭제	성인인증 처리	성인인증 처리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카페/블로그 메뉴를 청유물로 지정하더라도 UCC의 특성상 쉽게 추가/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카페/블로그가 전유물로 결정되기까지는 심의·결정, 통보, 이의신청, 최종 결정, 고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카페/블로그 운영자는 수 초 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쉽게 폐쇄하거나, 수정 또는 정보를 옮겨 새로운 카페나 블로그를 만들 수 있어 청유물 결정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폐쇄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다시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수정 또는 정보가 옮겨진 경우 새로운 매체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심의·결정, 통보, 이의신청, 최종 결정, 고시하는 절차를 답습해야 하므로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 자명하다.

3) 실현 가능성 및 전제조건

현재 공적규제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관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심의를 통해 청유물을 결정하고 여성과가족부를 통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의 후 결정된 청유물을 다

시 여성가족부를 통해 관보에 고시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청유물 결정을 취소하는 것 또한 유사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카페/블로그와 같이 수정, 삭제가 용이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주요 OSP는 자사 카페/블로그 내에 게시되는 유해게시물에 대해 대부분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약관을 통해 이용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OSP 자체적으로 불법 게시물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 등을 감안하여 2009년 3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발족하여 게시물 관리에 있어 공동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불법게시물 게시물의 처리방안 및 정책을 결정하여 게시물의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OSP와 자율규제기구, 공적규제기구가 적절한 협업체계를 갖춘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페/블로그에 대한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협업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조건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가 협업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불법 음란정보와 일반게시물을 구분하기 모호한 게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OSP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구의 협조가 필요하고, 자율규제기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공적규제기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이러한 협업체계를 통해 처리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OSP 또는 이용자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것 또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4) 법제도적 개선방안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카페/블로그 청유물 지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기존의 공적규제기관 심의-청유물 결정-관보게시 등의 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그림 3-21>과 같이 OSP - 자율규제기구 - 공적규제기구 협력을 통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차적으로 블로그/카페 영역의 불법음란정보에 대해서는 OSP가 각 사 약관에 따라 자율규제를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각 사 약관에 따른 자율규제는 다음과 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된 카페/블로그 메뉴에 대해 성인만 열람이 가능한 영역에 재배치토록 하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OSP에서는 전체 공개가 가능한 카페/블로그와 성인만 접근이 가능한 카페/블로그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개된 영역에 게시된 청소년유해정보를 성인만 열람이 가능한 영역에 재배치토록 이용자에게 권고하여 청소년의 유해정보 열람을 차단하고, 성인의 불 권리는 제한하지 않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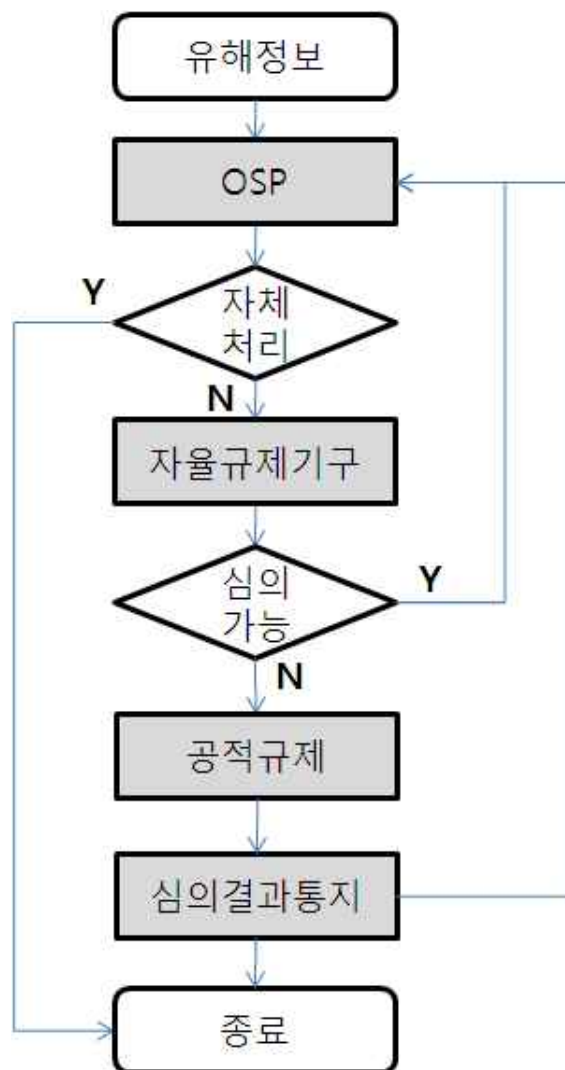
둘째로, 전체 공개가 가능한 카페/블로그 메뉴에 성인인증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카페/블로그의 메뉴 단위로 전체 공개 또는 성인에게만 공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 사의 필요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있는 메뉴 단위에 성인인증을 적용하여 성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정보 열람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율규제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위 2가지가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각 사의 약관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를 삭제 또는 블라인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무조건 청소년유해정보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용자로 하여금 가급적 위 2가지 방안을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공적규제기구에서 발견한 불법·음란정보 또한 기존과 같이 심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심의 없이 바로 OSP로 자율규제를 요청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유해정보를 불필요한 심의절차 없이 신속하게 각 사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확산 방지 및 성인의 불 권리를 모두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차적으로 불법·음란정보와 청유물을 구분하기 힘든 사유로 OSP에서 자체처리하기 힘든 정보에 대해서는 OSP에서 자율규제기구로 심의를 요청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OSP에서는 2차 자율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자율규제기구를 통해서도 판단하기 힘든 정보에 대해서는 3차로 공적규제기구로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공적규제기구에서는 심의결과를 자율규제기구 및 OSP로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OSP - 자율규제기구 - 공적규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OSP는 보다 신속하게 건전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공적규제기구는 불

필요한 심의절차를 제거함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협력모델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OSP에 대해 이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21> 카페/블로그 유해정보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협력모델



라. SNS와 자율규제

SK 커뮤니케이션즈 김충희

1)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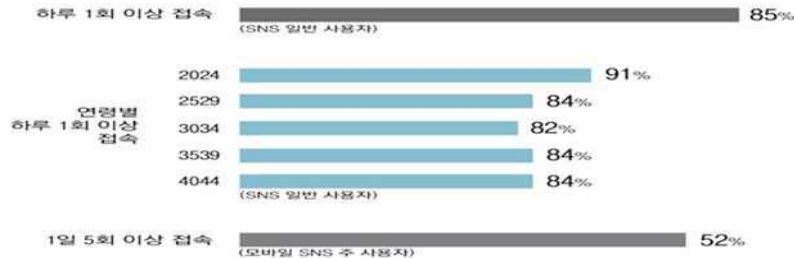
2010년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를 통한 홍보 이슈가 단연 화제였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2008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k Obama)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 국내에도 알려지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트위터를 개설하고 본인들의 미니홈피와 블로그에 갖가지 홍보게시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처럼 SNS는 스마트폰과 넷북 등 IT로 무장된 사회의 정치판에서 혁명을 일으킬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번 선거기간 중 일반인의 트위터 등 SNS사용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제되었으며,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SNS를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은 사회에서 논란거리다. 따라서 SNS역시 다른 미디어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규제가 온라인 문화를 바꿔가고 있는 SNS에 적합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규제를 해야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보장할 것인가?

2)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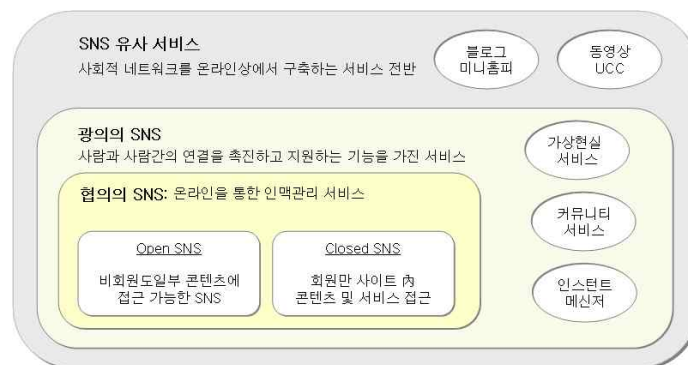
익명성이 보장되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개방형 인터넷은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사용자 중심의 참여형 인터넷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양한 이용자 군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직접 이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다. SNS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그림3-22> 한국인 SNS 이용형태 조사 ‘SNS 접속률’⁴⁸⁾



SNS의 정의 살펴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미국의 페이스북, 트위터, 일본 Mixi, GREE 등이 대표적 서비스이다. 광의로 해석하면 인맥관리 서비스 외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댓글 기능이 있는 블로그, 카페, 가상현실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SNS 콘텐츠는 기술 중심이며 기존의 미디어플랫폼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던 웹 1.0시대의 게시판 콘텐츠와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웹 2.0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정보의 생산, 제공,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미디어가 활성화되며, 개인사생활에 기반한 콘텐츠들이 인터넷 콘텐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사생활에 노출에 따른 침해나 보호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이런 이유이다.

<그림3-23> ‘블로그·SNS의 경제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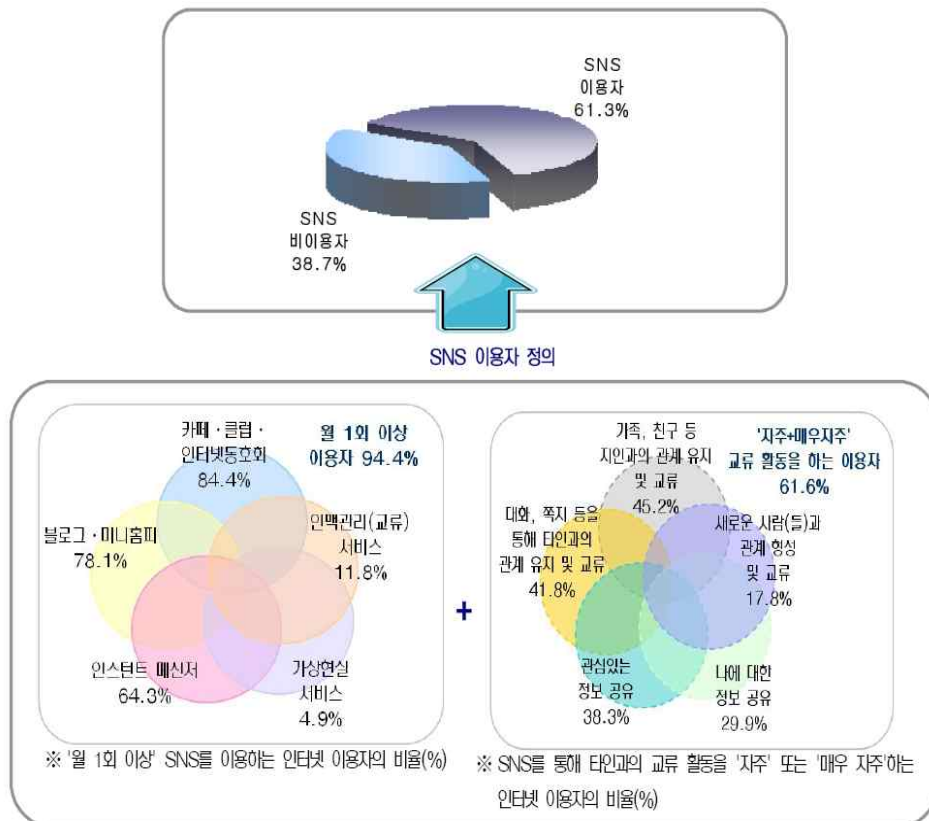


48) <http://admankim.com/100108965192>

49) NIA, "한·미·일의 SNS 서비스 비교분석", IT 정책시리즈11호, 2009.12.1., 1면.

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61.3%가 월1회 이상 SNS를 이용하면서 타인과의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는 SNS 이용자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이용률(남성 60.9%, 여성 61.8%)에는 차이가 없었고, 연령 별로는 20대(77.7%), 만 12-19세(70.1%), 30대(55.5%), 40대(44.3%)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관심사를 공유' 및 '친교·교제'를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용자의 71.4%가 SNS를 타인과의 교류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3-24>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실태조사'⁵⁰⁾



다음으로 연구사례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50)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실태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6., 4면

은 ‘개인 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결과는 블로그, SNS 등 개인 웹미디어 환경에서의 명예훼손 등의 분쟁은 국가 개입보다는 민간 자율에 의해 해결해야 하며, 이용자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 해결에 무게를 두자는 방향이었다.

해외의 경우 자율규제를 기업의 경제활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기업의 이용자정보보호는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사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고객의 기호에 따른 기업의 관심도 확대되어 자율규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다음은 SNS 및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국가들의 예이다.

영국의 자율규제 기구인 IWF는 핫라인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는 불법 콘텐츠를 국적에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관련한 이미지, 영국 서버에 기반한 형사 처분이 가능한 음란물, 영국 서버에 기반한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콘텐츠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IWF에 신고 된 콘텐츠가 불법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활동을 진행하지 않지만, 불법이라면 신고 된 내용을 사법기구에 넘기고 있다. 즉, 개인 웹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해 제도적 규제는 명백한 법률적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이것은 불법콘텐츠를 고지 및 삭제하는 반면 불법은 아니지만 유해한 콘텐츠는 자발적 등급표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해결하려는 IWF의 운영방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과는 별도로 유럽 전체를 살펴보면,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SNS 정책이나 유해콘텐츠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하기보다는 SNS 사업자에 아동안전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안전한 SNS지침’을 채택하게 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 학부모, 교사 및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위한 안전한 SNS 교육과

명확한 연령별 이용정책 홍보

- o 연령별 서비스 제공
- o SNS 부가장치 및 기술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능력 제고
- o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콘텐츠 및 접속에 대한 신고 메커니즘 제공
- o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처리
- o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설정, 유지를 위한 도움 제공
- o 불법유해정보 검토결과에 대한 의미 평가 및 효율성 제고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bebo, 마이크로소프트, 프랑스 Skyrock, Dailymotion 독일의 Studivz, Yahoo유럽 등 15개국 20개 사업자가 ‘안전한 SNS지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가까운 아시아권의 싱가포르를 예를 들더라도, 미디어 콘텐츠 규제기관인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연성적 규제정책(Light Regulation)과 더불어 사업자와의 공동규제를 취하며, 명백한 불법(아동포르노, 인종차별)이 아닌 유해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

3) 개선방안

개인들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SNS게시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공적규제보다는 시장영역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편이 효과적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콘텐츠규제권한이 너무 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율규제의 기반은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에 설립된 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콘텐츠자율규제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수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SNS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필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자율적 구축

2000년도 정부가 인터넷 정보의 필터링 차원에서 추진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제도화는 정부주도의 필터링 시스템으로 도입시점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유명무실화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보다 규제가 쉽지 않은 SNS 필터링 시스템은 해당 사업과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업자와 이용자, 자율규제기구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 관계 유지 등의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이용자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위에서 언급 했듯이 인터넷 게시물/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은 단시간에 IT강국에 등극한 국가인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도 크다. 따라서 체계적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연령별/소득별 미디어리터러시 격차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부차원의 기본적인 임무가 되었는데 이에 독일 주 미디어청은 'klicksafe'의 일환으로 2009년에만 800회에 걸친 설명회, 미디어리터러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부모와 학교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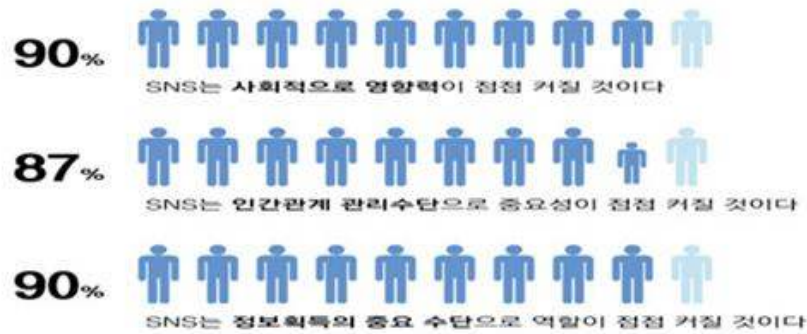
다) 자율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자율정화 메커니즘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사업자, 자율규제기구 간 공식적/비공식적 채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기구는 서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상시적인 논의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적 공간을 확보하여 자율규제를 확립하고 그 혜택을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결국 이용자 신뢰에 기반한 SNS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앞으로 SNS가 사회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관리수단 및 정보획득 수단으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대한민국 내에서 SNS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SNS의 주인공은 정부도 사업자도 아닌 바로 이용자이다. 하지만 SNS를 이용하는데 있어 야기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의한 인격의 손상과 사회질서의 혼란은 큰 문제가 아닐 수

가 없다.

<그림3-25> 한국인 SNS 이용형태 조사 ‘SNS 향후 전망’⁵¹⁾



하지만 정보의 활발한 소통이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공적규제가 개인 정보보호를 명목으로 정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적절한 조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조화를 지향하는 데 있어 웹 2.0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은 공적규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사업자단체 중심의 전통적 자율규제와 이용자 스스로가 본인을 지키는 선진 자율규제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겠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업계의 회원사들은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자율규제를 권장하고 바람직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이 SNS 이용이 활발해지는 웹 2.0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일 것이다.

51) <http://admankim.com/100108965192>

2. 비심의 분야

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서의 협력모델

1) 운영취지

오늘날 인터넷환경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사회적 요구가 인터넷상의 모든 문제점들의 기저에 깔려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보호 vs 자율규제’라고 하는 구도이다. 사실 청소년보호라는 우리 사회의 공익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율규제도 인터넷환경에서는 이전의 매스미디어에 비해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요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인터넷규제와 관련된 담론은 이러한 대립구도를 전제로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청소년보호와 자율규제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진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적인 시도가 바로 독일 청소년매체보호주간협약 제7조상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이고, 또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3이 채택한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 3 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 3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 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자(Jugendschutzbeauftragte)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3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기본취지 및 기능, 문제점 및 한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매체보호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제7조상의 청소년보호담당자(Jugendschutzbeauftragte)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州境계를 넘는 방송(länderübergreifendes Fernsehen)을 행하는 자는 청소년보호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기통신미디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자 및 서치엔진제공자 (Anbieter von Suchmaschinen)도 동일하다(주간협약 제7조 제1항).

(2)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볼 때 1년에 월평균 천만페이지(zehn Millionen Zugriffen) 이하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미디어제공자 및 연방전체에 걸쳐 배포되는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방송국은,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고 이 기구가 청소년보호담당자의 과제수행의 의무를 지며 또한 제3항에 상응하는 협력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임명을 포기할 수 있다(주간협약 제7조 제2항).⁵²⁾

(3)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청소년보호문제에 관해 이용자와 상담을 하고 또한 정보제공자에게 조언을 한다.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정보의 제작, 영업, 계획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보호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적합하고도 시의 적절하게 정보제공자에 대해서 협력하여야 하고, 제공되는 개별정보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정보제공자에 대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이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주간협약 제7조 제3항).

(4)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자신의 과제수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자신의 과제수행을 위해 불가결한 물적 수단(Sachmittel)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자신의 과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근로제공에 대한 수입의 선불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주간협약 제7조 제4항).

(5) 정보제공자의 청소년보호담당자들은 정기적으로 경험·지식의 상호교환을 해야 한다(주간협약 제7조 제5항).

52) 이 조항은 실제로 중소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 매우 큰 이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사업자의 자율규제기구로서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ter(FSM)'이 구성되었다. 멀티미디어법의 제정 이후 독일에서의 인터넷 내용규제 현황에 관한 간

위에서 소개되어 있는 독일 청소년매체보호주간협약 제7조상의 청소년보호담당자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첫째, 청소년유해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기통신미디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자 및 서치엔진제공자도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임명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방송의 주의 관할이고, 통신은 연방의 관할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관할이 연방과 주 중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관할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주간협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연방이 관할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보호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아무튼 인터넷사업자의 경우에도 주경계를 넘는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임명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혹은 1년에 월평균 천만페이지(zehn Millionen Zugriffen) 이하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미디어제공자의 경우에는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고 이 기구가 청소년보호담당자의 과제수행의 의무를 지는 때에는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임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아웃소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바로 법적인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결합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는 법적인 공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공적 규제시스템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율규제를 가미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이 매체영역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결합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보호담당자는 단순히 전기통신미디어사업자의 직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미디어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기통신미디어사업자의 영업정책이나 사업방향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담당자에게 청

략한 소개로는 Otto Schily, “Worldwide Communication-A New Culture of Common Responsibility”,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79-96면 참조.

소년보호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는 철저하게 외형적으로는 법적인 공적 규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철저하게 자율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보호 담당자들 간의 협의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소년보호 담당자들 간의 협력, 정보교환,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2)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운영 현황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운영은 사실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보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주요활동으로 사업자 협력회의와 워크숍 개최,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말 현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사업체는 총 58개이다.⁵³⁾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전적으로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형태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3)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매체물의 경우 매체 특성상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시스템만이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 규제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12조 이외에는 전무하며, 그나마 청소년보호법 제12조는 거의 활성화되어 못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제12조를 개정하는 것 이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5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협의체의 활동과 현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방송통신심의연감」, 2010. 4, 215-218면 참조.

문제점 및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5조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제도의 기본취지상 그 범위를 제한할 논리적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은 시장의 논리상 대규모사업자 영역보다는 중소기업사업자 영역에서 그 유인이 크므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사업자가 지는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3 제2항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의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즉 현재의 규정처럼 해당 사업자의 임원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여 과연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된 임원이 자신이 소속된 사업자의 영업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의 외형만 따왔다는 비판이 가능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철저하게 사업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의 인사를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독일에서 기본적인 형

식을 가져오면서, 자율규제의 강화라는 측면은 도외시하고 있다. 위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는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지정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하의 전기통신미디어제공자가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고 이 기구가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사업자의 자율규제의 강화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서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

위에서 설명한 독일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의 내용 및 취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를 염두에 둘 때,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 있어서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의 협력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기본취지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제한할 논리적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오히려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은 시장의 논리상 대규모사업자 영역보다는 중소기업사업자 영역에서 그 유인이 크므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전문가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되, 지정된 자를 해당 사업자의 임원급으로 '대우'함으로써,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개선방안, 즉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확대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기

관이 일정한 능력과 요건 등을 갖춘 자율규제기구를 승인하고, 승인된 자율규제기구에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자율규제기구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가)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 즉 법적인 공적 규제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율규제를 가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정보통신방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적인 공적 규제이지만, 현실적인 운영은 자율규제기구가 담당함으로써, 이러한 장점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취지, 즉 ‘자율규제’로서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우선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는 사업자 내부에 청소년보호담당자를 둬으로써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의 자율규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시장 차원에서의 자율규제’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서도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아웃소싱을 가능하게 된다면, 자율규제기구가 개별 사업자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는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법적인 공적 규제로서의 속성도 지니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실효성확보에 대한 수단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예컨대, 개별 사업자와 자율규제기구 간의 담합)을 통한 제도의 형해화에 대한 우려는 걱정할 것이 못된다.

나. 자율 규제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다음커뮤니케이션 박준석

1) 취지

전 세계적으로 자율 규제가 공적 규제의 빈 곳을 채우는 데 적합한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업종, 업계에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율 규제, 모니터링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여성가족부의 사이버윤리지수 등 관련 정책들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독려하면서 유해정보 근절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모니터링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법 정보 방조와 같은 법률적 리스크 관리, 브랜드 이미지 관리, 고객 보호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불법정보의 규제라는 공익추구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영역이다. 공익추구의 노력은 개인과 사회, 국가가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익의 영역은 국가의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자에 의한 모니터링 조직과 시스템 운영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국가의 역할을 일부 분담한 것이기도 하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하고, 시스템, 설비, 기술을 도입하였지만 불법, 유해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는 성실한 모니터링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따른 이용자의 소송, 법률 제정을 통한 규제 강화 시도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업자는 여전히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및 네티즌 보호를 위해 자율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적 규제 기관의 민원 처리, 모니터링 사업은 불법, 유해정보 차단에 있어서 사후적 처리 밖에 될 수 없으나, 사업자는 불법, 유해정보가 게시되는 순간부터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자율 규제가 공적규제보다 빠르고, 실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독려하

고 미이행 사업자들을 자율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즉 공익을 위한 자율규제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인터넷 업계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NHN,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형 포털 사이트 제공자 중심으로 대규모의 자율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007년 포털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대규모의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하고 고도화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모니터링 조직 및 시스템에 들이는 비용은 연간 수십억에 이른다. 인건비, 시스템 구축 및 개발 비용, 솔루션 구입비용 등 수익은 전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사업이다. 이윤을 추구해야 할 포털 사이트 사업자로서는 리스크 관리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표3-14> 국내 주요 포털사 2009년 매출⁵⁴⁾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NHN	1조 2371	5,318
Daum	2,446	445
SK컴즈	2,000	-73
KTH	1,338	3

54) 포털 3사 재무정보는 각 회사의 소개 페이지에 있는 재무제표를 참고했음.
 NHN 재무제표 <http://www.nhncorp.com/ir/finance01.nhn?year=2009&qt=0>
 Daum 재무제표 <http://info.daum.net/Daum/ir/linkBalanceSheet.do>
 SK컴즈 재무정보 http://corp.skcomms.co.kr/ir03_2.jsp
 KTH 재무정보 <http://www.kthcorp.com/ir/financial.jsp>

<표3-15> 국내 주요 포털사 모니터링 인력 현황 및 추정 비용⁵⁵⁾

구분	인원	추정 비용
NHN	350명	105억 원
Daum	200명	60억 원
SK컴즈	150명	45억 원

위의 자료를 보면 포털사들은 전체 매출 중 2.5%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니터링 조직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절대치의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리소스 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주요 포털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리소스 투자가 가능하여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지만, 중소 규모 사업자 사이트의 경우 비용 문제로 인해서 자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조직 구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높은 장벽이 되기도 한다.

3) 유사 제도 및 사례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었고,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를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업자단체에서 진행되는 것을 ‘의사자율규제’라고 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etrust 마크제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safe 마크 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사업자 개인 또는 단체에서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을 ‘완전자율규제’라고 한다. 사업자 스스로 담당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 자율규제’와 ‘사후적 자율규제’로 구분했다. ‘사전적 자율규제’는 자율적 행동규약,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등이고, ‘사후적 자율규제’는 소비자 상담실, 콜센터 운영, 자율적 피해보상 규정 운영 등을 포함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불량한 기업을 적발, 공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55) 모니터링 인력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IT정책연구시리즈 제14호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을 참고했으며, 추정 비용은 모니터링 요원 1인당 비용을 3천만 원으로 산정했음.

<그림3-26> eTrust(우수전자거래사업자인증) 마크⁵⁶⁾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사이버몰과 B2B 등 6개 부문을 대상으로 시작한 ‘eTrust’ 인증의 경우 모든 산업 부문별로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 기업의 심사를 통해 마크를 부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 마크가 표시된 사이트에 대해 발생하는 효과는 고객의 신뢰도 향상, 기업의 자율규제 의지 강화, 정부의 관리 편의성 향상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우수업체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의 사례이다.

<그림3-27>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⁵⁷⁾



‘i-Safe’ 마크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효과적 보호, 안심한 온라인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산업협회가 마련한 제도이다. ‘i-Safe’ 마크는 인터넷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리수준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

56)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62240>(“전자상거래 활성화하는 'eTrust 인증마크' 확대”)

57) http://www.eprivacy.or.kr/internet/internet_01.html(“i-Safe 인증 개요”)
http://www.eprivacy.or.kr/internet/internet_03.html(“i-Safe 인증 절차”)
http://www.eprivacy.or.kr/internet/internet_04.html(“i-Safe 인증 혜택/효과”)

을 충족하는 부여하며, 소비자는 개인정보 오남용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용자-사업자간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중소·중견 독립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공시이행 실태, 제보 내용 등을 점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도입,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구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법으로 제정된 사례도 있다. 관세법 제255조의 2등에서 정한 공급망 보안표준에 따른 공인기준을 준수한 업체를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선정하고, 관세행정 상에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AEO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혜택을 받게 된다. 점차 AEO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비AEO 기준으로 관세행정을 다루게 된다.

<그림3-28>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마크⁵⁸⁾



58)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00601150125262&p=yonhapp>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받아 경제위기 파고 극복")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0051114014331948&outlink=1>
("윤영선 청장 '미,EU 등과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

4) 모범 사업자 지원 방안

먼저 모범 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 혹은 사업자의 자율 규제, 자율 모니터링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사이버윤리지수를 포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건수 등을 기초 데이터로 하고, 회사의 규모, 매출 등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KISO 회원사일 경우에는 윤리강령 준수 여부도 포함할 수 있겠다. 이는 다음 장 “자율규제 평가지수 개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자율 규제 모범 사업자를 위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민형사상의 면책 및 감경을 제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음란·선정,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인하여 노출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의 비용적 부담에 비해서 줄어 들기 힘든 법적 리스크를 일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율규제 미이행 사업자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모니터링 조직 및 설비 투자 등을 고려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대규모 모니터링 조직의 경우 지역에 설립되는 사례가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 모니터링 요원을 위한 PC 무상 제공, 사무용 기본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또는 사무 공간 제공, 무상 임대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다. 대규모 인력 채용, 설비 투자 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개선해야 할 영역이 모니터링 기술의 고도화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력 투입, 외부의 솔루션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등이 만만치 않다.

또 유해정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필터 효율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지원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ETRI의 기술 이전 또는 외부 업체의 솔루션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모니터링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모니터링의 효율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다. 자율규제 평가지수 개발

KTH 김대기

1) 취지

주요 OSP는 자사 사이트 불건전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OSP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외부에서는 OSP의 이와 같은 자율규제 노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OSP로서는 계속 늘어가는 자율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칫 자율규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중소 OSP의 경우에는 투자대비 대외적인 효과의 미흡함으로 인해 자율규제에 선뜻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OSP가 스스로 자신의 자율규제 활동이 어느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우수한 자율규제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OSP 스스로 자율규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아직 자율규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OSP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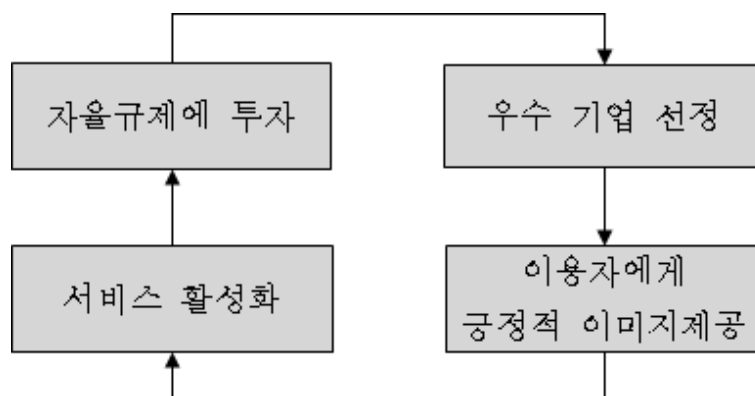
효과적인 자율규제 평가지수 개발을 위해 그 동안의 평가지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그 동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첫 번째로, 사업자 입장에서 자율규제 평가지수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게시물 작성 시 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유해정보를 자동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고, 유해정보를 검색할 수 없도록 금칙어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한편, 성인인증 절차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별 제공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솔루션과 절차를 통해서도 차단이 불가능 할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통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매년 수억~수십억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생성될 수 있는 유해정보를 기술적으로 100%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소규모 사이트의 경우 이러한 유해물 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러한 유해물 노출로 인해 야기되는 2차적인 문제는 OSP 스스로 자율규제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속적인 비용 투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유해게시물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용자나 외부에서는 해당 OSP를 ‘불건전 사이트’로 낙인을 찍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자율규제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가치가 투자대비 극히 미미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율규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수한 자율규제 기업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3-29>와 같이 자율규제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고 홍보될 경우, 이용자에게는 더욱 큰 신뢰감을 심어주게 되고 결국 자율규제에 투자한 결과가 서비스의 활성화로 다시 연결되는 긍정적인 Cycle로 진행된다면, 사업자 스스로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29> 자율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긍정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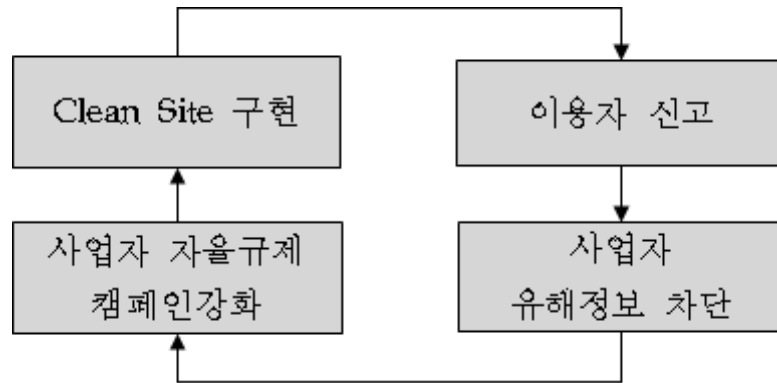
또한, 자율규제 평가지수를 통해 자사의 자율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자율규제 평가지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자사의 자율규제의 현황은 어느 수준인가?
- 경쟁사와 비교하여 자율규제 인력은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는가?
- 차단 시스템에 부족한 점은 없는가?
- 향후 개선·보완해 가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경쟁사와 비교하여 자사에서 많이 노출되는 유해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어떻게 이를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인가?
- 이용자 응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가?

두 번째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율규제 평가지수 의미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그러나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유해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그 동안 가져왔던 사업자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자율규제 우수기업이며, 자율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즉, 기존에는 유해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를 평가했다면, 자율규제 우수 기업이라는 홍보를 통해 도리어 유해정보 노출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림3-30>과 같이 이용자 스스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사업자 혼자 아닌 이용자와 함께하는 긍정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발전해 나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델로 발전해 가기 위해 사업자는 대내적인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 이용자를 위한 자율규제 캠페인 실시, 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병행함으로써 더욱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30>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긍정적인 자율규제 모델



세 번째로, 규제자 입장에서 자율규제 평가지수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규제자가 유해정보를 Notice하고 사업자가 이를 Take down하는 방식으로는 쏟아져 나오는 유해정보를 더 이상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갈수록 발전해 가는 기술로 인해 유해정보 또한 다양한 기술력이 도입되어야만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효과적 차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단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각 사업자가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그 모든 비용을 규제자 입장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또한, 각 사업자별로 규모와 사업형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자율규제 방향성도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떤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잘 하고 있고, 어떤 사업자가 개선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규제자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율규제 평가지수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각 사업자별 자율규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각 사업자별로 긍정적인 자율규제 경쟁심을 유발하여 선순환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우수 사업자의 우수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발견하여 많은 타 사업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유해정보 차단이 가능하다.

3) 실현 가능성 및 전제조건

대부분의 OSP가 이미 많은 비용과 자원을 투자하는 자율적인 규제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홍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율규제 평가지수가 개발되어 대고객 및 외부에 홍보가 가능하다면, 별도의 추가 투자 없이 자사의 우수함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많은 기업이 이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06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의 경우에도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참여방식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3-31>과 같이 매년 참여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31> 사이버윤리지수 평가사업 소개(여성가족부)

사이버윤리지수 평가사업 소개

사업개요

2006년 6월 개발 완료 및 1회 평가조사 실시(26개 업체), 2007년 2회 평가조사 실시(31개 업체)
2007년도 평가사업에는 포털 과 게임 사이트 외에도 UCC와 P2P 사이트 업체 참여
2008년도 평가사업은 참여업체 33개로 증가(일반/UCC/P2P 18개, 게임업체 15개)
2009년도 평가사업은 온라인쇼핑업체 참여(예정)

평가내용

사이버 윤리 지수: 3개 평가로 구성

(1) 객관 지표, (2) 업계의 자체 평가 지표, (3) 이용자를 대표하는 평가단 지표

업계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 유도
자율정화 시스템 구축
전반적 사이버 공간의 품위 향상

<표3-16> 사이버윤리지수 평균지수 및 참가기업 수

구분	2006년도 평가	2007년도 평가	2008년도 평가
일반부문(참여기업)	77.9 (12개)	81.31 (18개)	82.36 (18개)
게임부문(참여기업)	77.1 (14개)	80.05 (14개)	83.21 (15개)
전체평균(참여기업)	77.5 (26개)	80.68 (32개)	82.79 (33개)

자율규제 평가지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업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참여를 독려하되 강제하지 않고, 도리어 참여함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다면, 업체 스스로 참여할 의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규제 평가지수 참여로 인해 업체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지 먼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미 많은 기업이 스스로 비용을 투자하여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율규제 우수기업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혜택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이므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보다는, 자사의 규모에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충실한 자율규제를 진행하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판단된다. 즉,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위한 시스템, 인력, 투자, 자율규제 효과 등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여 대외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우수 기업에게 우수 등급이나 마크 등 표식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 OSP 스스로 더욱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법제도적 개선방안

자율규제 평가지수를 개발은 평가기준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인 방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평가 방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가 항목

에 있어서는 <표3-17>과 같이 자율규제 인프라, 신고센터 운영 등 책무, 유해정보의 노출 차단 등 콘텐츠의 질적 수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표3-18>과 같이 평가 주체에 있어서는 평가단의 선정이 중요하며 전문가 집단, 이용자 집단, 기업 자체 평가 등 특정 집단만의 평가가 아닌 전반적인 부문에서 평가단을 추출하여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수 자율규제 기업이라 할지라도 100%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자율규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해정보를 노출하였을 경우, 법제도적으로 우수 자율규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율규제 평가지수 제도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3-17> 자율규제 평가지수 지표

평가항목	인프라	이용자 보호	콘텐츠 관리
주요 내용	자율규제 조직/기술 등	신고센터 운영 등 책임성 있는 대응	유해정보 차단 정도

<표3-18> 자율규제 평가지수 평가 주체

평가 주체	전문가 집단	이용자 집단	기업자체 평가
주요 내용	전문가의 전문적 평가	실제 이용자의 체험적 평가	기업 자체 수준 평가

라. 공동규제 활성화 포럼

다음커뮤니케이션 박준석

1) 취지

공동 규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 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큰 틀에서의 지향점 설정에서부터 규제 기준, 심의 절차 등 실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그러한 논의를 위해서 포럼 형식의 상설 논의 기구를 마련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설 논의 기구는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규제 정책, 심의 절차, 심의 결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의 개선안을 찾아가는 회의체 성격을 지니게 된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에는 공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에 공동규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는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인터넷의 자율규제, 공동규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최근에서야 공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공동규제를 논의하고, 만들어 가고,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첫 걸음은 상시적인 협의체의 구성일 것이다.

3) 해외 사례

가) 영국의 ACPO/ISPs

영국은 1997년부터 정부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간에 긴밀한 협조로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규제를 진행해 왔었다. 이후 인터넷 범죄 수사 기관인 컴퓨터 범죄 유닛(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Computer Crime Unit)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ACPO/ISPs라는 정부포럼을 신설해 양자 간 실천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나) 프랑스의 FDI

프랑스는 공동 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권리포럼(FDI)을 두고 있다. 인터넷권리포럼(FDI)은 인터넷상의 분쟁 조정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을 연결해 개인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다. 현재 70여 개의 단체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포럼 내에서의 토론과 협의결과는 인터넷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다양하게 반영되기도 한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기업 간, 개인 간의 분쟁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중재역할”을 맡아 왔다. 정부재정과 회원회비로 운영되고 중재요청 5,400여 건 중 3,200여 건을 처리했다. 인터넷이용자협회(AUI)는 이용자의 윤리강령제정, 모니터링, 입법청원을 포함해 이용자 교육을 주로 담당한다. 이로써, 프랑스의 인터넷 콘텐츠 관련 규제는 통합형 규제보다는 분산형 공동규제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겠다.

4) 국내 도입 방안 및 기대 효과

우선적으로 인터넷 규제에 관한 사회적 이슈 생산 및 공론의 장으로써의 포럼이 필요하다. 공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구인 물론 네티즌,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 계각층의 참여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인터넷 규제에 대한 모든 논의를 토대가 되는 포럼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범위를 좁혀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의 한국형 모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공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한국형 공동규제 모델을 찾아가는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유해정보, 불법 정보, 사회적 유해정보, 명예훼손 등 내용별 심의 주체에 대한 논의, 자율규제 영역 밖의 유해정보에 대한 역할 분담, 공동규제 모델에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역할, 장기적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자율규제의 법적 지위 보장 등 보다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바로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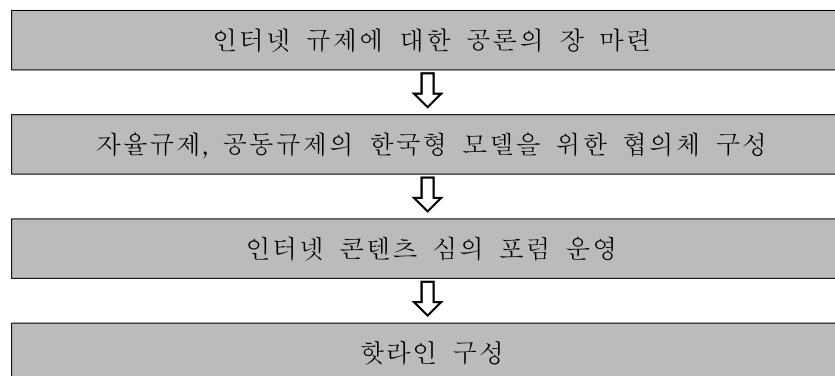
셋째 공동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 인터넷 콘텐츠 심의 포럼이 필요하다. 이는 공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심의 기준을 합의하는 과정으로, 심의

기준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 합의점을 찾아내고 또 서로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공적 규제기관이 갖고 있는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자율규제기구와 공동으로 규제함으로써 인터넷 콘텐츠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고양하는데 기여하며, 이용자에게는 인터넷의 올바른 규범인식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포럼을 정례화 하여 명예훼손 관련 심의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포럼의 운영과정과 결과들은 이용자들에게 심의 관련 판단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협력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심의 및 분쟁조정 관련 결과 공유를 통해서도 두 주체 간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과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공동규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의 및 분쟁조정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팀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효율적인 핫라인 설치 및 운영을 진행 한다. 공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구 는 핫라인을 동시에 설치해 상호 호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개인정보를 동반한 심각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전파에 있어서는 빠른 정보 공유를 통해서 공동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3-19>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이상과 같이 인터넷 규제를 위한 공론의 장이 없는 지금, 정기적인 포럼을 통한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의 논의가 양지로 나와 실질적인 주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 OSP-KISO-방통위 핫라인 운영을 통한 자율 규제방안

KTH 김대기

1) 취지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어떠한 방송통신 매체보다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참여, 개방, 공유의 정신으로 대표되는 웹 2.0이 본격화 된 이후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건전한 정보 뿐 아니라 불건전 정보 또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주요 OSP는 이러한 불건전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각 사별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불건전 정보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건전 정보는 대부분 동일한 정보가 여러 OSP에 중복하여 게시되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행태를 띄게 되므로, OSP, 공적규제, 자율규제기구 간에 적극적인 협력체계 특히 핫라인 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2007년 3월 모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이 수 시간 동안 노출되는 사건을 계기로, 국내 OSP는 대부분 유해 게시물 차단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OSP에서는 게시되는 게시물 작성 시 <그림3-32>와 같이 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유해정보를 자동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한 차단과 함께 유해정보를 검색할 수 없도록 금치어를 통한 차단을 실시할 뿐 아니라, <그림3-33>과 같이 성인인증 절차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별 제공하고 있다.

<그림3-32> 불법저작물 자동 필터링 시스템 사례

□ A사 저작권 자동 필터링 시스템



- 저작권 침해 의심 음원 등록 시, 비공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 저작권 침해 의심 동영상 등록 시, 게시를 블라인드 조치를 통해 노출이 차단됩니다.

□ B사 자동음원 필터링 시스템

자동음원 필터링 시스템



□ C사 음원 저작권 필터링 기능

▶ 음원 저작권 필터링 기능

[파일 업로드시 저작권 검사]

파일 첨부시 음원 파일의 경우 자동으로 저작권 위반 여부를 검사하며,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음악 파일의 경우 첨부된 파일 옆에 **[저작권위반의심]**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 D사 음원 필터링 시스템

음원 필터링 시스템



<그림3-33> 성인인증 페이지 적용 사례

□ A사 성인인증 페이지

19

***섹스*는 성인 키워드입니다.**

본 정보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인 전용 검색결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인정보를 제외한 클린검색결과를 보시려면 [클린검색결과 보기 >](#)

회원 성인인증

아이디가 없는 회원은 로그인 후 성인인증을 받으세요

보안 2단계

1 2 3

아이디

비밀번호

☐ ID 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비회원 성인인증

아이디가 없으신 성인은 아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후 이용하세요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받기

비회원은 인증 내용이 저장되지 않음

비밀번호를 잊으셨거나, 로그인에 문제가 있는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B사 성인인증 페이지

19

본 정보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키워드 제한](#)

▶ 19세미만이거나 성인인증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외한 검색결과 보기](#)

▶ 성인 인증하기

회원 성인 인증

보안 2단계

IP보안

아이디

비밀번호

☐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비회원 성인 인증

이름(성명)

주민번호

확인

비회원은 인증 내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 183 -

□ C사 성인인증 페이지



성인인증

성인키워드 검색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이트 검색 성인인증

본 정보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인 카테고리라와 성인 관련 키워드는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성인정보를 제외한 검색결과 보기](#)

회원

1 2 3 보인 2단계 OTP 보안

아이디 @ .com 로그인

비밀번호

☐ 아이디 저장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비회원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인인증받기

*비회원 인증 내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 D사 성인인증 페이지



성인인증

성인 전용 카테고리라와 성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기 위해서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의 성인인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 유해물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로 구분되는 성인정보들을 청소년들이 조회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비회원 성인인증은 해당 성인인증을 한 브라우저가 열려있는 동안만 적용됩니다.

성인인증은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니 불편하신 점이 많으시겠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인인증으로 추가할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성인인증 키워드 제안하기](#)

회원성인 인증

아이디 @ .com ID저장

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비회원성인 인증

이름

주민등록번호 -

고객의 주민번호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성인인증

취소

이러한 여러 가지 솔루션과 절차를 통해서도 차단이 불가능 할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유해정보를 확인하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주요 OSP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상시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신고센터를 통해 이용자의 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즉시 적절한 자율규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OSP의 자율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로, 유해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자원의 중복투자 문제이다. 주요 OSP에서 각자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유해정보를 확인하여 차단함으로써 인해, 각 사이트마다 동일한 유해정보를 별도로 선별 확인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사별로 연간 수억~수십억 이상의 비용을 중복투자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신규 유포되는 주요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로,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유해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된다는 문제점이다. 유해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노출될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초기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 사이트에 노출된 음란동영상의 경우 6시간 만에 2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유해정보가 초기에 급속하게 확산된 바 있다.

<그림3-34> 음란동영상 노출 사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해정보가 노출된 초기에, 노출 사실을 관련 OSP에 일괄적으로 즉시 통지하고 각 OSP는 자사 사이트를 즉시 확인하여 차단,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유해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정보의 유해성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는 <표3-21>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3-20>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위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근거하여, 주요 OSP의 경우 <표3-22>와 같이 약관으로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표3-21> OSP의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유통 금지 약관 사례

방법 제44조의 7	OO 서비스이용약관	
내용	내용	조항
1. 음란정보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제12조 2항 2
	욕설이나 노골적인 성 묘사를 하는 행위	제22조 6항 5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저장공간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22조 6항 11
2. 명예훼손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제12조 2항 1
	타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하는 행위	제22조 6항 5
3. 스토킹	타인을 스토킹(stalking)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제22조 6항 6
4. 청소년유해 매체물 유통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제12조 2항 2
	욕설이나 노골적인 성 묘사를 하는 행위	제22조 6항 5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저장공간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22조 6항 11
5. 해킹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제12조 2항 7
	회사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제12조 2항 8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제22조 6항 15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방식, 기획의도를 변경 및 방해하는 행위	제22조 6항 18
6. 사행행위	회사의 정책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서비스상 사이버 아이템, 가상자산 등의 매매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제12조 2항 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제22조 6항 1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2항 11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이나 약관에 근거하더라도 온라인상에 게시되는 다양한 정보가 정확하게 어떤 법률이나 약관에 위배되는지 OSP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유해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정상적인 정보가 유해정보로 오 판단되어 차단되거나, 유해정보가 정상적인 정보로 오 판단되어 계속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실현 가능성 및 전제조건

핫라인 체계 구축을 통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 기 운영 중인 핫라인 운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주요 OSP와 공공기관 간에 기 운영 중인 핫라인 운영사례는 <표3-23>과 같다.

<표3-22> 주요 OSP와 공공기관의 핫라인 운영 사례

공공기관	핫라인 운영 목적	주요 차단 대상 정보
경찰청	사이버 폭력 확산 방지 등 불법 정보 공동 대응	사이버 폭력, 자살 등 불법 정보
식약청	불법 판매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판매, 광고 등 불법정보 차단	불법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 광고 등 불법 정보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 등 금융관련 불법 게시물을 공동 제재	금융관련 불법 정보
법무부	불법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방지 및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불법 저작물 등 불법 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확산 방지	망법 제44조7의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첫 번째로, 경찰청과 OSP간의 핫라인 운영 사례이다. 2007년부터 OSP와 경찰청 간에 핫라인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사이버 폭력 등 불법정보 확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핫라인 운영 방식은 긴급한 유해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 전체 핫라인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메일과 SMS를 통해 <그림 3-35>와 같이 긴급 협조를 요청하고, 각 OSP에서는 관련 유해정보가 자사 사이트에서 확인될 경우 이를 자사 약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삭제,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3-35> 경찰청-OSP 핫라인 사례

[경찰청 핫라인] 인터넷상 폭력 동영상 게시·유포관련 협조 요청

다름이 아니옵고 금일 연합뉴스 등 인터넷 언론에 꼬마를 폭행하는 폭력 동영상 유포되면서 포털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시된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42031&>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027001763&subctg1=&subctg2=>

이에 핫라인 업체에서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임해 주시고, 발견시 가능하다면 임시차단 또는 삭제 등 적의 조치 바랍니다.

해당 게시물의 확산 유포가 문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식약청과 OSP간 핫라인 운영 사례이다. 식약청은 주로 불법 의약품, 불법 의료기기, 불법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등 불법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OSP와 MOU를 체결하고 핫라인을 통해 <그림3-36>과 같이 불법 정보에 대한 사례와 유해정보의 해당 URL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OSP에서 보다 쉽고 신속하게 유해정보를 확인하여 차단이 가능하며, 식약청에서 월별로 자율규제를 통해 차단한 통계 자료를 취합 관리하여 시기별, 유형별로 어떤 유해정보 차단에 집중해야 하는지 개선안을 모색하여 핫라인 체계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그림3-36> 식약청-OSP 핫라인 사례

투명하고 청렴한 글쎄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허위과대광고 관련 협조 요청

1.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귀 회(사)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허위·과대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유명연예인 및 한의사 등을 모델로 한 한방다이어트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금지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귀 회(사)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 (식품관리과-381호<2010.1.14> 등 10회)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불법과 같이 불법 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3. 귀사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소비자들이 더 이상 해당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임 불법사이트가 광고(해당 광고 및 유사광고) 삭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사례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업체명	인터넷주소	위반내용	근거	광고내용	광고노출포털
OOOO 다이어트	http://www.diet-25kg.com/TOVRAW=%EB%88%A4%EC%9D%B4%EC%96%B4%ED%B4%B8&OVKEY=%EB%88%A4%EC%9D%B4%EC%96%B4%ED%B4%B8&OVMTD=standard&OVADID=26202215042&OVKVID=353908811042&OVCMPIGID=1716568042&OVADGRPID=13231767930	허위과대광고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김창환호 사진기자 등의 제탈기 이용 과대광고	OOOO 광고

1:1 상담신청 080-700-7880 고객님의 동무게와 체질을 말씀해주세요.

2010 100% 100% 건강기능식품협회 유기농제품 유기농산물 3차배신확보

뽕뽕없는 살과의 건강, 여성들의 다이어트 비결?? 지방흡수 및 지방합성저해와 체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NEW UpGrade

-25kg의 체지방 감량 프로젝트

체지방방어 체지방공격

늘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이 문제? 체지방이 되는 탄수화물을 방어 VS 나의 두꺼운 지방층은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손쉽게 태워버리자

목표세움 50% 개인별 / 체질별 / 맞춤형 프로그램 뱃살, 팔뚝살, 허벅지살, 속살 100% 책임감량제

미연혜(주부) 그녀만의 비법 청수정(적장면)

살빼기 힘든 부위! 이제 양껏 먹고 원하는 만큼 뺏다!!

세 번째로 금융감독원과 OSP간 핫라인 운영 사례이다. 금융감독원은 '08년 11월 21일 불법금융행위 관련정보의 조기차단 및 인터넷상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포털업체 5개사(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동안에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등에만 조치 의뢰함에 따라 조치기관의 조치완료 전까지 불법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사기관 등의 조사와 관계없이 포털업체에서 불법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금융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불법 금융행위와 관련하여 포털이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인 금융관련 광고, 블로그 등에 대해 적법 여부를 문의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OSP간의 핫라인 체계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명백한 불법정보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조기 차단을 위해 OSP와 핫라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핫라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을 통해, 자율규제 사례와 모니터링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필터링 기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유해정보 조치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상황실과 각 OSP의 모니터링센터간의 협조를 통해 상시 핫라인 체계를 운영 중이며, <그림3-37>과 같이 상황실을 통해 확인된 유해정보를 실시간으로 OSP로 전달하여 신속하게 자율규제를 통한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3-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OSP간 핫라인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게시물 자체처리 요청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신고센터입니다. 귀사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 내에서 아래와 같은 유해성 정보를 발견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확인 후 자체처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물 URL]
http://mbox.paran.com/mbox/channel.media.view.do?ch_no=47533&media_no=757569


기타 법무부의 경우에는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 및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 방지를 위해 OSP와 MOU를 체결하여 핫라인 구축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공공기관과 OSP간의 핫라인 운영 현황을 볼 때 각각의 분야에서 상당한 유해정보 차단 효과는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유해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차단 요청이다. 일반적으로 각 OSP에서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해정보의 정확한 URL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해정보의 초기 확산 속도를 감안하여 정확한 URL 없이 예상되는 유해정보의 유형만을 제공하면서 핫라인을 통해 유해정보를 차단 요청할 경우, 실제 OSP에서는 자체 게시판의 전체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관계로, 실효성 없이 수박 겉핥기식의 처리만 진행될 우려가 높다. 이에 핫라인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 요청 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가급적 정확한 URL을 적시하여 유해정보 차단을 요청할 것
2. 정확한 URL 확인이 불가할 경우, 유해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해정보의 제목, Capture화면 등의 자료와 함께 제공할 것

둘째, 명백한 불법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요청이다. 각 OSP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라 명백한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가 공개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명백한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심의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해 명확한 불법정보 여부를 판단한 후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핫라인을 통해 불법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해 올 경우, OSP로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관계로 해당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즉, 핫라인을 통한 자율규제는 명백한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해정보 발생 초기에 핫라인을 통한 신속한 통지가 필요하다. 핫라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해정보가 최초로 발생할 경우, 이를 얼마나 단기간에 전체 OSP에 통지할 수 있는가가 성패에 가장 큰 조건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해정보는 낮 시간에만 유포되는 것이 아니므로, 24시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그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OSP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또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본적인 핫라인 운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또는 신고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소규모 OSP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적·제도적인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핫라인이 구축되지 못한 영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핫라인 체계는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력 구축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부담으로 인해 핫라인 체계 구축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이다. 또한, 포털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게임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등 온라인 유해정보가 확산될 수 있는 기타 영역에 대해서도 핫라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법제도적 개선방안

이와 같이 안정적인 핫라인 체계 구성을 통해 유해정보의 신속한 확산방지 및 중복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도적 개선 방안이다. 먼저 <그림3-38>과 같이 OSP, KISO,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력을 통해, 급격한 확산이 예상되는 유해정보 발견 시 핫라인을 통해 OSP, KISO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공유하고, 핫라인을 통해 확인된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인하여 유해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최소한 핫라인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유선전화, 휴대폰, 메일 등의 다양한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핫라인 연락처 또는 담당자가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핫라인을 통해 변경된 연락처와 담당자를 공유함으로써 긴급 정보 전달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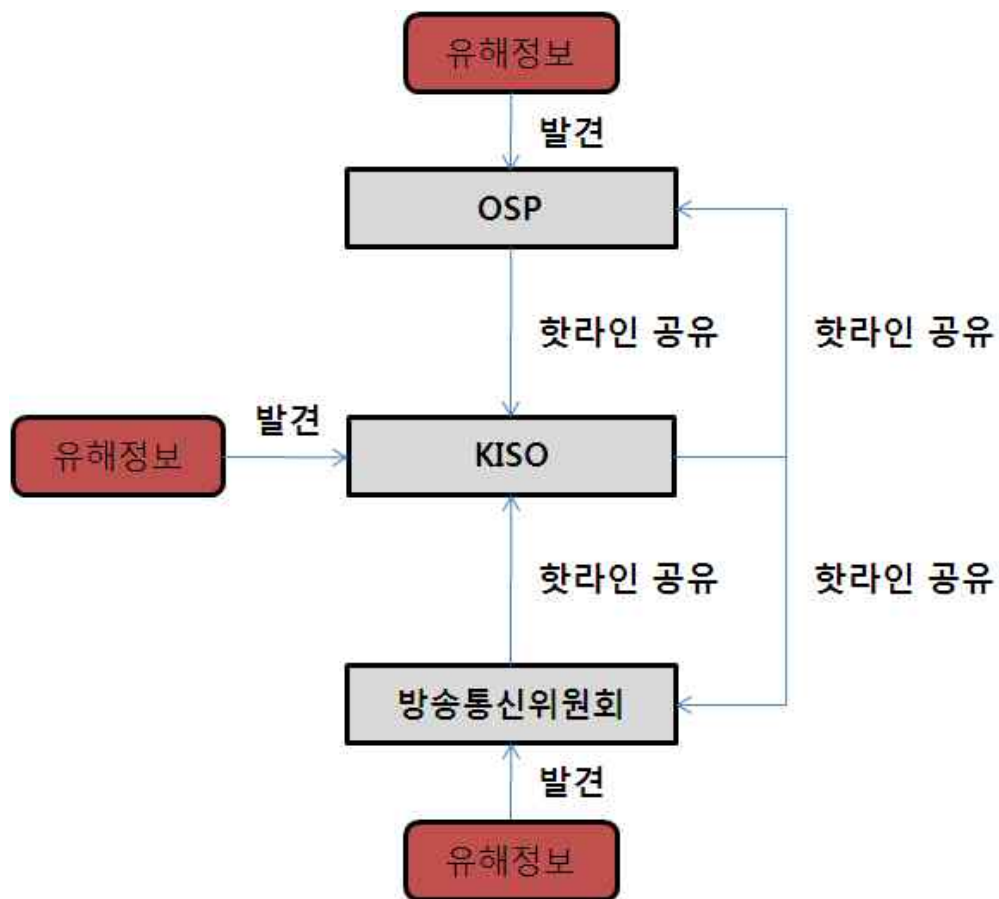
둘째, 핫라인 통합 운영 시스템의 구축이다. 유해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유해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각 핫라인 담당자에게 통지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현재 대부분의 핫라인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통지가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메일은 정확하게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전화의 경우에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와 함께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이다. 이에 <그림3-39>과 같이 보다 쉬운 방법으로 통지하고, 또한 핫라인 담당자가 정확하게 해당 내용을 수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시스템, 이메일, SMS로 동시에 각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내용을 수신한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전체 중 몇 %의 담당자가 수신하였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수신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만 별도로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 통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통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지 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킬 경우, 유해정보의 차단 여부와 차단 통계 등을 연계하여 유해정보의 통지부터 차단까지의 전체 결과를 통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핫라인 운영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핫라인 체계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발생한 건에 대한 해결만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해정보 발생 사실에 대한 통지에만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핫라인 운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인력의 배치, 통지·차단 등의 시스템 구축, 핫라인 운영으로 인한 차단성과 등 다방면에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현재 핫라인 체계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보완하고, 잘된 점은 보다 발전시킴으로써 핫라인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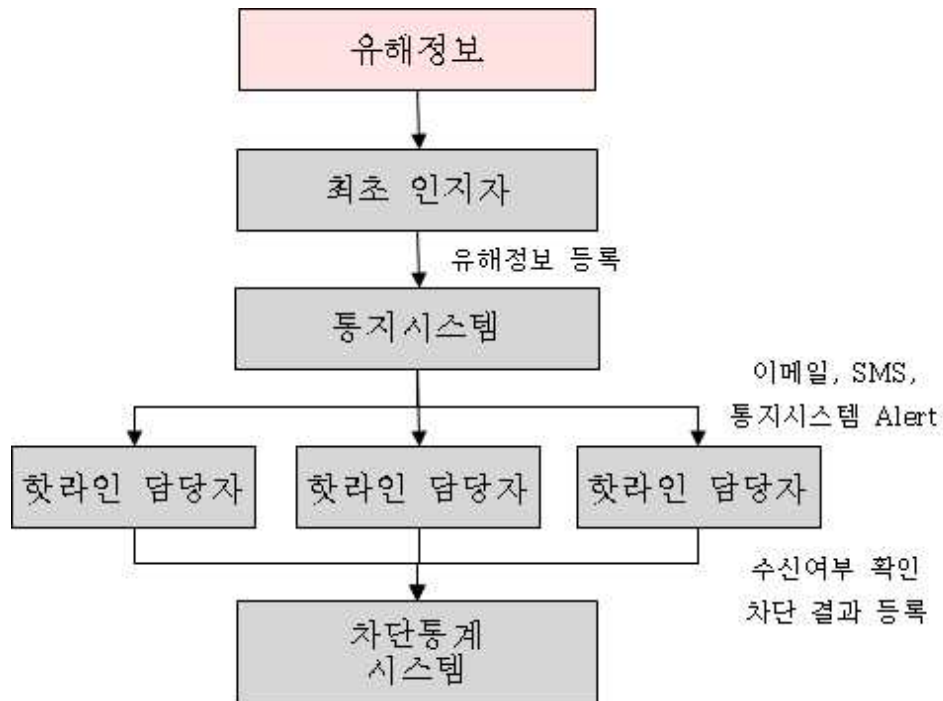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러한 핫라인 체계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핫라인 체계에 협조하는

OSP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 법적인 면책 방안들이 추가 모색된다면 핫라인 체계에 동참하는 업체의 확대로 인해 더욱 효과적인 핫라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3-38>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핫라인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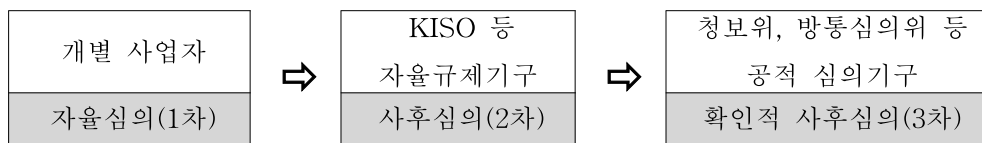
<그림3-39> 통합 핫라인 운영 시스템 구축



제4장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을 위하여 인터넷콘텐츠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청소년유해정보, 불법정보, 권리침해정보 등의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과 구체적 협력모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 관련 이슈별 협력모델을 세분화하여 임시조치 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카페/블로그의 자율 규제 방안 등 9개 이슈 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협력모델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율규제 관련 법제 정비, 공적규제기구와 자율규제기구 간의 업무 분담, 성실 사업자에 대한 면책 등이 협력모델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고안한 세부적인 협력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표4-1> 청소년유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1차적으로 개별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정보를 처리하며, 2차적으로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사후심의를 수행하고 공적 심의기관이 확인적 사후심의를 수행한다. 자율규제 기구의 2차 사후심의를 개별 사업자 단계에서의 자율심의를 적절성, 효율성 등을 사후심의를 통해 확인해 주는 기능과 자율규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들이 청소년유해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모델의 경우 공적 심의기관에 의한 확인적 사후심의를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수행된 사후심의를 적절성, 효율성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자율규제기구가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 자율규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구조는 일종의 ‘전치주의’(前置主義)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개별 사업자나 자율규제기구 단계에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적 심의기관에 이관하는 프로세스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공적 심의기관은 확인적 사후심의만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권한을 공적 심의기관이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및 결정은 개별 사업자나 자율규제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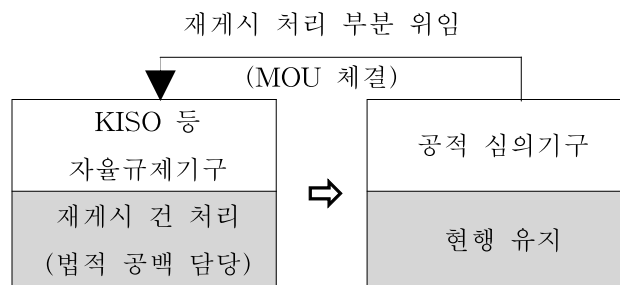
<표4-2> 불법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불법 정보의 경우에도 일종의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여기서 공적 심의기관은 자율 규제 기구에 비교적 기준이 단일하여 심의하기에 용이한 대상(음란·사행행위·기타 불법정보)의 심의업무를 MOU 등을 통해 위임한다. 기타 불법 정보 부분도 일정부분 위임의 여지가 있다. 기타 불법정보의 경우 금융감독원(주가조작판매), 국세청(탈세 및 밀수), 관세청(짜통),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 및 마약 등)과 같이 소관기관이 있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직접 담당하는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정보(신분증 위조, 성매매, 무기 판매 등) 등 소관기관이 없는 경우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불법정보는 심의기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타 불법정보의 경우 심의기관의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법부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타 불법정보를 심의

한다면 공적 심의기관보다는 자율규제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모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만약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표4-3> 권리침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 재게시 요청 관련



임시조치제도에서의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구간의 협력모델은 주로 임시조치제도의 내용 중 법적 공백상태에 놓여 있는 임시조치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 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여지가 있다.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간인 30일 이내에 심의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자율규제의 가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임시조치 된 당해 게시물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율규제기구가 그 심의를 일정 부분 담당함으로써, 재게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포털에 대해서 해 주는 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규제기구가 재게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게시물의 내용적 판단은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재게시 요청 발생시, 공적 심의기관이나 자율규제구에 반드시 당해 게시물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셋째, 임시조치 관련 약관의 통일적인 규율, 행동강령 등 자율규제기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간의 일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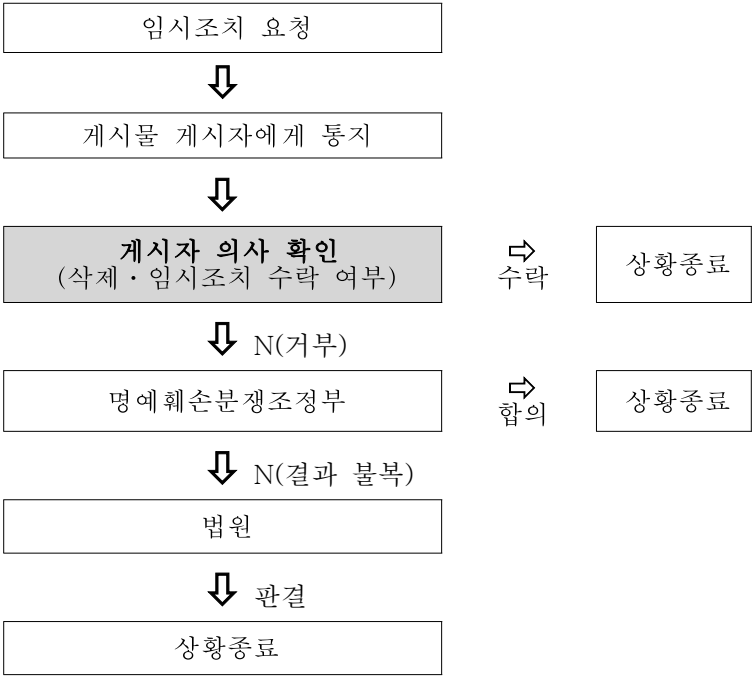
합의나 법 개정을 통해 자율규제기구의 심의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 자율규제기구의 심의결과에 따른 포털의 조치 등에 대한 면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면책조항 등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표4-4> 권리침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 재게시 요청 접수 주체

재게시 요청자	⇒ (선택)	공적 심의기구
		민간 자율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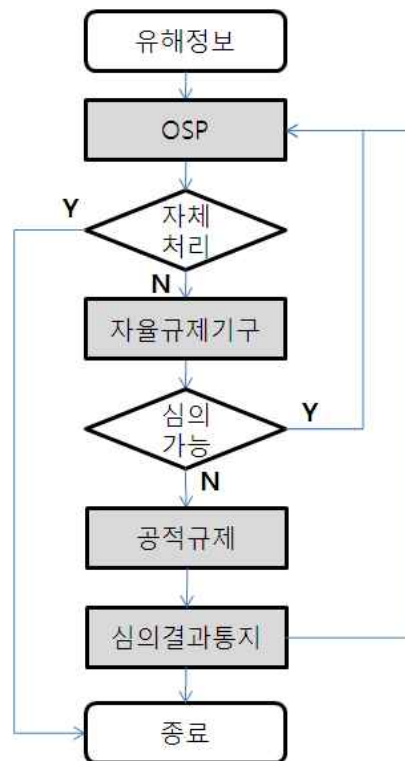
재게시 요청 게시물의 심의를 공적심의기구 또는 민간자율기구(KISO)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의 대상을 분산시키면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자율기구인 KISO를 선택하는 경우 회원사인 대형 포털 사업자들만이라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표4-5> 권리침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 - 임시조치 보완방안



위 모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프로세스를 온라인 게시물에 적용한 모델로써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 통지 및 게시자의 의견 확인 절차를 두어, 문제발생 단계에서 1차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에 대하여 실체적·내용적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자의 게시물 판단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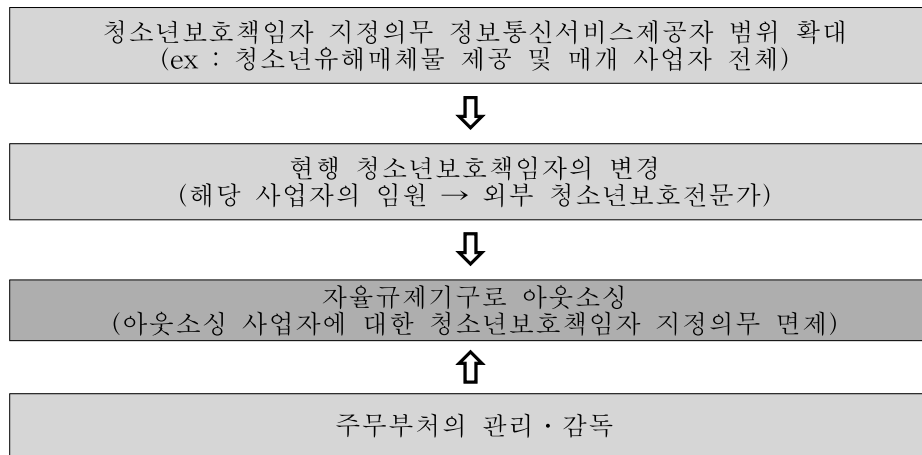
<그림4-1> 카페/블로그 유해정보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협력모델



앞서 설명한 청소년유해정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을 카페/블로그에서의 청유물 자율규제에 적용하면 위와 같은 모델을 그려볼 수 있다. 기존의 공적규제기관 심의청-유물 결정-관보게시 등의 절차를 따르는 경우 고지 및 결정취소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점과 인터넷 게시물의 이동, 삭제, 변경, 재생산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OSP-자율규제기구-공적규제기구 협력을 통한 신속한 조치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OSP에서 자체처리하기 힘든 정보에 대해서는 OSP에서 자율규제기구로 심의를 요청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OSP에서는 2차 자율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자율규제기구를 통해서도 판단하기 힘든 정보에 대해서는 3차로 공적규제기구로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공적규제기구에서는 심의결과를 자율규제기구 및 OSP로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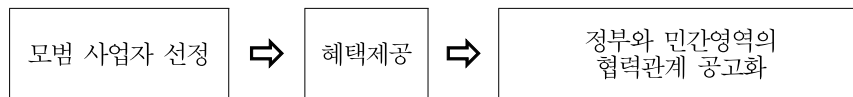
<표4-6>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서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모델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경우 독일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은 시장의 특성상 대규모 사업자 영역보다는 중소기업사업자 영역에서 그 유인이 크므로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전문가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승인된 자율규제기구에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자율규제기구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법적인 공적 규제에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율규제를 가미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자율규제’로서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별 사업장 내부에 청소년보호전문가를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업자들은 아웃 소싱을 통해 자율규제기구가 개별 사업자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는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법적인 공적 규제로서의 속성도 지니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실효성확보에 대한 수단은 여전히 존재한다.

<표4-7> 모범 사업자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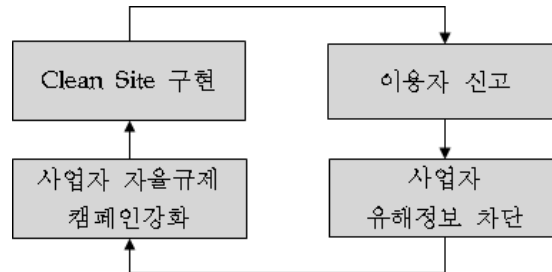


모범 사업자 지원 방안의 경우 비심의 영역에서 정부와 시장의 사업자의 협력관계 구축 및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다. 모범 사업자 선정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의 자기 순응적 강제를 유도할 수 있다. 모범 사업자 선정기준은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여건, 자율규제 평가지수, 회사 규모·매출, 사업자윤리강령 준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법률적 측면(성실 자율규제 사업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 등) 비용적 측면(세제 혜택, 모니터링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기술적 측면(유해정보DB, 솔루션 제공, 기술이전 등)에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협력관계를 공고화 할 수 있다.

<표4-8> 자율규제 평가지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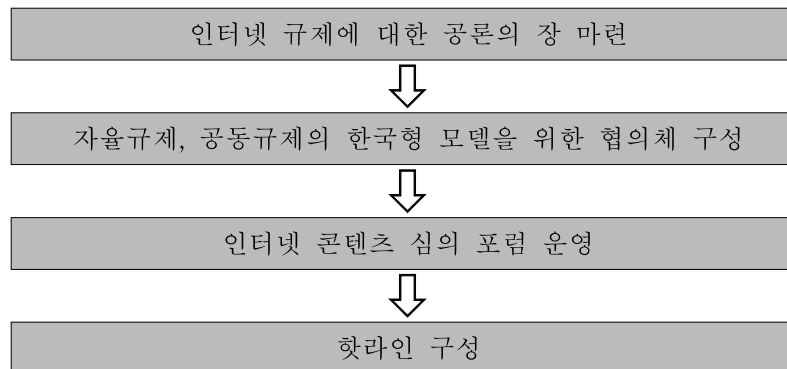
평가항목	인프라	이용자 보호	콘텐츠 관리
주요 내용	자율규제 조직/기술 등	신고센터 운영 등 책임성 있는 대응	유해정보 차단정도

<그림4-2> 사업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긍정적인 자율규제 모델



자율규제 평가지수 개발의 경우 모범 사업자 지원 방안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평가 주체의 다양화·합리화, 평가지표의 타당성 확보 등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와 정부 등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운영을 통해 자율규제 활동의 홍보, 장려 및 소규모 영세 기업의 참여 독려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성실 참여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정부의 관리자 입장에서조차 지표관리를 통한 사업자 관리에 효용일 클 것으로 기대된다.

<표4-10>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인터넷 공동규제 활성화 포럼은 비심의 영역에서의 공동규제 아이디어 차원의 모델이다. 공동규제 포럼은 공동규제를 논의하고, 만들어 가고,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인터넷 규제에 관한 사회적 이슈 생산 및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과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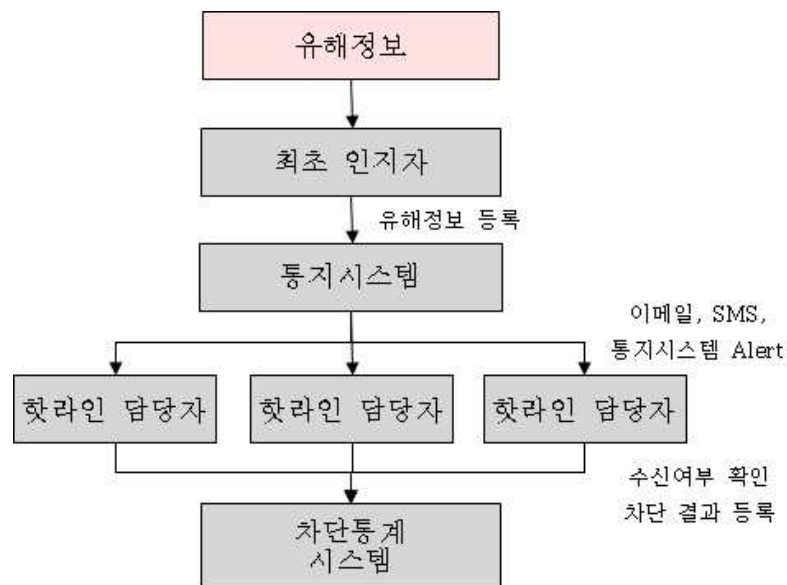
와 민간 영역의 상호 이해, 공동 협력관계 유지 등 소통의 채널로 작용할 것이다. 포럼 구성 및 운영 방안으로는 먼저 공적규제기구와 자율규제기구 뿐 아니라 네티즌,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협의체를 바탕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불법 정보, 사회적 유해정보, 명예훼손, 임시조치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심의에 중점을 둔 포럼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 포럼은 인터넷 콘텐츠 심의 포럼으로 공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심의 기준을 합의하는 과정이다. 규제기관들은 포럼을 통해 심의 기준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 합의를 찾아내고, 서로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공동규제의 심의 전문성을 고양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이용자의 올바른 인터넷 규범인식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면 포럼을 정례화 하여 명예훼손 관련 심의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포럼을 통해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나면 효율적인 핫라인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김선일 동영상과 같은 반인륜 잔혹 정보, 개인정보를 동반한 심각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전파에 있어서는 빠른 정보 공유를 통해서 공동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림4-3>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핫라인 운영 모델



OSP-자율규제-공적규제 핫라인 운영 모델은 한편으로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자율규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핫라인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경우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방지에 가장 크게 기여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본 모델은 현재 정부기관과 포털사이트들이 개별적으로 MOU 등을 통해 구축된 핫라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핫라인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OSP와 자율규제 기구, 공적규제 기구 간의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핫라인 통합 운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중앙통제방식 즉 중앙의 요청이 있어야 핫라인이 가동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유해정보 인지자는 누구든지 핫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림4-4> 핫라인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모델



또한 주요 포털 이외에도 재정적 이유 등으로 자율규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중소 규모의 영세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물, 온라인 게임사업자 등 유해정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들도 핫라인 구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구축된 핫라

인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성실히 협조하는 OSP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혜택과 지원, 법적인 면책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모색하여 핫라인 체계에 동참하는 업체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자발적 인터넷 자율규제 문화의 확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핫라인 시스템은 자살 예방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최초 자살정보 인지가 핫라인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 등 자살 구제 관련기관에 자살 관련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다른 불법·유해정보와 달리 자살 암시 정보의 경우 심의결과 등 어떠한 절차에 의한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미 암시자가 자살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살예방의 핫라인 시스템 도입 방안의 전제조건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필요하다. 즉 사업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법률적 면책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살 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 등 업계 및 핫라인 기관과 공유하며 운영한다면 자살예방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SNS와 자율규제**

주요 포털의 실무진과 연구회의를 진행한 결과 SNS의 경우, 특정 모델을 도출하는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유로는 SNS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된 데에다, 선관위의 SNS 선거활동 규제 이외에는 변형된 유형의 서비스가 출시되고 이에 따른 불법적 현상이 사회적 이슈화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SNS 서비스는 이용자 간 상호친분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가 대부분이어서, 사기, 불법 행위 등을 할 경우 가장 자발적으로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 유통 정보보다 규제가 쉽지 않은 SNS 필터링 시스템의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자율규제기구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정부와의 협력관계 유지 등의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연령별/소득별 미디어리터러시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이용자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자율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즉 정부와 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기구 등의 상시적 논의와 합의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 우지숙,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편집권 행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7. 9, 54-77면.
- 황승흠,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11, 265면.
-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210-211면 참조.
- 황승흠·황성기·김지연·최승훈,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Lance Rose, NetLaw: Your Rights in the Online World, Osborne McGraw-Hill. 1995, 8-26면 참조.
- Otto Schily, “Worldwide Communication-A New Culture of Common Responsibility”,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79-96면 참조.
- Price, Monroe E. & Steffan G. Verhulst,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137면.
- Sieber, Ulrich, “Legal Regulation, Law Enforcement and Self-Regulation : A New Alliance for Preventing Illegal Content on the Internet”,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324-325면.
- Ukrow, J., Self-Regulation in the Media and European Community Law, Saarbrücken, 1999, 15면.
- Ulrich Sieber, “Legal Regulation, Law Enforcement and Self-regulation: A

New Alliance for Preventing Illegal Content on the Internet”,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324-325면 참조.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KISO저널」 제1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09. 10. 30, 6-7면.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IT정책연구시리즈 제14호, 2009.

한국정보화진흥원, “한·미·일의 SNS 서비스 비교분석”, IT 정책시리즈11호, 2009.12.1., 1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실태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6., 4면

<인터넷 검색>

URL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63>(블로그 ‘임시 조치’에 손배소)

URL : <http://blog.jinbo.net/antiropy/?pid=408>(진보넷)

URL : <http://www.nhncorp.com/ir/finance01.nhn?year=2009&qt=0>(NHN 재무제표)

URL : <http://info.daum.net/Daum/ir/linkBalanceSheet.do>(Daum 재무제표)

URL : http://corp.skcomms.co.kr/ir03_2.jsp(SK컴즈 재무정보)

URL : <http://www.kthcorp.com/ir/financial.jsp>(KTH 재무정보)

URL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62240>(“전자상거래 활성화하는 ‘eTrust 인증마크’ 확대”)

URL : http://www.eprivacy.or.kr/internet/internet_01.html(i-Safe 인증 개요)

URL : http://www.eprivacy.or.kr/internet/internet_03.html(i-Safe 인증 절차)

URL : http://www.eprivacy.or.kr/internet/internet_04.html(i-Safe 인증 혜택/효과)

URL :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00601150125262&p=yonhapp>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받아 경제

위기 파고 극복)

URL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0051114014331948&outlink=1>(윤영선 청장 ‘미,EU 등과 AEO 상호인정 협정 추진’)

URL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66375&g_menu=020300(네이버·다음 임시조치, 올들어 급증)

[부록]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사례

[정책-제2010-03-05호]허위사실(‘미네르바 조작설’) 유포 게시물에 대한 일괄
조치 요청의 건(2010.3.4.)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정책-제2010-03-05호	KI100201150001-01	해당없음
	KI100201150001-02	기타 필요한 조치(임시조치)
	KI100201150001-03	기타 필요한 조치(임시조치)
	KI100201150001-04	작성자 게시물 삭제로 심의불가

□ 의안번호 [정책-제2010-03-05호]

- 의안명 : 허위사실(‘미네르바 조작설’) 유포 게시물에 대한 일괄 조치 요청의 건
- 의결내역
- 신고번호 : [KI100201150001-01]

[게시물URL]

<http://bbs1.xxxx.media.xxxx.net/xxx/do/xxxxxx/readxxxx=D115&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이른바 ‘미네르바’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 신고번호 : [KI100201150001-02]

[게시물URL] <http://bbs1.x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D115&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3호의 '기타 필요한 조치' (임시조치)

[표결 결과] 기타 필요한 조치 1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미네르바'가 알려진 바와 같이 박대성이 아니고 조작되었다는 것이나, 법원은 박대성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09.4.20. 사건2009고단304)을 한 바 있으므로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일반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심의 대상 게시물과 유사한 게시물들에 대해 처리를 요청할 때 정책결정 제2호상의 일반원칙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URL 적시 등을 하여야 한다.

- 신고번호 : [KI100201150001-03]

[게시물URL] <http://bbs1.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D115&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3호의 '기타 필요한 조치' (임시조치)

[표결 결과] 기타 필요한 조치 1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미네르바'가 알려진 바와 같이 박대성이 아니고 조작되었다는 것이나, 법원은 박대성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09.4.20. 사건2009고단304)을 한 바 있으므로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일반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심의 대상 게시물과 유사한 게시물들에 대해 처리를 요청할 때 정책결정 제2호상의 일반원칙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URL 적시 등을 하여야 한다.

- 신고번호 : [KI100201150001-04]

[게시물URL]

<http://bbs1.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D115&articleId=xxxxxx>

[결정] 작성자가 삭제하여 심의불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제2010-03-06호]유OO장관의 패러디 게시물 건(2010.3.4.)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정책-제2010-03-06호	KI100211190001-01	해당없음
	KI100211190001-02	해당없음
	KI100211190001-03	해당없음

□ 의안번호 [정책-제2010-03-06호]

○ 의안명 : 유OO장관의 패러디 게시물 건

○ 의결 내역

- 신고번호 : [KI100211190001-01]

[게시물URL]

<http://bbs2.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K151&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패러디물이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조치 등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211190001-02]

[게시물URL]

<http://bbs2.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K151&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패러디물이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조치 등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211190001-03]

[게시물URL]

<http://bbs2.xxxx.media.xxxx.net/xxxx/do/xxxxxx/read?bbsId=K151&articleId=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2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패러디물이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업무수행과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조치 등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사)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 구

[심의-제2010-04-01-01호]인천교도소 탈옥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10.4.15.)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정책-제2010-03-05호	KI100413170001-01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2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3	1. 해당없음
	KI100413170001-04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5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6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7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8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9	1. 해당없음
	KI100413170001-10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 의안번호 [심의-제2010-04-01-01호]

- 의안명 : 인천교도소 탈옥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
- 의결 내역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1]

[게시물URL] <http://ask.xxxx.com/qna/view.html?n=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8명, ‘해당 없음’ 3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게시글의 형식이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2]

[게시물URL] <http://pxxn.xxxx.com/xxx54027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3]

[게시물URL] <http://club.xxxxxxxx.com/ClubV1/Home.cy/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본 의안 대부분의 심의 대상 게시물과 달리 인천구치소 측에서 삭제 요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4]

[게시물URL] <http://club.xxxxxxx.com/ClubV1/Home.cy/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5]

[게시물URL] <http://minihp.xxxxxxx.com/20878276/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6]

[게시물URL] <http://minihp.xxxxxxx.com/20878276/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7]

[게시물URL] <http://club.xxxxxx.com/ClubV1/Home.cy/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8]

[게시물URL] <http://club.xxxxxxx.com/ClubV1/Home.cy/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9]

[게시물URL] <http://minihp.xxxxxxx.com/43060457/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0명, 0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본 의안 대부분의 심의 대상 게시물과 달리 '인천교도소'에서 탈옥했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10]

[게시물URL] <http://club.xxxxxxx.com/ClubV1/Home.cy/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사)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 구

[심 의-제2010-05-01-01호]천안함 관련 게시물 심 의 의 건(10.5.28.)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심 의-제2010-05-01-01호	KI100525180001-01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02	각하(작성자 삭제)
	KI100525180001-03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04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05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06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07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08	각하(작성자 삭제)
	KI100525180001-09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10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11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12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13	1. 해 당 없음
	KI100525180001-14	1. 해 당 없음
	KI100526100001-15	1. 해 당 없음
	KI100526100001-16	1. 해 당 없음

□ 의안번호 [심의-제2010-05-01-01호]

○ 의안명 : 천안함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

○ 의결내역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1]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2]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xxxxx>

[결정] 작성자가 삭제하여 심의불가(각하)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3]

[게시물URL] <http://bbs1.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4]

[게시물URL] <http://bbs1.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5]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6]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긴급...천안함 정보유출'이라는 제목 외에 전혀 천안함 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7]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KI100525180001-08]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작성자가 삭제하여 심의불가(각하)

- 신고번호 :[KI100525180001-09]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0]

[게시물URL] <http://xxx.net/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1]

[게시물URL] <http://xxxxx.net/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2]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3]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4]

[게시물URL] <http://v.xxxxx.net/link/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5]

[게시물URL] <http://xxxxx.egloos.com/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6]

[게시물URL] <http://xxxxx.egloos.com/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단지 정치적 관점의 비난성 게시물에 해당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사)한 국 인 터 넷 자 율 정 책 기 구

[심의-제2010-06-01-01호]천안함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10.6.9.)

KISO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심의-제2010-06-01-01호	KI100601160001	1. 해당없음

□ 의안번호 [심의-제2010-06-01-01호]

○ 의안명 : 천안함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

○ 의결내역

- 신고번호 : [심의-KI100601160001]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이 게시물에 대해 요청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를 근거로 삭제제를 요청해 왔으나, 해당 법조문이 명시하는 “허위의 통신”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심의-제2010-06-02-02호] 송OO 의원의 성접대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심의-제2010-06-02-02호	KI100617190001-01	1. 해당없음
	KI100617190001-02	1. 해당없음

☐ 의결 내역[심의-제2010-06-02-02호] : KI100617190001-01

[게시물URL]

<http://bbs1.xxxx.media.xxxx.net/gaia/do/debate/xxxx?bbsId=D003&articleId=3750759&srchid=xx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 의결 내역[심의-제2010-06-02-02호] : KI100617190001-02

[게시물URL]

<http://cafe.xxxx.net/MBDaeunha/xxjq/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사)한 국 인 터 넷 자 율 정 책 기 구

[심 의-제2010-06-03-01호]천안함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게시물 심의의 건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 의안번호 [심 의-제2010-06-03-01호]

○ 의안명 : 천안함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게시물 심의의 건

○ 의결내역

- 신고번호 : [KI100616150001]

[게시물URL]

<http://kin.xxxxx.com/qna/detail.xxx?d1id=6dxxxx=60502docId=110365718qb=7LKc7JWI7ZxxxxynhOyLpA==enc=utf8section=xxxxank=1sort=0spq=1pid=f/xxxxxxssvZ4TSRsss--xxxxxxxxxx=8rd5vVy860sAADYrzx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정책-제2010-06-06호]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0. 06. 28.)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사)한 국 인 터 넷 자 율 정 책 기 구

[심의-제2010-07-01-01호]방통심 시정권고 받은 천안함 게시물 3건 심의의 건(10.07.07.)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심의-제2010-07-01-01호	KI100628140001-01	1. 해당없음
	KI100628140001-02	1. 해당없음
	KI100628140001-03	1. 해당없음

□ 의안번호 [심의-제2010-07-01-01호]

○ 의안명 : 방통심 시정권고 받은 천안함 게시물 3건 심의의 건

○ 의결내역

- 신고번호 : [KI100628140001-01]

[게시물URL]

<http://bbs1.xxxxxx.media.xxxx.net/gxxxa/do/dexxte/read?bbxxxd=D115&axxxcleId=10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정책-제2010-06-06호]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2010. 06. 28.)’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 또는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이 심의결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로 심의규정을 언급했을 뿐 정보통신망법을 거론하지 않아 KISO가 심의하게 되었으나, 해당 게시물은 사실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소수의견이 1명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28140001-02]

[게시물URL]

<http://bbs1.xxxxa.media.xxxx.net/gaia/do/debate/read?sortsss=depth&bbsId=D115&seaxxxValue=&searchKey=&articleId=100xxxx&pageInde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정책-제2010-06-06호]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2010. 06. 28.)'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 또는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이 심의결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로 심의규정을 언급했을 뿐 정보통신망법을 거론하지 않아 KISO가 심의하게 되었으나, 해당 게시물은 사실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소수의견이 1명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28140001-03]

[게시물URL]

<http://bbs1.xxxxx.media.xxxx.net/gaia/do/debate/read?xxxxd=D115&articleId=10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정책-제2010-06-06호]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2010. 06. 28.)'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 또는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이 심의결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로 심의규정을 언급했을 뿐 정보통신망법을 거론하지 않아 KISO가 심의하게 되었으나, 해당 게시물은 사실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소수의견이 1명 있었다.

(사)한 국 인 터 넷 자 율 정 책 기 구

[심의-제2010-07-01-02호]방통심 시정권고 받은 천암합 관련 게시물 1건 심의의 건(10.07.07.)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심의-제2010-07-01-02호	KI100628160001	각하(작성자 삭제)

☐ 의안번호 [심의-제2010-07-01-02호]

o 의안명 : 방통심 시정권고 받은 천암합 관련 게시물 1건 심의의 건

o 의결내역

- 신고번호 : [KI100628160001]

[게시물URL]

<http://blog.xxxxx.com/wkdxxxx5201/3849xxxxx>

[결정] 작성자가 삭제하여 심의불가(각하)

(사)한 국 인 터 넷 자 율 정 책 기 구

[심 의-제2010-07-02-01호]안00 의원 명예훼손 게시물 심 의 의 건(10.07.13.)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심 의-제2010-07-02-01호	KI100630150001-01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02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03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04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05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06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07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08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09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10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11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12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13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14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15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16	1. 해당 없음
	KI100630150001-17	1. 해당 없음

□ 의안번호 [심의-제2010-07-02-01호]

- 의안명 : 안00 의원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의 건
- 의결내역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1

[게시물URL]

<http://bbs2.xxxxx.media.xxxx.net/gaia/do/kin/reaxxxbsId=K153&articleId=7xxx85>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00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공인의 병역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행적 자체가 공적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2

[게시물URL]

<http://bbs2.xxxxx.media.xxx.net/gaia/do/kin/reaxxxbsId=K153&articleId=7xxx2>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00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3

[게시물URL]

<http://bbs1.xxxxx.media.xxxx.net/gaia/do/debate/readxxxxId=D101&articleId=28xx86>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ooo 의원의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의 공적활동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4

[게시물URL]

<http://bbs2.axxxx.media.xxxx.net/gaia/do/kin/read?bbsId=K153&xxeId=7xx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내역(KI100630150001-01)의 판단을 인용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5

[게시물URL]

<http://bbs1.xxxx.media.xxx.net/gaia/do/debate/reaxxsId=D101&articleId=28xx9>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6

[게시물URL]

<http://bbs1.xxxxx.media.xxxx.net/gaia/do/debate/reaxxxsId=D115&articleId=10xxx79>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내역(KI100630150001-01)의 판단을 인용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7

[게시물URL]

<http://bbs2.xxxx.media.xxx.net/gaia/do/kin/read?bbsId=K153xxxicleId=7xxx7>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공인의 병역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행적 자체가 공적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8

[게시물URL]

<http://bbs1.xxxx.media.xx.net/gaia/do/debate/read?bbsId=D115&axxeId=104xx2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내역(KI100630150001-01)의 판단을 인용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09

[게시물URL]

<http://bbs2.xxx.media.xxm.net/gaia/do/kin/read?bbsId=K153&artxxd=75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공인의 병역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행적 자체가 공적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0

[게시물URL]

<http://bbs2.xx.media.dxxx.net/gaia/do/kin/readxxxId=K153&articleId=xxx5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및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압력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병역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내역(KI100630150001-01)의 판단을 인용했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1

[게시물URL]

<http://bbs2.xxxx.media.xxxx.net/gaia/do/kin/reaxxxsId=K153&articleId=xxx44>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봉은사 주지 압력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재직기간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2

[게시물URL]

<http://bbs2.xxxx.media.dxxx.net/gaia/do/kin/read?bbsId=K15xxxxicleId=7xxx79>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3

[게시물URL]

<http://bbs2.axxx.media.xxxx.net/gaia/do/kin/read?bbsIxxx53&articleId=69xxx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4

[게시물URL]

<http://bbs2.xxxx.media.xx.net/gaia/do/kin/read?bbsId=KxxxxarticleId=6xxx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5

[게시물URL]

<http://bbs2.axxxx.media.dxxxnet/gaia/do/kin/read?bbxxxx153&articleId=5xxxx0>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의 공적활동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6

[게시물URL]

<http://bbs2.xxxx.media.xxxx.net/gaia/do/kin/read?bbsxxxx153&articleId=5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국회 발언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글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을 적용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630150001-17

[게시물URL]

<http://bbs2.xxx.media.dxxx.net/gaia/do/kin/reaxxxId=K153&articleId=7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안oo 의원의 병역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며, 게시된 내용 중 병역사항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 특히 공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소수의견으로는 '본 게시물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임시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사)한 국 인 터 넷 자 율 정 책 기 구

[심의-제2010-07-03-01호]방통심 시정권고 받은 천안함 게시물 1건 심의의 건(10.07.15.)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심의-제2010-07-03-01호	KI100708170001	1. 해당 없음

□ 의안번호 [심의-제2010-07-03-01호]

○ 의안명 : 방통심 시정권고 받은 천안함 게시물 1건 심의의 건

○ 의결내역

- 신고번호 : KI100708170001

[게시물URL]

<http://bbs2.xxxxx.media.xxx.net/gaia/do/kin/reaxxxbsId=K162&articleId=19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정책-제2010-06-06호]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2010. 06. 28.)'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 또는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이 심의결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로 심의규정을 언급했을 뿐 정보통신망법을 거론하지 않아 KISO가 심의하게 되었으나, 해당 게시물은 사실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소수의견이 1명 있었다.

(사)한 국 인 터 넷 자 율 정 책 기 구

[심의-제2010-08-01-01호]조00 의원의 명예훼손 주장 게시물에 대한 심의의 건(10.08.17.)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심의-제2010-08-01-01호	KI100813170001-01	1. 해당 없음
	KI100813170001-02	1. 해당 없음

□ 의안번호 [심의-제2010-07-03-01호]

○ 의안명 : 조00 의원의 명예훼손 주장 게시물에 대한 심의의 건

○ 의결내역

- 신고번호 : KI100813170001-01

[게시물URL]

<http://gexxxxan.cxxm/1xxx2>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2010년 7월 28일에 있었던 '상반기 재·보궐선거' 기간 조00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이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 등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813170001-02

[게시물URL]

<http://blog.xxxx.net/sequnxxxxdispersion/128xxxx7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결정 내역] 심의대상 게시물은 2010년 7월 28일에 있었던 '상반기 재·보궐선거' 기간 조oo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이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 등을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한국인터넷 자유평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고, 게시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

(사)한국인터넷자유평책기구